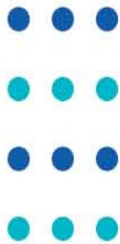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4000-100063-10



www.mogef.go.kr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VI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1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3
	2. 사업의 이해	5
	3. 사업 준비 및 계획	8
	4. 사업 실행	16
	5. 사업 예산	29
	6. 실적 관리	32
	서 식	33

VII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3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65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68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27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145
	5. 이중언어 교육지원	157
	6.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172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203

1. 사업의 이해	205
2. 사업 준비 및 계획	208
3. 사업 실행	212
4. 예산 및 직원 복무	226
5. 실적 관리	228
서 식	229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249

1. 거점센터 지정	251
2. 거점센터 운영	256

X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257
	1. 진로설계지원(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260
	서 식	267
	2. 기초학습지원(구. 취학준비 학습지원(다배움))	278
	서 식	283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96
	서 식	303
 XI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313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315
	2.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개요	316
	3.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운영	320
	4. 전담 인력 채용	328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329
	서 식	331
 XII	 기타 참고자료	 361
	1. 결혼이민자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안내 활성화	363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369

VI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 사업의 이해
3. 사업 준비 및 계획
4. 사업 실행
5. 사업 예산
6. 실적 관리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사업 준비 및 계획	공간 조성	-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 '25년 민간 리모델링 지원 관련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 민간 리모델링 지원 관련사항 별도 안내 예정
	시설 표시	- 이미지 - 여성가족부	- 이미지 - 성평등가족부
사업 실행	운영 관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지자체 담당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비대면, 서면 포함)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지자체 담당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비대면, 서면 포함)
	돌봄 품앗이 지원	4) 운영관리 [표]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 등 소요 비용으로, 단순 간식비 및 다과 지원은 지양	4) 운영관리 [표]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다과비 등 소요 비용
		5) 품앗이 활동 - 전체 모임 - 내용 : 가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이상)	5) 품앗이 활동 - 전체 모임 - 내용 : 가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이상)
		6) 품앗이 교육 - 전체 품앗이 대상 교육 - 주제 : '자녀 양육, 가족관계 개선, 공동체 이해' 중 선택(연 2회 이상)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시수 : 4시간	6) 품앗이 교육 - 전체 품앗이 대상 교육 - 주제 : '자녀 양육, 가족관계 개선, 공동체 이해' 중 선택(연 1회 이상)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시수 : 2시간
	지방 활성화 사업	(신규)	마) 지방활성화 사업 * 2026년 시범사업 추진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사업 예산	예산 지원	○ 개소별 58,244천원(지방비 포함)	○ 개소별 59,790천원(지방비 포함)
		(신규)	○ 지방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예산 (59,790천원)과 지방활성화 사업 예산 (120,000천원)을 통합하여 집행
	예산 내역	(신규)	[표] <전담인력> ○ 인건비 최저 기준 : 가족센터 팀원 1호봉 이상
		[표] <보조인력> ○ 10개월 이상 지속 고용(개소당 연 10백만원 기준)을 원칙	[표] <보조인력> ○ 10개월 이상 지속 고용(개소당 연 11백만원 기준)을 원칙
		○ 인건비는 사업수행 담당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처우할 것	○ 인건비는 사업수행 담당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처우할 것,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 최저 기준(가족센터 팀원 1호봉 이상)을 준수해야 함
서식	서식 1	2025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0〇〇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1	원하는 상담내용	원하는 프로그램

2 사업의 이해

가 목 적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나 개 념

-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다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운영 원칙

- (주민자치) 참여 부모는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부모 등 보호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함
- (공동체성) 돌봄 방식과 내용이 부모 등 보호자가 중심이 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돌봄이 공동체 방식(품앗이돌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보편이용) 이용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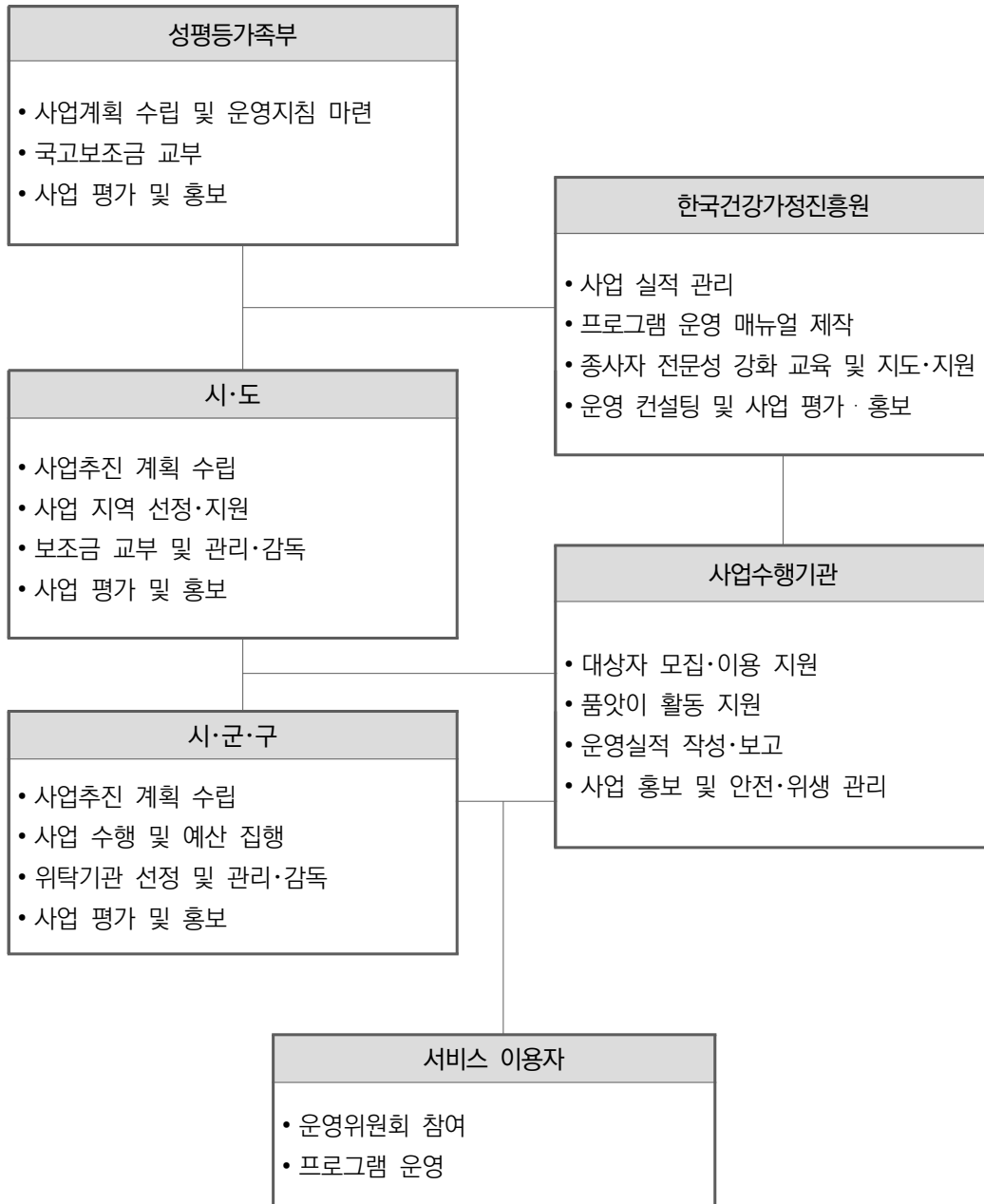
마 사업 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바 추진 연혁

- 시범사업(5개 지역) 실시('10년)
-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11년~)
- 아이돌봄지원법에 설치·운영 근거 마련('12.2.1.)

[표] 사업운영추진체계



3

사업 준비 및 계획

가 지역여건 분석

- 지역별 이용자의 특성 파악
- 수요자 요구 분석

【분석내용】

공동육아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 지역 내 아동 수, 맞벌이가구 비율,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양육 방식, 부모의 양육분담 정도 등

나 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의 여건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과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 이용자의 참여 수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의 참여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초기정착 및 안정화를 거쳐 주민주도형 공동육아 지원사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운영
 - (초기정착) 신규 시설의 경우 ‘돌봄품앗이 구성, 지역 내 활용 자원 발굴’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
 - (안정화) ‘품앗이 수 확대, 결속력 제고, 공동체 이해 심화’ 등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 주도의 안정적인 공동체돌봄을 안착
 - (연계·확산) 지역 및 기관 내 유관사업과 연계·협력 강화 및 부모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운영 등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로 확장

다 사업 인력

○ 종사자 배치 원칙

- 공동육아나눔터는 반드시 각 개소당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상시 배치해야 함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시 교대 근무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종사자가 1인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 종사자를 둘 수 있음(겸직 가능)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i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담인력의 경우 사업수행 담당기관과 채용기준 동일

- 주간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함(10개월 이상 고용)

※ 동일 시군구 내에서 2개소 이상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해당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계획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참여했었던 부모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밖에 인근 자원 봉사자 센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활용

○ 교육

- 직무교육 : 센터 직원교육 지침을 따름(가족사업안내 1권)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이해 교육과정 이수(1년차 직원의 경우 필수), 보조 인력은 교육 대상 제외

라 공간 발굴

1)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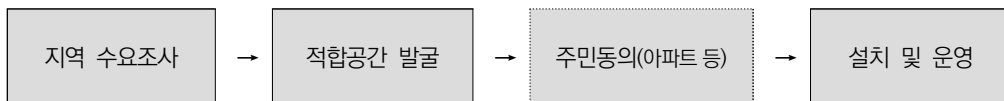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

-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

예) 신도시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 비율이 높아서 공동체 형성이 부족하며, 아동 수가 많아서 주민 간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간 규모는 전용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
 - ※ '19년 신규 신청 시설부터 적용
 - ※ 전용면적 66제곱미터는 최소 면적기준이므로,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원활한 돌봄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화장실 등 부속 공간면적을 별도 확보하도록 권장
- 이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환기가 어려운 지하공간 등은 지양하고, 이용자가 가스·석면·방사능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용 기간
 -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민간시설 등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시설유지 계약 체결)

〈시설 설치 과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
 -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 시설의 경우 야외활동 공간이 인접하여 있어야 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을 것
 - ※ 주민대표(예 :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실시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활용 가능 공간

-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공공·민간 유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주거지내 등
- 학교부지, 국공유지 등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 아동·가족 관련 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공간

※ 지자체는 해당 시설 내 공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요 제출 / 국비(운영비) 우선지원 검토대상

-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공간

〈기존 업무협약 현황〉

- 해당시설 : ‘대우건설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및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 협약내용 : 설치예정 건물의 적합한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내 공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요 제출

마 공간 조성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 활동에 적합한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활동공간은 놀이공간(동적 공간)과 프로그램실(정적 공간) 등 2개 공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
 - ※ 시설 규모에 따라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갈이 공간 등을 배치
 - ※ 화장실은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에 전용화장실(남·여 구분)을 확보하되,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을 참조
-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 ※ 민간 리모델링 지원 관련사항 별도 안내 예정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 1)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 2)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부기준

- 1) 활동공간은 냉·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面)하게 해야 한다.
- 2) 사무공간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에 수세식으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그 밖의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가) 벽 및 천장의 마감재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나) 커튼류 및 카펫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다)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책상, 의자 등의 가구는 그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거나 모서리에 고무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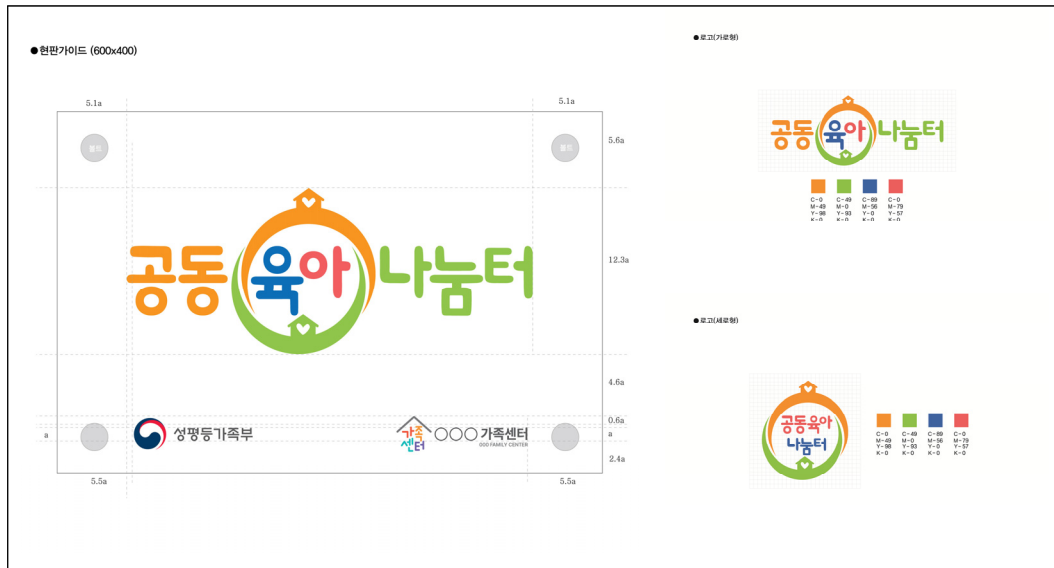
【표】 공동육아나눔터 비치물품

연 번	물 품 명	내 용	비 고
1	소화기		
2	문틈안전대	자녀들이 이용하는 문 전체에 설치	
3	매트	전체 크기의 1/4면적 이상 설치 (바닥쿠션이 있는 장판사용 시 매트 미설치 가능)	
4	소독기	장난감 소독기(필요시 손소독기도 설치)	
5	청소기	물청소 포함	
6	냉·난방기	난방(바닥난방 또는 온풍기 등), 냉방(선풍기, 에어컨 등)	
7	전화기	건물 내 이용이 용이한 공용 전화기 있는 경우 미설치	
8	기저귀 갈이대	이동식 또는 고정식	
9	장난감 및 수납공간		
10	도서 및 책장		
11	게시판	이용수칙, 공지사항 등 게시	
12	의약품	부모 등 보호자 동의 하에 의약품 제공	
13	음용수대(정수기)	화상방지용 안전장치 필수 설치	
14	온습도계		
15	낮은 책상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좌식테이블	
16	CCTV	1대 이상	
17	재난대피 안내도	인지하기 쉬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18	수유 시설	수유용 의자 또는 방석 비치	
19	공기청정기		
20	휴게 시설	영유아 수면 공간 및 침구	선택
21	세면대	손 씻을 수 있는 시설	선택

※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초등돌봄)시설의 경우, ‘기저귀 갈이대, 수유시설’은 선택사항

바 시설 표시

- 공동육아나눔터 로고 사용
- 신규 개소 시설에 현판 설치(하단 규격 적용)



※ 상기 로고 파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가족)에 게재, 신규 개소 등 필요시 활용 가능

4

사업 실행

가 위탁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상 기관 :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 해당 사업 또는 관련 업무 수행 경력,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의 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나 홍보 및 모집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

〈홍보방안 예시〉

: 지역신문,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행사(설명회, 개소식, 마을잔치), 홍보물품 제작·배부, 지역단체 연계(부녀회, 청년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맞벌이가구 돌봄(초등돌봄) 시설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협조 요청(가정통신문 발송 등) 또는 (어린이)도서관 등에 홍보

-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시설은 맞벌이가구 자녀를 우선 모집(70%까지)하고, 시설 면적에 따라 돌봄 인원 산정(아동 1인당 최소 사용면적 : 3.3제곱미터)
 -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신청이 정원 대비 70% 미달 시 다른 아동 포함 가능
 - 일시돌봄 또는 긴급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원에 여유를 둘 것

※ 맞벌이가구 증빙서류

1. 맞벌이가구란?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
- '일'의 요건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오후나 저녁 근로인 경우 4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 다만, 보호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가구이거나 취업 준비 중(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준하도록 함

2. 증빙서류

- [일반]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시설 이용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3.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맞벌이가구로 인정(근로확인서[서식17]로 대체)

- 보호자가 일용직, 단기간 근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 및 근로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등)
- 보호자 중 1인만 농업종사자로 등록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보호자 중 1인만 자영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

다 운영 관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 품앗이 참여 부모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등 보호자를 중심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담당자와 마을주민(예 : 읍면동장, 아파트입주자대표), 지자체 담당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반기별 1회 이상 개최_비대면, 서면 포함)
- 회의 개최 시 품앗이별 대표 가급적 참석
- '운영시간, 이용수칙, 보조인력 활용, 자부담 여부,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2) 운영 시간

-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 맞벌이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운영 권장(주말 운영 시 평일 휴무 가능)

3) 이용 요금

-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간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예산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이용자의 요금부담 가능

4) 프로그램 운영

- 취지 :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원,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주체는 참여 부모이며, 사업담당자는 운영을 지원
 - 프로그램 제공 업무에 치중하여 사업의 공동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운영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방식, 횟수 등 결정
- 운영횟수 : 주 2회 이상
 - 강사 섭외가 어렵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주 1회 운영 가능
-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권장
 -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 아빠육아 참여 등 부부간 맞돌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지역 및 해당기관 내 돌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 돌봄공동체 운영시 상호 프로그램 협력 및 돌봄공간 활용 지원 등 인적·물적 자원 연계

5) 놀이활동을 위한 교구 및 도서 관리

- 매일 분무소독, 주 1회 정밀소독
- 교구와 도서는 비치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여서비스 제공 가능
 - 직원의 공동체돌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대여서비스 제공
 - 대여용은 비닐보관. 반납 시 소독필수 및 월 1회 전체소독

6) 이용자 관리

- 이용자 작성 서류
 - 이용대장(출입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만족도조사지, 품앗이 관련 (가입신청서, 활동일지, 활동계획)
- 사업담당자 작성 서류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품앗이 현황, 실적보고
 -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 가능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시설 운영 관리〉

- 관련서식 : 이용자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일일 운영 현황, 근로확인서
- 맞벌이 가정일지라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함
 - 보호자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자녀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맞벌이 가정의 공동체 활동 참여가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맞벌이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병행을 권장
- 돌봄인력 배치
 - 사업담당자 외에 아동 돌봄을 전담하는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함
 - 돌봄인력은 '아동 돌봄, 안전한 보호, 입퇴실 및 귀가 관리' 업무 등 수행
- 운영 형태
 -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 형태 예시〉

- 1) 오후~저녁 종일 돌봄 :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고, 돌봄인력 자원이 충분한 경우
- 2) 오전 개방, 오후 돌봄 : 오전에는 시설을 외부에 개방
- 3) 혼합형 : 공간 규모가 크고 인력이 충분하여 동시간대에 일부 공간을 외부에 개방

- 운영 시간
 - 주 40시간 이상 운영하되 주중에는 일 4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할 것

라 돌봄품앗이 지원

돌봄품앗이란?

-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

1) 서식 관리

- ‘품앗이 회원가입신청서, 운영계획서, 활동일지’ 관리

2) 운영 절차

【표】 연간 운영 절차



3) 구성

- 시설별 5개 이상
 - 운영에 있어서의 최소 기준이며, 참여 가능 가구 수가 많은 경우 품앗이 수 확대(10개 권장)
 - *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은 사업의 성격 상 최소 품앗이 수를 규정하지 않음
- 품앗이 유형(예시)

구 분	돌 봄	공동활동	나눔	소 통
내용	등하원 지원, 긴급·일시돌봄	체험, 놀이, 취미, 독서, 봉사	반찬, 육아· 교육·생활용품	육아·생활정보, 가족교육·상담

4) 운영 관리

- 활동 내용·방식 등은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활동 지원
- 동일 시군구 내 다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인 경우에 한해, 품앗이 활동 전체 모임과 전체 품앗이 대상 교육, 품앗이 활동가 양성 교육은 공동으로 운영 및 지원 가능
- 홍보
 - 관심 있는 가족들의 품앗이 참여 유도를 위해 ‘품앗이 활동의 장점, 활동 내용, 방식’ 등을 홍보(시설 이용 주민 대상 안내, 설명회 개최 등)
- 활동비 지원 : 활동계획서 또는 지출내역(활동일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활동비 지원(실비 사후 정산)
 - 활동비 지원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
 - 활동비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및 금액은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율 결정하되, 하단 안내사항 준수
 - ※ 지원방식 예시 : 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구성 시 3년 간 지원

활동비 사용 안내

- 연간 활동비 지출액은 '월별 품앗이 계획서 제출 그룹수×30,000원×12개월'을 기준으로 함
 - * 품앗이별 활동 내용 및 인원수에 따라 지원액수 및 지급 시기(월, 분기, 반기) 탄력 운영 가능
 - * 단, 맛별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맛별이가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
- 내구성 물품(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지원 제외
-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다과비 등의 소요 비용

- 부모 중심의 품앗이 활동이 돌봄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지원
 - (초기 공동체) 돌봄품앗이 운영 → (공동체 성장·발전) 돌봄공동체 양성
 - ※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이웃 등이 일상적인 돌봄활동을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발굴·지원

5) 품앗이 활동

- 품앗이별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운영
 - 운영계획서 및 월별 활동일지 제출
 - ※ 품앗이 활동이란 지역 특성 및 자녀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 활동 등을 지칭
- 전체 모임
 - 목적 : 돌봄공동체 구성의 기초단계로서 품앗이 참여자 및 지역 주민 간 친밀감 형성
 - 내용 : 가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이상)
 - ※ 프로그램 예시 : 나눔장터, 만찬, 가족축제, 품앗이 활동 발표회, 운동회, 캠프, 견학

6) 품앗이 교육

- 사업 안내
 - 시기 : 품앗이 구성 시
 - 내용 : '품앗이 개념, 운영취지, 활동유형 및 방법, 대표선정 및 역할분담, 우수사례 소개' 등
 - 강사 : 기존 품앗이 구성원 또는 사업담당자 등
- 전체 품앗이 대상 교육
 - 주제 : '자녀 양육, 가족관계 개선, 공동체 이해' 중 선택(연 1회 이상)
 - 방식 : 교육·상담·토의·문화 등 프로그램 형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내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
 - ※ 예 : 가족센터의 '부모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수강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취지 : 돌봄공동체 형성 및 품앗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활동가 양성
- 대상 : 품앗이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 시수 : 2시간
- 강사 : 우수 시설의 품앗이 활동가 또는 사업담당자, 마을공동체활동가 등

〈교육내용 예시〉

- 품앗이돌봄 필요성, 공동체 가치, 주민자치 운영방법(의사소통,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 갈등관리, 지역자원 활용), 우수사례 학습 또는 우수 시설 방문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매뉴얼」 Ⅲ-2. 품앗이 육아 활동지원 참고

마 지방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동 육아 문화 조성
-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활용 야간까지 돌봄 공간 제공 및 자녀 성장발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상시 제공
- (사업 기간) '26. 1월 ~ 12월
- (사업 규모) 20개 지역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인구 20만 미만 지자체
- (예산 지원) 1개소당 12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매칭)

구 분	합계	전담인력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국비+지방비)	120백만원 (보조율 50%)	92백만원 (46백만원×2인)	24백만원 (2백만원×12월)	4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예산(59,790천원)과 지방활성화 사업 예산은 통합하여 집행

2) 사업 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확대)

구분	기존	확대
평일	09:00 ~ 18:00	09:00 ~ 22:00
주말	미운영	09:00 ~ 17:00

※ 야간(18:00~22:00) 돌봄 필요 시 아이돌보미 연계 돌봄 공간 지원

- (돌봄 프로그램 상시 운영)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아이 및 부모 대상 돌봄 교육 등 상시 운영
- (전담 인력 운영) 야간·주말 운영 인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2명)

3) 운영 관리

- 지방활성화 사업 예산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예산과 통합하여 운영
- 전담인력의 근무형태는 기존 인력과 통합운영(교대 근무), 야간 전담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프로그램을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지방활성화 사업 성과지표(야간·주말 이용인원, 야간·주말 프로그램 참여율, 야간·주말 이용자 만족도 등)를 별도 관리, 분기별 보고

바 안전 관리

1) 원칙

- 사업담당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보호·감독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 화재와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예시)

항 목	주요 내용
시설 및 설비 점검	담당자 지정 및 자체점검 방법
냉·난방용품, 정수기 등	유지보수 점검(제조업체 등) 방법
전기·가스, 승강기 등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관리원 점검(연1회) 및 유지보수
방역	방역업체 분기별 1회
응급처치	응급의료정보센터, 주변 병·의원 등 비상연락 및 정보체계 구축
안전관리 체계 구성	안전 관리자 지정,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 내·외부 관계자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보험 가입	어린이시설 상해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 보험 가입
안전교육(종사자, 유급자원봉사자)	유관기관 협조 소방안전(예방, 대처, 소방시설 사용, 피난유도 등), 심폐소생술 등 교육, 비상대비 모의훈련 등

②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반기별)

- 사업수행기관은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점검표 비치)
- 사업수행기관은 화재·상해·위생상 문제 등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안전관리 점검표를 비치(주 단위 관리)하고 해당 지자체는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첨부)

2) 분야별 안전관리

- 일반사항
 - 어린이시설상해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 아동 활동공간의 위해요소 제거
 - ※ 환경보건법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의 4항, 6항, 8항 준수
 - CCTV 설치
 - 시설별 1대 이상 설치(130만 화소 이상, 저장기간 60일 이상)
 - CCTV 운영·관리, 화상정보 취급·관리 등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열람방식은 어린이집 CCTV열람방식 기준 적용

※ 영상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

구 분	상 세 내 용
열람권자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열람절차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
관리대장	열람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기간 3년)
삭제방법	보관기간 경과 시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확인 후 삭제

○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

- 실외활동 : 돌봄인력이 동행하여 안전 관리(인근 놀이터 등 주요 실외활동 장소에도 가급적 보험 적용)
- 부모 등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아동별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및 일일 현황’ 작성

※ 보호자 동행 없이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 연락

○ 재난 안전관리

- 소화기는 1개 이상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
- 피난안내도는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곳(복도, 계단 등)에 부착

※ 피난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또는 적재물이 없도록 관리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참조

- 계단은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을 것
 - 승강기 정기 안전 검사 실시
 - 모든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부착하고, 냉·난방기구 등 전력소모가 큰 물품 사용 시에는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에 유의
 - ※ 전력소모가 큰 물품들을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동시 사용금지
 - 주방이 설치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스의 누설 여부를 점검(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가스배관 주변 누설여부 수시 점검)하고, 보호자 동반 시에만 아이들이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칼과 같은 위험한 조리용품은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그밖에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위생·질병 등 안전관리 : 위생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율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아동에게 질병·사고·상해·재해 등으로 인한 위급상태 발생 시 부모와 동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조치
 -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 넘어지기 쉽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 등에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및 보호자의 공동육아나눔터 출입을 제한
 - 적절한 실내 온·습도 및 환기 관리 :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실내온도 : 일반적으로 18℃~28℃ 유지(난방 18℃~20℃, 냉방 26℃~28℃)
 - 실내습도 : 일반적으로 30%~80%로 유지
 - 공기 질 관리 :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 시간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겨울철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2~3시간 주기로 환기
 - ※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또는 공기청정기 사용 시 환기 빈도를 적절히 조절
 - 장난감과 놀이기구는 “검”, “안전”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여부 수시 점검 및 주기적으로 소독 관리
 - 수유시설 및 물품은 특히 청결히 관리

- 음용수대(정수기) 등 관리
 -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청소(정수기별 위생관리 점검표 비치), 6개월마다 수질검사 실시
 - 렌털 및 기기 구입 시 설치 업체에 수질검사, 정기적 필터교환 등 사후관리 의무화(주기적인 위생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급식수는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고, 지하수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 준수
- 화장실 및 세면도구 관리 : 정기적으로 소독
- 해충 관리 : 모기, 파리, 바퀴벌레, 나방 등 해충이 없도록 수시 관리
- 의약품 관리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부모 동의하에 의약품 제공
 - 구급약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충하고, 의약품 유통기한 확인
- 전화기 주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가능한 안내 번호판 부착

1) 예산 지원

- 개소별 59,790천원(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 개소별 예산집행 및 지침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관리 등 관리 철저
- 동일 시군구 내 2개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국비 지원)를 운영하는 기관은 각 시설의 특성 및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개소 간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 가능

※ (시설 특성) 특화시설(초등특화시설 등), 시설 위치, 규모, 공간 특성, 사업내용 등
(이용자 수요) 운영시간(주말, 평일야간, 방학 연장운영 등), 이용인원, 이용자 특성, 돌봄품앗이, 돌봄공동체 활동 등

- 통합집행시에도 개소별 전담인력 상시배치, 돌봄품앗이 운영 등 지침에 명시된 최소 사업기준 및 실적 관리 이행 필요
- 지방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예산(59,790천원)과 지방활성화 사업 예산(120,000천원)을 통합하여 집행

2) 예산 내역

구 분	내 역
인건비	〈전담인력〉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 배치 (상시인력 1인 또는 교대 인력 2인 이상 배치)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 호봉기준 적용) - 인건비 최저 기준 : 가족센터 팀원 1호봉 이상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보조인력〉 -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 인력 배치 ※ 초등 특화 시설의 경우 주중 주간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 가능 10개월 이상 지속 고용(개소당 연 11백만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남은 보조 인력 인건비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전용 가능 * 단, 동일 시군구 내 2개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필요시 해당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활동 지원, 교육, 홍보, 장난감·도서 구입 등 - 자원봉사자 수당 : 1인당 일 20천원 이내로 지급(교통비 및 식비)
운영비	- 기관운영비 : 교육훈련비, 시설관리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 일반운영비 :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비 - 여비 : 국내출장여비 - 자산취득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전체예산의 10% 이내 단, 신규 개소 시설의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제한 기준 완화 - CCTV설치비(대여시 제세공과금에서 지출) * 사업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물품관리기준에 의거 물품대장 관리 - 시설 보험료(어린이놀이시설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상기 내역은 기능적 분류이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비목별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적용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가족사업 안내 제1권 I. 센터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
-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공동육아나눔터 별도 물품대장 수불 관리

- 인건비는 사업수행 담당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채우할 것,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 최저 기준(가족센터 팀원 1호봉 이상)을 준수해야 함
 - 기관 직원과 동일 호봉 적용
 - 채용기준 동일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 품앗이 활동 부모 등이 나누어서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해당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동의 필요)
- 내구성 물품(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
 - 다만, 소모품(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자산 취득비가 아닌 일반 수용비로 집행

6

실적 관리

가 보고 사항

1) 설치 현황(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보고(신규 개소, 폐소, 운영기관 변경 등)

2) 월별 실적(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성평등가족부)

- 개소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소별로 실적 관리 및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월별 실적 제출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양식
사업계획서 예산교부신청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서면	서식 1, 2 참조
	시·군·구	시·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서면	서식 3, 4 참조
	시·군·구	시·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3월 25일까지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직원관리)	사업수행기관	시·도 시·군·구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분기별 취합)	시스템 및 별도 수기 서식	
사업계획			사업시행 전월 20일까지		
예산집행실적			매 익월 10일까지		
월간사업실적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한가원 별도 안내		

* 정산보고서 상 금액과 e나라도움 시스템 상 금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서 식

차례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7
서식 2-1	사업계획서(사업수행기관)	38
서식 2-2	사업계획서(지자체)	41
서식 3-1	사업결과보고서(사업수행기관)	42
서식 3-2	사업결과보고서(지자체)	45
서식 4	사업정산보고서	46
서식 5	월별 실적 보고	47
서식 6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현황	48
서식 7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대장	49
서식 8	돌봄품앗이 가입신청서	50
서식 9	돌봄품앗이 월별 계획서	51
서식 10	돌봄품앗이 활동일지	52
서식 11	만족도조사지(프로그램·교육 참가자용)	53
서식 1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품앗이 가입자)	54
서식 12-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강사 등)	55
서식 13-1	주간 안전관리 점검표(사업수행기관)	56
서식 13-2	반기별 안전관리 점검표(지자체)	57
서식 14	이용자 관리카드(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58
서식 15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59
서식 16	운영 일일 현황(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60
서식 17	근로확인서(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61

[서식 1] (지자체 → 성평등가족부)

2000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명	시 도 명		부 서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사업목적	육아 공간 제공,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등 돌봄공동체 조성 ※ 예시/			
사업기간	20 . . ~ . .			
사업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 예시/			
교부신청액	금 천원(W) ※ 연간 국비 총액 기재			
총사업비 (천원)	지자체명	소 계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총 계			
사업계획서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시·도 □ □ □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시설 명칭	○○○ 공동육아나눔터
주 소	
운영 기관	
운영 기간	20 . . . ~ . . .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 ○
2024년 주요사업계획	○ 연간 목표 이용인원, 품앗이 수, 참여가구 수, 활동횟수, 이용인원 제시 및 핵심 계획 작성

2. 세부 추진계획

☐ 인력 운용

○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비 고

☐ 모집·홍보

○

○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 품앗이 구성·운영

○

○

☐ 프로그램 운영

○

○

☐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

○

☐ 안전 관리

○

○

☐ 기타

○

○

3.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예산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합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총계					
사업비					
	소계				
운영비					
	소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운영기관별 특색 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 영 기 관 (시·군·구)	예 산 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 목표 이용인원, 이용자만족도, 품앗이 수와 활동 빈도 등 사업평가 계획 기재

5. 지역사회 연계 및 사업홍보 계획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결과보고서

1. 결과 요약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	천원(%)
		지자체	천원(%)
		자부담	천원(%)
사 업 내 용	○ ○		
추 진 실 적	○ ○		
사 업 성 과	○ ○		

2. 세부 내용

☐ 이용인원(연인원)

○ 목표 달성 여부 :

○ 전년 대비 증감 :

이용인원						
계	0~2세	3세~취학전	초등학교(학년)		중·고등학생	보호자
			1~3	4~6		

※ 품앗이 구성원이 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집계

☐ 모집·홍보

○

○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 품앗이 구성·운영

- 목표 달성 여부 :
- 전년 대비 증감 :

실 인 원			
그룹수	가구수	모임횟수	활동내용

☐ 프로그램·교육 운영

-
-

프로그램		교 육		운영위원회
내 용	횟 수	내 용	횟수(시간)	회의 횟수

☐ 모임 및 활동

-
-

☐ 기타

-
-

3. 사업 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4. 증빙 자료 : 별도 첨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실적

운영기관명	이용인원			품앗이			운영위원회
	계	자녀	보호자	그룹 수	가구 수	전체모임 횟수	회의 횟수

※ 이용인원은 품앗이 구성원이 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연인원으로 집계

※ 품앗이 수는 누적치로 계산(신규 발생시 합산하는 방식)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명	내용	횟수

- 사업 교육

운영기관명	내용		횟수
	전체 교육		
	활동가양성교육		

- 문제점

운영기관명	문제점

- 개선방안

운영기관명	개 선 방 안

[서식 4] (지자체 → 성평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정산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기 관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작 성 자	(소속)	(성명)	(연락처)

2. 사업비 집행내역

1) 보조금 : 원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명	시군구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기타 등 기재

[서식 5] (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실적

1. 사업수행기관 : (고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급)

○ 시설현황

연번	지자체	시설명	주 소	운영시간	면적 (제곱미터)	개소 일시
				시 ~ 시		

※ 신규 시설은 사진(실내·실외 공간) 첨부

2. 이용 현황

○ 이용 인원 (연인원)

연번	시설명	이용인원						
		계	0~2세	3세~ 취학전	초등학교(학년)		중·고등 학생	보호자
					1~3	4~6		

※ 품앗이 구성원이 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집계

○ 돌봄품앗이 현황

연번	시설명	실인원				모임횟수	활동내용
		그룹수		가구수			
		전체	신규	전체	신규		

※ 신규는 해당 월에 신규로 구성된 품앗이를 의미

※ 전체 수는 신규도 포함

○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프로그램		교육		운영위원회
		내 용	횟수	내 용	횟수 (시간)	회의 횟수

※ 횟수는 월별 운영 실적

[서식 6] (지자체 → 성평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현황

【연번 : (시도명 - 시설합계 - 해당시설번호)】

시 도			시군구		
시설명칭					
운영기관					
사업비	총 천원	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주 소					
개소일			면 적	제곱미터	
일 평균 이용인원	명		운영시간		
기타 참고 사항	예) 00년도 신한 리모델링 지원으로 신규 개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				
시설 사진 (내외부)					
	〈외부 사진〉		〈내부 사진〉 2장 이상		

[서식 7]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대장

번호	날 짜	성 명 (보호자)	아동 나이 (해당항목에 명수 기입)					비고
			36개월 미만	36개월~ 취학 전	초등학교 (학년)		중·고등학생 (또래청소년 포함)	
					1~3	4~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아동만 이용 시 아동 성명, 나이 기입

[서식 8]

돌봄품앗이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이메일로 품앗이 소식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	이름	성별	만 나이	관계		
자 녀	이름	성별	만 나이	학년/학교		
희망 품앗이 형태 (복수응답 가능)	돌봄 (등하교지원, 일시·긴급 돌봄)	공동활동 (체험, 놀이, 취미, 독서)	나눔 (반찬, 육아· 교육·생활용품)	소통 (육아·생활정보, 가족교육·상담)	기타	활동 주기
						☐ 매일 ☐ 주 2~3회 ☐ 주 1회 ☐ 월 1~3회
희망 품앗이 친구	☐ 가까운 지역 ☐ 아이들 나이 및 학습수준 ☐ 엄마들 성격 및 호감도					
기 타						
☐ 위 항목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에서 실시하는 돌봄품앗이 활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식 9]

돌봄품앗이 월별 계획서(월)

작성일자 : 작성 자 :		결 재	담당자	부서장
품앗이 명				
목적				
구성원				
월별계획				
※ 작성예시 ○ 1주(모임날짜) - 1주차(매주 목) : 동화구연 - 참여예상인원 - 활동예정공간				

[서식 10]

돌봄품앗이 활동일지

품앗이 명		작성자	
모임일시	년 월 일 시 ~ 시		
모임장소			
참석자	부모 : 실명 모두 기입 자녀 : 실명 모두 기입		전체 (맞벌이 가구)
활동내용			
활동사진			
평가 및 건의사항			

[서식 11] (프로그램·교육 참가자용)

만족도조사지

그동안 프로그램/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수행기관 ○○○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교육 내용은 내 가족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 강사는 프로그램/교육을 잘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교육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 프로그램/교육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5. 프로그램/교육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교육 이용을 권하고 싶다.					

✿ 다음 란에 ✓표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세요.

성 별	☐ 남 ☐ 여	연 령	만 ()세
사업수행기관이 실시한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 있다 ☐ 없다	
참여소감 / 개선사항			
원하는 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시간대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기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 · 이용목적(내용변경가능)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소득세 납부
-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주택, 휴대폰번호), 보호 · 장애대상 여부, 학력 · 경력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집근거
 - 소득세법 제2조, 제127조에 의거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름 : (서명)

주간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확 인 자 :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이상유무)	조치사항	
1. 화기 주변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방법도 표시되어 있다.			
2.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가 청결하다. (위생관리 점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정수기 등에서 뜨거운 온수로 인한 화상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4. 바닥 및 매트 의 청소상태가 양호하다.			
5. 창틀, 게시판, 도서 및 장난감은 청결한 상태이다.			
6. 책상 등 모든 비품은 청결한 상태이다			
7. 기저귀 갈이대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깔개 또는 물휴지 등이 구비되어 있다.			
8. 실내온도는 18도 이상 2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9. 실내습도는 30%이상 8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10. 전화기 주변에는 응급 시 안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11. 모든 전기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다.			
12.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등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13. 구급상자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의 응급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용법과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14. 피난안내도는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다.			
15. 벽모서리나 기둥모서리 같은 구조물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 모나지 않게 조치되었다.			
16. 책장, 책상 등의 비품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 모나지 않게 조치되어 있고, 파손된 곳이 없다.			
17. 모든 장난감은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가시, 갈라진 곳이 없다.			
18. 모든 출입문(현관문, 화장실 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9. 화장실은 청결하며,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20. 가스누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다.			

반기별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확 인 자 :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안전관리 계획	1. 주간 점검이 빠짐없이 이행되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2. 안전 점검, 소독 및 방역 추진 기록부는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화재안전	3.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으로 잘 열리고, 비상구와 피난기구 사용에 장애물이 없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4. 구획된 공간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5. 공동육아나눔터 출입문으로부터 비상구까지 피난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파손이 없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6. 비상벨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7. 방향표시 및 거리가 표시된 피난 안내도가 층별로 부착되어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시설안전	8. 먹는 물은 정기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9. 화장실은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0.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1. 냉·난방 설비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2. CCTV는 잘 작동하며,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준수되고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3. 승강기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추진되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대응체계	14.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된 안전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5. 어린이시설상해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6. 건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17.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서식 14]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카드					
이용 아동 일반 사항	성 명	(한글)			사진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학교/학년	(아동휴대전화)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주소					(전 화)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귀가 인솔자) *2명 이상 작성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비고	
이용 사항	이용 공간 정보	☐ 나눔터명 : _____ ☐ 연락처 : _____ ☐ 주 소 : _____			
	돌봄 시간	☐ 돌봄 예정시간(시 ~ 시) ※ 가능시간 : _____			
	이용 요금				
기타	☐ 맞벌이가정 해당 유무 : _____ ☐ 기타 : _____				
위 아동에 대한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아끼며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 사진은 즉석에서 교사가 촬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문자서비스(아동귀가, 공지사항 등)수신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아동 보호자 20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 아동 기본 정보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주소			

☐ 보호자 연락처

구분	성명	관계	연락처(1)	연락처(2)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 응급처치 절차

1. 위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2.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보호자께서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할 것입니다.

보호자 지정 의료기관 :

의료보험의 종류/번호 : /

☐ 귀가 동의

위 아동의 귀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희망합니다. 동행귀가시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귀가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유선 및 무선으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귀가방식 : ☐ 자율귀가 ☐ 동행귀가 (동행인 :)
- 귀가방법 : ☐ 도보 ☐ 센터차량 ☐ 대중교통(자동차) ☐ 기타()
- 귀가요청시간 : 시 분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위의 절차에 따라 귀가 및 응급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서명)

[서식 16]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일일 현황

(일)

[illegible]

근로확인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년 월 ~ 현재			
근무내용				
확인사항	'일용직, 단기간 근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 및 근로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등)'하거나 '부부 중 1인만 농업종사자로 등록 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만 자영업자로 등록 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	맞벌이가구 확인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자녀이용 신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상 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표자 : (인)				

VII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5. 이중언어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2025년도	2026년도																																																								
공통	만족도 조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방문교육, 언어발달, 이중언어, 역량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협조																																																								
방문 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	○ 지도사 시급 : 12,81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당 2,570원 추가 지급)	○ 지도사 시급 : 13,23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당 2,650원 추가 지급)																																																								
	본인 부담금	1)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5,370원 (회당 30,740원) 3)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760원 또는 15,370원 차등지원	1)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5,880원 (회당 31,760원) 3)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1,110원 또는 15,880원 차등지원																																																								
	임용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채용)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를 재채용 할 경우 양성교육은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교육	<table><tr><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4">교육 시간</th></tr><tr><th>총 계</th><th>양성교육 (온라인, 집합 (원격포함))</th><th colspan="2">보수교육</th></tr><tr><th></th><th></th><th></th><th>집합교육 (원격포함)</th><th>온라인 교육</th></tr><tr><td>4년차 이상</td><td>10시간</td><td>-</td><td>4시간</td><td>6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4시간</td><td>6시간</td></tr><tr><td>2년차</td><td>10시간</td><td>-</td><td>4시간</td><td>6시간</td></tr><tr><td>1년차</td><td>35시간</td><td>25시간</td><td>4시간</td><td>6시간</td></tr></table>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 (원격포함))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교육	4년차 이상	10시간	-	4시간	6시간	3년차	10시간	-	4시간	6시간	2년차	10시간	-	4시간	6시간	1년차	35시간	25시간	4시간	6시간	<table><tr><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3">교육 시간</th></tr><tr><th>총 계</th><th>양성교육</th><th>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th></tr><tr><td>4년차 이상</td><td>7시간</td><td>-</td><td>7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2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1년차(2026년 양성)</td><td>25시간</td><td>25시간</td><td>-</td></tr></table>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 (원격포함))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교육																																																							
4년차 이상	10시간	-	4시간	6시간																																																							
3년차	10시간	-	4시간	6시간																																																							
2년차	10시간	-	4시간	6시간																																																							
1년차	35시간	25시간	4시간	6시간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																																																								
언어 발달 지원	사업운영	※ 근무형태별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한 주 최소 운영반 수 및 회기 수 준수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2">센터 내</th><th colspan="2">외부기관</th></tr><tr><th>운영반 수</th><th>운영회기 수</th><th>운영반 수</th><th>운영회기 수</th></tr><tr><td>섬·벽지지역</td><td>6</td><td>12</td><td>5</td><td>10</td></tr><tr><td>주 5일제</td><td>10</td><td>20</td><td>8</td><td>16</td></tr></table>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섬·벽지지역	6	12	5	10	주 5일제	10	20	8	16	※ 근무형태별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한 주 최소 운영반 수 및 회기 수 준수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2">센터 내</th><th colspan="2">외부기관</th></tr><tr><th>운영반 수</th><th>운영회기 수</th><th>운영반 수</th><th>운영회기 수</th></tr><tr><td>섬·벽지지역</td><td>3</td><td>6</td><td>2</td><td>5</td></tr><tr><td>주 5일제</td><td>5</td><td>10</td><td>4</td><td>8</td></tr></table> ※ 시간제 및 외부기관 연계의 경우, 비례 적용 혹은 외부기관 기준에 따름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섬·벽지지역	3	6	2	5	주 5일제	5	10	4	8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섬·벽지지역	6	12	5	10																																																							
주 5일제	10	20	8	16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섬·벽지지역	3	6	2	5																																																							
주 5일제	5	10	4	8																																																							
		2) 서비스 연장 기간 ○ 연장기준 : 1회에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24개월) - 서비스 횟수를 연장하게 될 경우 연장소견서 승인 필수	2) 서비스 연장 기간 ○ 연장기준 : 1회에 6개월, 최대 1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12개월) - 서비스 횟수를 연장하게 될 경우 연장소견서 승인 필수																																																								

구분	내 용	2025년도	2026년도																																																							
	교육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4">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 colspan="2">보수교육</th></tr><tr><th>집합교육 (원격포함)</th><th>온라인</th></tr><tr><td>4년차 이상</td><td>10시간</td><td>-</td><td>5시간</td><td>5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5시간</td><td>5시간</td></tr><tr><td>2년차</td><td>15시간</td><td>-</td><td>10시간</td><td>5시간</td></tr><tr><td>1년차</td><td>39시간</td><td>24시간</td><td>10시간</td><td>5시간</td></tr></table> * 1, 2년차 슈퍼비전(5시간) 포함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0시간	-	5시간	5시간	2년차	15시간	-	10시간	5시간	1년차	39시간	24시간	10시간	5시간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3">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보수교육</th></tr><tr><th>(대면/원격/이러닝)</th></tr><tr><td>4년차 이상</td><td>7시간</td><td>-</td><td>7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2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1년차(2026년 양성)</td><td>24시간</td><td>24시간</td><td>-</td></tr></table>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 2, 3년차 슈퍼비전(5시간 포함)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4시간	24시간	-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0시간	-	5시간	5시간																																																						
2년차	15시간	-	10시간	5시간																																																						
1년차	39시간	24시간	10시간	5시간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4시간	24시간	-																																																							
	임용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 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채용)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통번역 서비스	임용	-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신규집합양성교육 절차를 면제함(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채용)	-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종사자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교육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4">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 colspan="2">보수교육</th></tr><tr><th>집합교육 (원격포함)</th><th>온라인</th></tr><tr><td>4년차 이상</td><td>10시간</td><td>-</td><td>5시간</td><td>5시간</td></tr><tr><td>3년차</td><td>13시간</td><td>-</td><td>5시간</td><td>8시간</td></tr><tr><td>2년차</td><td>18시간</td><td>-</td><td>10시간</td><td>8시간</td></tr><tr><td>1년차</td><td>50시간</td><td>32시간</td><td>10시간</td><td>8시간</td></tr></table>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3시간	-	5시간	8시간	2년차	18시간	-	10시간	8시간	1년차	50시간	32시간	10시간	8시간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3">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보수교육</th></tr><tr><th>(대면/원격/이러닝)</th></tr><tr><td>4년차 이상</td><td>7시간</td><td>-</td><td>7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2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1년차(2026년 양성)</td><td>32시간</td><td>32시간</td><td>-</td></tr></table>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32시간	32시간	-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3시간	-	5시간	8시간																																																						
2년차	18시간	-	10시간	8시간																																																						
1년차	50시간	32시간	10시간	8시간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32시간	32시간	-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 운영	2)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사업과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중 직접교육을 운영하는 센터 가.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2)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사업과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중 직접교육을 운영하는 센터 가.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table><tr><th>구분</th><th colspan="2">2025년</th></tr><tr><td rowspan="3">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td><td>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②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80차시 이상, 연간 5명 이상 (1개 과정 이상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 colspan="2">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td></tr><tr><td>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총 15명 이상, 3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td></tr></table>	구분	2025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80차시 이상, 연간 5명 이상 (1개 과정 이상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5명 이상, 3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table><tr><th>구분</th><th colspan="2">2026년</th></tr><tr><td rowspan="3">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td><td>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②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 colspan="2">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td></tr><tr><td>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td></tr></table>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구분	2025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80차시 이상, 연간 5명 이상 (1개 과정 이상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5명 이상, 3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연간 2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구분	내 용	2025년도	2026년도																																																							
		나.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이중언어 코치가 직접교육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table><tr><th>구분</th><th colspan="2">2025년</th></tr><tr><td rowspan="3">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td><td>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이중언어교실)</td><td>-</td></tr><tr><td colspan="2">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td></tr><tr><td>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총 20명 이상, 4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td></tr></table>	구분	2025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20명 이상, 4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나.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이중언어 코치가 직접교육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table><tr><th>구분</th><th colspan="2">2026년</th></tr><tr><td rowspan="3">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td><td>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td></tr><tr><td>(이중언어교실) -</td><td>-</td></tr><tr><td colspan="2">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td></tr><tr><td>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td><td>① 이중언어 직접교육</td><td>연간 총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td></tr></table>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	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구분	2025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20명 이상, 4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총 307명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																																																								
	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임용	- 이중언어코치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집합 양성교육 절차를 면제함 (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채용)	- 이중언어코치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종사자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6시간 이수 후 채용)																																																							
	교육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4">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 colspan="2">보수교육</th></tr><tr><th>집합교육 (원격포함)</th><th>온라인</th></tr><tr><td>4년차 이상</td><td>10시간</td><td>-</td><td>5시간</td><td>5시간</td></tr><tr><td>3년차</td><td>13시간</td><td>-</td><td>5시간</td><td>8시간</td></tr><tr><td>2년차</td><td>18시간</td><td>-</td><td>10시간</td><td>8시간</td></tr><tr><td>1년차</td><td>43시간</td><td>25시간</td><td>10시간</td><td>8시간</td></tr></table>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3시간	-	5시간	8시간	2년차	18시간	-	10시간	8시간	1년차	43시간	25시간	10시간	8시간	<table><tr><th rowspan="3">기 준</th><th colspan="3">교육 시간</th></tr><tr><th rowspan="2">총 계</th><th rowspan="2">양성교육</th><th>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th></tr><tr><th></th></tr><tr><td>4년차 이상</td><td>7시간</td><td>-</td><td>7시간</td></tr><tr><td>3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2년차</td><td>10시간</td><td>-</td><td>10시간</td></tr><tr><td>1년차(2026년 양성)</td><td>25시간</td><td>25시간</td><td>-</td></tr></table>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집합교육 (원격포함)	온라인																																																						
4년차 이상	10시간	-	5시간	5시간																																																						
3년차	13시간	-	5시간	8시간																																																						
2년차	18시간	-	10시간	8시간																																																						
1년차	43시간	25시간	10시간	8시간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운영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예외 : 관내 운영기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1개소밖에 없거나, '24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기 지정된 경우 선정절차 생략가능('25년까지 연장적용)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예외 : 관내 운영기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1개소밖에 없거나, '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기 지정된 경우 선정절차 생략가능('26년까지 연장적용)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비고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 방문교육사업 대상자 통보서 당해년도만 유효(이월대상자 및 재연계 대상자 재판정)

나. 사업기간 : 1~12월

다. 서비스별 세부 내용

항 목	내 용
내 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이수 후 서비스 제공
대 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시 센터교육 중 성평등·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 이수시 우선 연계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 ①임신·출산·영아기(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②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항 목	내 용						
세부 내용	<table border="1"> <tr> <td>한국어교육 서비스</td><td>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td></tr> <tr> <td>부모교육 서비스</td><td>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td></tr> <tr> <td>자녀생활 서비스</td><td>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td></tr> </table>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방 법	- 운영시간 : 주 2회기 서비스 제공, 1회기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2시간 서비스 제공시간 준수) - 서비스 제공 회기 및 기간 - 한국어교육서비스 : 80회기 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40회기 제공(생애주기별 총 3회(1회당 40회기)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80회기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은 12개월(한국어, 자녀생활)·6개월(부모교육)이내로 제공,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 - 단, 특별한 사유(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별 이용자 대기가 없는 경우 등 센터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6개월, 40회기) 연장 가능(부모 교육서비스 제외)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table border="1"> <tr> <td>개별수업</td><td>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td></tr> <tr> <td>그룹수업</td><td>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대상자 최대 3명까지)</td></tr> </table> ※ 지역 특성에 맞춰 센터 등 지역 거점공간을 활용한 수업 실시 가능 ※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 ※ 쌍둥이의 경우 1가정 1개 반으로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 진행 가능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에 협조(당해년도 하반기) -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진행 중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개별수업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그룹수업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대상자 최대 3명까지)		
개별수업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그룹수업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대상자 최대 3명까지)						
교 재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2019년 국립국어원 발간 교재)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2 / 중급 1, 2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 2 / 중급 1, 2 -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프로그램(국립국어원)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4(저학년용)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4(고학년용)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1·2 / 3·4 / 5·6학년용) -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4(중고등학생 공통) -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중학생 / 고등학생용)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서비스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매뉴얼 및 워크북(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생활서비스 유아기 1, 2단계, 학령기 1, 2단계 매뉴얼 및 워크북(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 방문교육 신청

-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이용자
- 센터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 서류
 - (공통필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서비스 본인 부담금 사업 신청서
 - (공통선택)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 위의 ①과 ②중 택 1
 - * 회원등록을 위한 최초 실명인증 후 개인정보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하지 않음(즉시 반환 또는 폐기)
- 방문교육서비스 등록 시 제출 서류
 - (방문 선택) 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③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
- 회원 모집 기간 : 연중 수시 모집

나. 방문교육 회원관리

1)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선발 및 서비스 제공원칙

- 시·군·구는 방문교육대상자 선정 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을 통한 방문교육대상자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방문교육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중도입국자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붙임 별표 1 참조)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지원 및 대기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 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

우선 선정 대상
◇ 아동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동시 제공이 순차적 또는 단독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경우 ※ 상기의 경우 병행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 해당 지역의 대상 아동수가 적어서 2차례 이상 모집 및 발굴 노력에도 그룹별 정원에 미달할 경우

- 센터 미설치, 방문교육서비스 미실시지역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센터 간 서비스 연계 지원
- 방문한국어·부모교육 대상자 선발 시 유의사항
 -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①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②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 등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 ③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④ 임신·출산직후·가족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 ※ 대상자 선정 시 사유를 엄격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수요파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 방문 희망 시간 등 서비스 수요 파악 철저

2)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교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음
 - ① 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②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 ③ 지원 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된 경우
 - ④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 ⑤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 ⑥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비스 중지에 따른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간의 절반 미만 진행 : 서비스중지사유서, 대상자별결과보고서
 - 서비스 제공기간의 절반 이상 진행 : 서비스중지사유서, 대상자별결과보고서, 사후검사지
- 신청한 서비스기간 또는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가 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 * 단, 2016년 이후 서비스 중단자(중지자) 중 서비스 중단(중지) 사유가 출산, 모국방문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스템에 반개설 시 남은 회기 서비스 제공 가능

3) 방문교육서비스 일시중지

- 대상가정 또는 센터사정에 의한 일시중지 : 총 이용기간 내 최대 4주까지 가능
 - 일시중지에 의한 잔여회기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회기 연장 가능
 - 서비스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지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지도사에 의한 일시중지 : 지도사 개인 사유에 의한 일시중지기간은 최대 4주까지 허용되나 중단에 대한 대상가정의 동의를 받아 진행
 - 대상가정과 협의 후 보충수업 진행 또는 일시중지기간 만큼의 서비스 연장 진행
 - 4주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도사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방문교육서비스 취소

- 서비스 취소 :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이용가정을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이용자의 부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회기 차감(자부담금 부담자는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
 - 취소에 의한 회기는 연장 불가
 - ※ 사전협의에 의해 수업 취소 시 회기 연장 가능
 - 서비스 취소가 발생할 경우, 방문교육 확인서(서식5)의 특이사항에 사유 등을 작성
- 단,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예외
 - 대상 이용자의 질병, 사고 발생시
 -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생 병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 이용자의 2촌 이내 혈족(부모·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 사망사실 및 이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 방문교육지도사 운영 규모

- 센터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할 지도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
- 지도사는 4가구 이상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임신, 출산, 육아, 건강 및 이동 시간(섬·벽지지역), 지역에 수요가 없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사 1인당 4가구 미만 담당 가능
 - * 단, 지도사 1인당 주 40시간 초과 활동 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센터 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 겸직한 업무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예) 한국어강사, 아이돌보미 등 겸직하는 경우 해당사업 예산에서 보수 지급(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지도사 중도 퇴사 시, 배정실적 조정 가능(시·군·구 승인 후 시·도 보고)
 - *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배정내역을 조정해야 함

나. 방문교육지도사 자격 기준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생활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2020년 이전 채용된 생활지도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다. 방문교육지도사 임면

1) 채용 및 임용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를 재채용할 경우 양성교육은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 선정방법

- 센터별로 인사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지도사 활동의 지속 여부 등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장기간(3년 이상) 국내체류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 임용

- 센터장은 선발되어 양성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로 임명(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 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임명된 지도사는 지도사 관리대장 작성
-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 * 다만, 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고용형태임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2) 면직 및 징벌

- 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지도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방문교육지도사증 반납 조치
 - 4주를 초과하여 방문교육서비스에 나갈 수 없는 경우(모성보호휴가 및 업무 외의 질병·사고로 인한 병가(60일) 제외)
 - 정해진 보수교육 의무시간 미충족자
 - 대상자로부터 지속적 민원야기로 서비스 불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출퇴근 미준수 및 출퇴근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징계위 회부 가능
 - 이밖에도 센터장이 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 가능*

* 인사위원회는 선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면직 시 지도사 면직원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센터는 후임 지도사를 선발하여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여야 함

1) 양성교육

- 교육대상 : 당해 연도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임용 예정자(생활지도사만 해당)
 - ※ 센터는 양성교육대상자의 교육 수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내·감독하여야 함
 - 한국어교육지도사는 상·하반기 시행되는 양성교육을 통해 생활지도사로 전환할 수 있음
- 교육시기 : 연 2회
-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 : 25시간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정책, 매뉴얼 활용 교수법 등
 - * 온라인교육 수강 후 과제와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오프라인 교육 이수 가능
-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명된 지도사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활동내용, 지도사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내 회의보고서 작성

2)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 단, 직계존비속 사망, 7일 이상 본인 입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집합교육(4시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외(별도 교육과정 적용, 추후 공지)
- 교육시기 : 하반기
- 교육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보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해당 직무의 최근 양성교육 수료년도 기준)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3) 회의 및 수시교육

- 회의 및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회의 및 교육기간 : 필요 시 진행
- 회의 및 교육횟수 : 필요 시 진행
- 회의 및 교육기관 : 각 지역센터

※ 각 지역센터는 회의, 수시교육 실시 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내 보고서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수시교육	• 강사 : 센터장, 직원, 외부전문강사 등(지도사 불가) • 교육내용(예시) : 지도사 공통영역 교육 ① 정책·행정 : 정책·사업운영, DB교육 등 ② 법률·인권 ③ 상담·사례관리(지도사간 사례회의 제외) ④ 문화이해 : 다문화사회이해 및 각 나라 문화교육 ⑤ 기타	필요 시
회의	• 진행 : 방문교육사업 담당직원 등 • 회의내용 : 공지, 사업운영회의, 대상가정 사례회의, 워크숍 등	필요 시

4) 직원 교육

- 센터 직원 필수 교육 : 가족사업안내 I 권 ‘바. 센터 직원교육’ 참조

가.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 활동기간 : 연중

※ 연중사업으로 방학기간 별도 없음(80회기, 40회기)

※ 서비스종료 후 다음주 서비스대기가정 연계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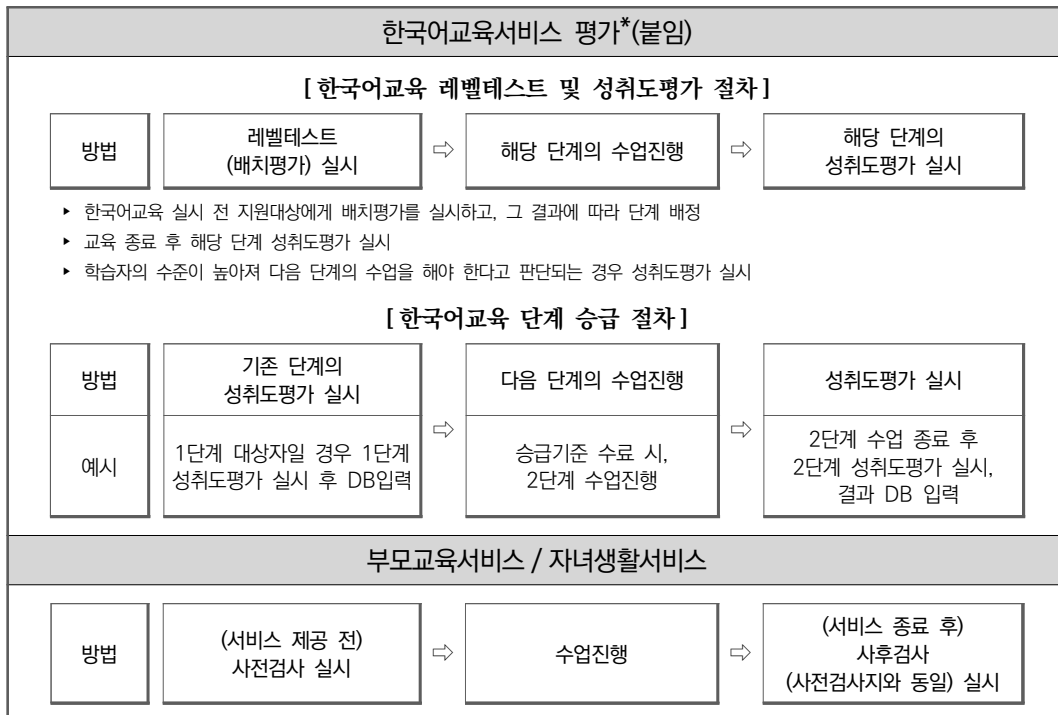
(서비스종료 예정 2주(4회기)전 방문교육지도사는 센터에 종료예정사항 알림, 신규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알림기간 조정가능)

○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지도사는 대상가정 연계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지도사는 대상가정의 서비스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사전·사후 검사 실시

- 지도사는 사전·사후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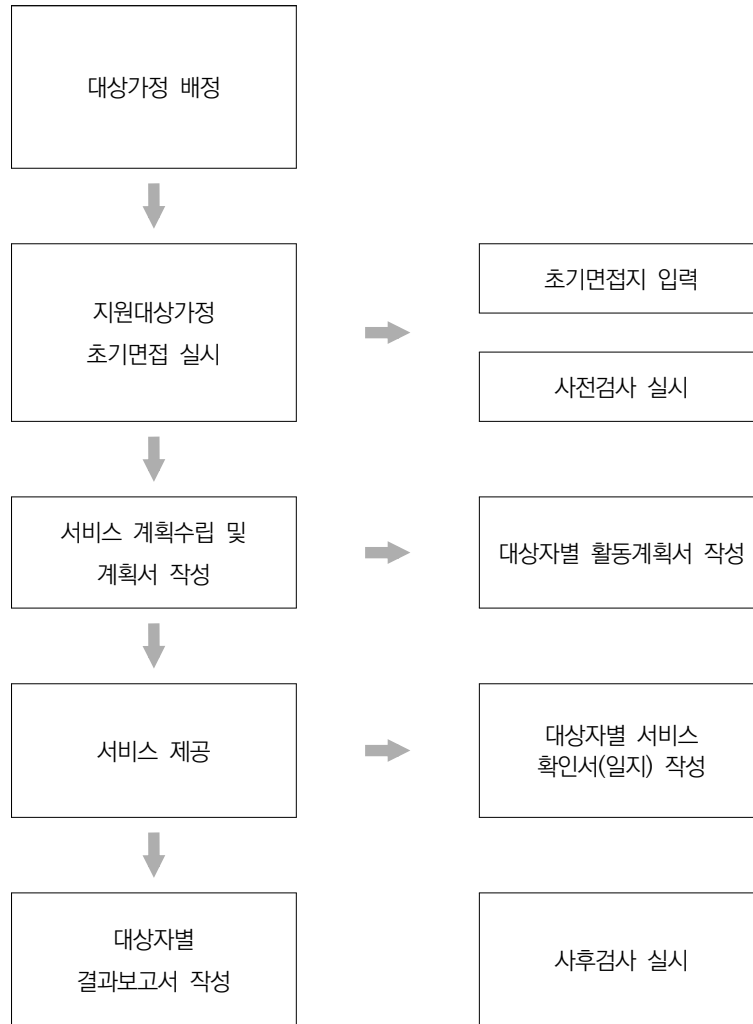
나. 실적보고

- 월간실적보고 제출 : 다음달 5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

다. 활동 관리

- 해당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센터(방문교육담당자)는 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진행 중 1회 이상 활동시작 및 종료 등의 상황을 서비스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 센터는 지도사 관리 대장에 양성교육수료번호,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고, 지도사 준수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며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증을 교부한다. 아울러, 방문교육지도사 출퇴근 관리를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출퇴근 앱 등을 활용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단, 방문교육지도사 출퇴근 앱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는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제출받아야 가능하다.
- 지도사는 서비스확인서(서식 5)를 매 수업시간 내 작성, 대상자에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별도 제출하고, 수업 3일내에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일지 메뉴 중 일시 확인 저장
 - * 센터는 서비스 확인서와 일지를 검토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지도사 수당지급 근거로 활용
- 센터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 겸직한 업무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예) 한국어강사, 아이돌보미 등 겸직하는 경우 해당사업 예산에서 보수 지급

[지도사 업무체계도]



5-1 한국어교육서비스 평가

가. 평가 방법

- 문항 수, 시간, 배점 등에 대한 안내

○ 배치 평가 문항

- 평가 영역별 배점 : 이해 영역 70점, 표현 영역 30점

- 수험 시간 : 60분

• 듣기(12문항) + 읽기(16문항) + 쓰기(1문항) : 50분

• 말하기(1문항) : 10분

※ 객관식 시간에 제한을 두어 주관식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 듣기, 읽기, 쓰기를 수행한 후 말하기 시험지를 제공함

* 수험자가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말하기 관련 정보를 유출 금지

평가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배 점
이해	듣기	객관식	1급 4문항 2급 4문항 3급 4문항	30점 (2.5점×12)
	읽기	객관식	1급 8문항 2급 4문항 3급 4문항	40점 (2.5점×16)
표현	쓰기	주관식	1문항	15점 (15점×1)
	말하기	문답식	1문항	15점 (15점×1)
합계			30문항	100점

○ 성취도 평가 문항

- 평가 영역별 배점 : 이해 영역 60점, 표현 영역 40점

- 수험 시간 : 60분

• 듣기(10문항) + 읽기(10문항) + 쓰기(2문항) : 45분, 말하기(3문항) : 15분

※ 듣기, 읽기, 쓰기 시간에 제한을 두어 문답식 평가 시간 확보

※ 듣기, 읽기, 쓰기 평가 수행을 완료한 후 말하기 시험지 제공

※ 수험자가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말하기 평가 문항 유출 금지

평가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배 점
이해	듣기	객관식	10문항	30점 (3점×10)
	읽기	객관식	10문항	30점 (3점×10)
표현	쓰기	주관식	2문항	16점 (8점×2)
	말하기	문답식	3문항	24점 (8점×3)
합계			25문항	100점

나. 단계 배정 기준

○ 배치 평가

－ 급별 배치 기준 점수

배치 급수	듣기 / 읽기 최저 점수	쓰기 / 말하기 수준
2급	19점~33점	1급(0~4점)
3급	34점~50점	2급(5~9점)
4급	51점~60점	3급(10~14점)

－ 배치평가에서 객관식 시험(듣기와 읽기)은 급별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함

예) 2급에 배정되려면 19점 이상, 3급에 배정되려면 34점 이상, 4급에 배정되려면 51점 이상의 점수를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받아야 한다.

－ 배치평가에서 주관식 및 문답형 시험(쓰기와 말하기)은 영역별 합계 점수로 다음과 같이 급을 배정한다.

※ 단, 합계 점수로 2급, 3급, 4급에 배정되었으나 발음 / 맞춤법, 내용, 구조, 전반적 능력 등 네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0점이 있으면 하위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1급 배정 : 0점 ~ 4점
- 2급 배정 : 5점 ~ 9점
- 3급 배정 : 10점 ~ 14점
- 4급 배정 : 15점

－ 배치평가에서 듣기와 읽기 등 객관식, 쓰기, 말하기 채점 결과, 세 영역(듣기와 읽기는 객관식 한 영역으로 설정) 중, 두 영역 이상에서 동일 급인 경우 해당 급에 배정한다. 세 영역이 모두 다른 경우 가운데 급으로 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1) 객관식 A급, 쓰기 A급, 말하기 A급 - A급 배정
- 예2) 객관식 A급, 쓰기 A급, 말하기 B급 - A급 배정
- 예3) 객관식 A급, 쓰기 B급, 말하기 B급 - B급 배정
- 예4) 객관식 A급, 쓰기 B급, 말하기 C급 - B급 배정

○ 성취도 평가

- 진급 기준 : 합산 100점 만점 중 62점을 충족하면 진급 가능함
 - 이해 영역 60점의 70%인 42점 이상
 - 표현 영역 40점의 50%인 20점 이상

다. 채점 관련 사항

○ 배치 평가 주관식/문답식 채점 기준

- 쓰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별도 평가
- 총점 : 30점(쓰기 15점 + 말하기 15점)

분석적 채점 (9점)	맞춤법 (쓰기) 발음 (말하기)	3	4급	발음, 억양, 맞춤법이 정확하고 자연스럽다.
		2	3급	발음, 억양, 맞춤법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1	2급	발음, 억양, 맞춤법에 오류가 있으나 이해 가능하다.
		0	1급	발음, 억양, 맞춤법 오류가 많고 이해 불가능하다.
	내용	3	4급	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전개한다.
		2	3급	과제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1	2급	과제에 대해 답하나 내용이 단순하고 빈약하다.
		0	1급	과제에 대해 거의 답하지 못한다.
	구조	3	4급	이야기를 문단 단위로 구성하며 기승전결이 명확하다.
		2	3급	복문 사용이 가능하며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1	2급	단문을 사용할 수 있다.
		0	1급	단문 구성을 하지 못한다.
총체적 채점 (6점)	전반적 능력	6	4급	개인적, 사회적 소재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4	3급	개인적, 사회적 소재에 대해 필요한 표현들을 한다.
		2	2급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한 표현들을 한다.
		0	1급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 구성을 하지 못한다.
합계(15점×2)				

○ 성취도 평가 주관식 / 문답식 채점 기준

- 쓰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별도로 평가한다.
- 문항별로 6점, 8점,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다.
 - 1급 쓰기과 말하기 : 각 8점
 - 2급~4급 쓰기과 말하기 : 각 6~10점 * 배점표 추후 제공 예정

분석적 채점	발음(말하기) 맞춤법(쓰기)	2	상
		1	중
		0	하
	내 용	2	상
		1	중
		0	하
	구 조	2	상
		1	중
		0	하
총체적 채점	전반적 능력	2	상
		1	중
		0	하
합계(8점 만점)			

라. 평가 절차

○ 말하기 평가 진행 안내도(성취도 평가)

단 계	평 가 자	학 습 자	소요시간
평가 전	1. 간단한 인사 후 착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1. 간단한 인사 후 착석 “안녕하십니까?”	30초
	2. 수험자 인적 사항 확인 (녹음기를 켜고 질문) “이름이 무엇입니까?”	2. 이름 말하기 (녹음기에 응답) “○○○입니다.”	
	3. 학습자용 문제지 제공	3. 학습자용 문제지 확인	
평가 중	1. 1번 문제 제시 - 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무례하지 않게 중단하고 2번으로 넘어감	1. 1번 문제 풀이	3분
	2. 2번 문제 제시 - 1~2급은 역할극임을 충분히 인지시킴 - 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무례하지 않게 중단하고 3번으로 넘어감	2. 2번 문제 풀이	4분
	3. 3번 문제 제시 - 4급의 경우 수험자가 지문을 읽을 시간을 제공한 후 질문 시작 (※ 4급에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면 추가로 1분의 시간을 준다.)	3. 3번 문제 풀이	5분 (4급 시험 : +1분)
평가 후	평가 응시자와 수고의 인사를 나누되 성적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음	퇴장	30초

※ 말하기 평가 중 ‘평가자가 할 수 있는 말’과 ‘수험자의 예상 발화’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 재교육에서 제공됨. 채점자는 채점 실습을 통해 시험의 전반적 과정이 체득되어야 함

○ 말하기 평가 시 유의 사항

- 평가 중 단계
 - 평가자는 평가지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 원활히 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자는 수험자에게 위압을 주지 않도록 복식과 언행을 주의한다.
- 평가 중 단계
 - 평가자는 평가 내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평가자는 수험자의 인적사항 확인 외의 불필요한 질문을 자제한다.
 - 평가자는 수험자가 즉답을 하지 못하여도 7~10초 간 충분히 기다린다.
 - 평가자는 수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할 때, 이를 다그치거나 정답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 평가 후 단계
 - 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수험자는 물론, 동료 교사들과 나누지 않는다.
 - 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마. 기타 관리 방안

○ 평가지 관리

- 기관 담당자는 특정 누리집에 접속하여 파일을 내려 받도록 함.
평가지 파일 및 듣기 파일은 보안 관리에 유의하도록 함
- 수험 중 시험지 제공 순서
 - 듣기, 읽기 시험에 35분, 쓰기에 15분이 걸림. 이후 말하기 시험지는 위 시험지를 모두 수거한 후 제공하여 15분간 시행됨. 말하기 시험지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함
- 수험 시, 수험자가 말하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림이나 도표는 듣기, 읽기, 쓰기 평가지를 회수한 후 제공함. 문제 정보를 유출하여 수험자가 말하기를 미리 준비하게 해서는 안 됨
- 학습자가 사전에 평가 문항을 볼 수 없게 사전에 보안에 유의하며, 말하기 평가지는 기관에 <교사용>과 <학습자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함

○ 영역별 관리

- 읽기, 쓰기
 - 평가 문항지, 정답지
- 듣기
 - 듣기 파일을 열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휴대용 재생기기
 - 평가 문항지, 채점표(교사용)
- 말하기
 - 평가 문항지(교사용, 학습자용), 채점표(교사용)
 - 녹음 장비(음성 녹음기) * 녹음된 파일은 운영자 또는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검사지 종류

서비스 구분	내 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배치 평가 • 한국어교육 성취도 평가	
부모교육 서비스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검사 • 양육관·양육태도검사 • 아동발달지식검사	
자녀생활 서비스	인지영역	• 미취학 : 미 실시 • 초등 1~2학년 :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인지 진단도구 • 초등 3~6학년 : 국어, 수학 학교시험점수(직전, 해당학기)
	자아·정서·사회 영역	• 자아 : 자아존중감 척도(유아용, 초등학생용) • 정서 :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문제행동증후군(전체) • 사회 :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사회적 능력(전체)
	문화역량 영역	• 미취학 : 미 실시 • 초등 1~6학년 다문화인식 척도

가. 예산 집행기준

- 지도사 시급 : 13,23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당 2,650원 추가 지급)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가능하며, 센터사정이나 서비스가정 요청(서비스 확인서, 특이사항에 기록)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운 경우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
- 그룹수업 시 시급의 50% 가산
 - ※ 초기면접 포함 수업 2시간 실시하는 경우 1회 수업 인정 및 시급 지급 가능
- 지도사 교육비 : 시급 × 교육시간 × 1.5배
 - 지도사 교육비는 집합교육(원격포함, 보수교육 등)에 참여했을 경우 지급
 - ※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가산수당(0.5배) 지급
- 지도사 회의비 : 시급 × 회의시간 × 1.5배
 - 지도사 회의비는 직무관련 회의(원격포함)에 참여했을 경우 지급
 - ※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가산수당(0.5배) 지급
- 지도사 교통비 : 활동 횟수별 산정
 - 도시형 : 1회당 3,500원 지급
 - 농촌형 : 1회당 4,000원 지급
 - 섬·벽지 지역* : 1회당 5,500원 지급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별표 1 참조)
 - ※ 위와 같은 교통비 기준을 상회하는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주유비 영수증, 유료도로 영수증 등 최초 1회) 제출시 추가지급 가능,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1일 1만원 한도로 실비 추가 지급 가능(주유비, 대중교통 이용 실비로 한정, 지도사 1인당 월 31만원 이내)
 - ※ 지도사 교통비의 경우 센터별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내 지급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예산 편성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사업비	사업비	특성화 사업비	○ 인건비 - 급여 : 시급×시간 ※ 교육비, 회의비 포함 - 제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급여 지급일 기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실근무한 경력이 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월 7만원 수당, 60개월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수당, 84개월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수당 지급 - 명절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최저 200천원 이상) 지급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총당금) - 사회보험부담금 : 지도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노무관리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소규모수선비·포장비·휴대용녹음기 등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 기타 운영비 :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등 - 여비 :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실비 정산 원칙) 등 ○ 사업비 : 방문교육 교재교구비 등

* 특성화사업 통장은 1개로 사용 가능(센터사업비 전용불가)

○ 방문교육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 센터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내역구분 없이, 인건비와 사업비(운영비)를 각각 집행 가능

* 인건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운영비)로 전용·집행 가능(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 집행은 불가)

*** (집행예시) 특성화사업 예산 250백만원을 교부받은 센터의 경우**

■ 예산 : 방문 90백만원, 통번역 50백만원, 언어발달 60백만원, 이중언어 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현 행 (2024년)					개 정 (2025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방문교육	90	60	85	-	➤	250	165	85	-
통번역	50	30		-					
언어발달	60	40		5					
이중언어	50	25		5					
합계	250	155	85	10		250	165	85	-

- 방문교육사업은 연중사업으로 1년 집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후 집행 준수
 -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 ※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 ※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방문 한국어교육 말하기, 듣기 평가를 위한 휴대용녹음기 구입 가능
- 교재교구비는 서비스 1가구 1회기 당 35,000원(40회 교육 시) 이상 또는 70,000원(80회 교육 시) 이상 소모성 교재교구비를 70% 이내로 하여 방문 교육지도사에게 수요조사 후 센터에서 일괄구매하여 제공(방문학습지 구매 불가)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사업내용

- 1) 사업 기간 : 1월 ~ 12월
- 2) 적용 서비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나. 이용신청

- 1)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정부지원 신청 가능
- 2) 서비스 이용 신청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인이 정부지원 결정 정보 통보 받은 1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됨. 따라서 확인 시점에 따라 정부지원 결정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1)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5,880원(회당 31,760원)
 ※ 4주 기준(8회, 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 2) 서비스 이용 단위
 - 주 2회기 서비스 제공, 1회기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4주 8회기 이용, 4주 단위로 서비스 신청 이용
- 3)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1,110원 또는 15,880원 차등 지원
- 4)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예정)에 따라 '26년 연중 소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 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단가(원 / 시간)		비고(4주 부담금) * 4주 8회기,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5,88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1,110원	4,770원	76,3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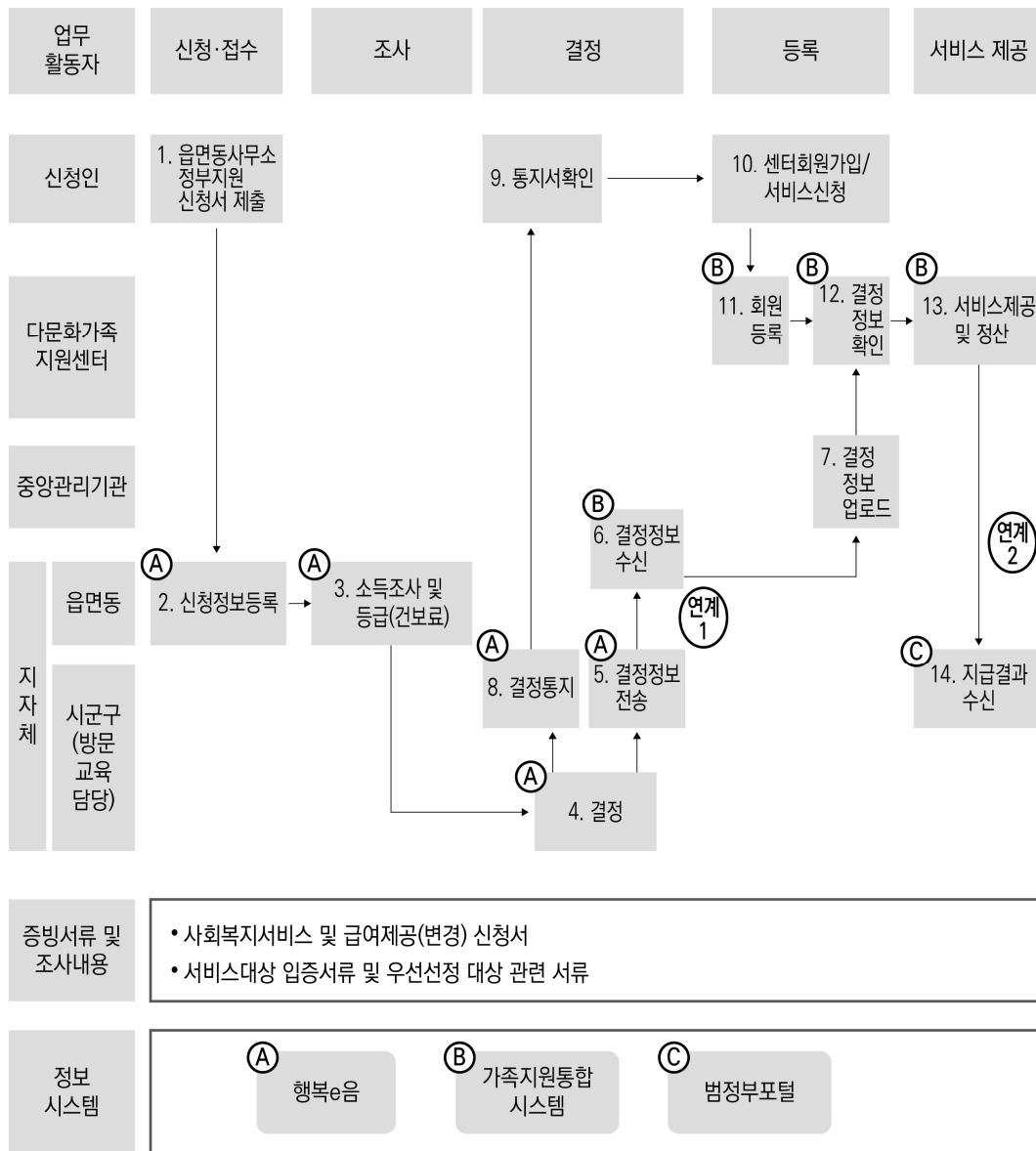
-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무상)
 - 다문화가족 중 섬·벽지* 지역 거주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별표 1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서비스 신청 취소 시 :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이용가정을 방문 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이용자의 부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 요금 전액을 부담
단,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예외
 - 대상 이용자의 질병, 사고 발생시
 -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생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 이용자의 2촌 이내 혈족(부모·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
 - ※ 사망사실 및 이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8

서비스 제공

가.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지원 절차

1) 서비스 이용 절차도



2)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인(본인,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서비스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선정 대상 관련 서류 • 신청 후 처리기간 : 14일 이내
② 소득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③ 지원 유형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 유상지원대상 :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 무상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 섬·벽지*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별표 1 참조)
④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비스 이용신청 - 대상자가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회원 등록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지도사 연계 가능 확인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본인부담금 선입금 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단위 - 주 2회기, 1회기당 2시간, 4주 8회기 이용, 4주 단위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적용 서비스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방문교육지도사 급여 정산 및 지급
⑤ 사후관리 (시·군·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행복e음 정부지원) - 사망, 말소, 가구원 전출입(변동정보 자동 처리) -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비스 중지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요청

3) 업무처리 절차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담 당
정부지원 신청	1. 신청서 제출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면·동
	2. 신청정보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 등록	
조사	3. 소득조사 및 등급 (건강보험료)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건보료 확인 및 지원 유형 자동 결정	
결정	4. 결정 5. 결정 정보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 최종 결정 및 결정정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시·군·구
	6. 결정 정보 수신	결정 정보 수신	중앙관리 기관
	7. 결정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시·군·구
	8. 통지서 확인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확인 - 결정통보서 유효기간 : 당해년도	신청인
	9. 결정정보 입력	중앙은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결정정보 확인 후 결정 정보 입력	중앙관리 기관
지급 (서비스 제공)	10. 회원가입/서비스 이용 신청	신청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 - 본인부담금 4주별 선입금액 확인	신청인
	11. 회원등록	센터는 회원등록 처리	센터
	12.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7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로 선입금	신청인
	13. 방문교육지도사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서비스 신청자와 방문교육지도사 연계, 서비스 제공	센터
	14. 정산 및 방문 교육지도사 급여 지급	센터는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지도사에게 급여 지급 - 방문서비스 확인서를 근거로 급여 산정	
사후관리	15. 서비스 사후관리	센터 담당자는 이용제한,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16.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가원

나. 신청서 접수 및 정부지원 결정

1) 정부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 신청권자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인(본인, 부모, 양육권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위임장, 서비스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선정 대상 관련 서류 등 지참

나)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
 - 자녀생활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관련 서류

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2) 정부지원 결정 : 사업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센터에서 사업 추진

〈 서비스 대상 여부 입증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기준 확인 방법 〉

○ 서비스 대상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여부 (① ~ ③ 중 택 1)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행복e음 연계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③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2(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적용	○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우선 선정 대상 기준(다문화가족 해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행복e음 연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여부	행복e음 연계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행복e음 연계
		-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이 아닌 경우(소득기준 초과 등)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서류 제출
장애가정		○ 장애인 등록증(가족 구성원 중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맞벌이 가정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미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 직장건강보험 미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 주민등록정보	행복e음 연계
		○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 주민등록정보	행복e음 연계

가) 가구 소득 기준

(1)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별표2] 기준 참고

※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잡정)에 따라 '26년 연중 소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행복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직장에 취업한 자의 소득은 수동입력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 (예 : 소득 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무관하게 “가”형(무상)으로 판정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 부모 및 자녀 이외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자(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녀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소득을 모두 합산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녀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반영이 원칙

○ 실거주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실거주 인원을 반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조사 (방문교육지도사 방문 시 확인도 가능) 등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 소득을 합산(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나) 거주지역 기준

(1) 서류상 거주지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 서류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무상지원 여부 결정

다) 방문교육서비스 간 중복금지

(1) 타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2) 기존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추가 제공 불가

라) 기존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1) '1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잔여 서비스 기간(회수)이 남은 경우

* 1인당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40회기) 또는 12개월(80회기) 유지

(2) 특례 대상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6개월, 40회기) 연장가능

-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 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

○ 2016년 이후 서비스 중단자 중 서비스 중단사유가 출산, 모국방문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스템에 반개설 시 남은 회기 서비스 제공 가능

3) 신청정보 전송 및 관련서류 보관

가) 신청정보 전송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

나) 관련서류 보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5년간 보관

4) 결정 및 통보(시·군·구)

가) 정부지원 결정

- (1) 시·군·구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결정 처리
 - 소득산정, 유형결정 등 오류 발생시 시·군·구에서 해당 정보 수정 후 결정 또는 민원으로 반려, 각하 처리
- (2) 시·군·구 담당자는 주 2회 이상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나)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및 업로드

※ 신청인이 정부지원 결정 정보 통보 받은 후 1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업로드 됨. 따라서 확인 시점에 따라 정부지원 결정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결정 정보 통보

- (1)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
- (2)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SMS 또는 유선, 행복e음 e그린 우편으로 통보 가능(결정통보서 유효기간 : 당해 연도)

5) 지원대상자 변동 처리

가) 가구원 현황 및 주소 변경

-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말소, 전출입 등 변동정보는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서비스 중지 처리 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및 업로드

- 관외 전출 시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하여 자격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관외 전출에 의한 중지의 경우 전출지역에서 중지 처리하는데 1일 소요됨. 전입기관에서는 전입신고 이후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 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서비스 자격 상실시 서비스 자동 중지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1)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소득액 변경 등으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 단, 정부지원 유형 변경 신청은 1일 1회만 가능(1일 중복 신청 불가)
- (2)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조사 완료 후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업로드, 변경된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등급 변경은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가 전송된 다음 달 서비스 신청 시 적용

다)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요청

-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지 요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비스 중지 요청 확인 후 담당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중지 결과 신속히 전달

라) 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른 중지 처리

- 부정수급 등의 정부지원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중지 처리 요청

* 읍·면·동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에 중지 요청

① 정부지원 이용 제한 사유

-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 소득판별,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관련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중지 처리 할 수 있음

①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제한 사유

-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 소득판별,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관련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 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이용요금 미선납 시(미선납금 완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다.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제공

1) 서비스 이용신청(서비스 신청자)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1) 시·군·구청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서비스 신청자는 관할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하고 서비스 신청

※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예정)에 따라 '26년 연중 소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관련 사항은 관할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 (2)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 이혼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적용

- (3)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센터 회원 등록 서류(기존 등록 회원 제외)', '방문 교육서비스 대상자 이용 확인서'(서식 4)를 작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

나) 본인부담금 선입금

-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7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다) 방문교육서비스 우선선정 대상(다문화 가족 해당)

-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방문교육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중도입국자녀

- 대상자 기준이 동일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우선 신청자 우선 서비스 제공

2) 방문교육지도사 연계 및 서비스 제공

가) 방문교육지도사 연계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 접수 후, 방문교육지도사와 연계
- (2) 서비스 신청자가 요청한 기간에 연계 가능한 방문교육지도사가 없는 경우 서비스 대기 후 방문교육지도사 연계 가능 시 서비스 실시
- (3) 서비스 신청 후 1주일 이내 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안내

나)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1) 방문교육지도사는 대상자 연계 확인 후 대상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초기면접지 실시 → 사전검사 실시 → 수업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확인서(일지)작성 → 사후검사 →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작성

라. 예산 집행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 비용 기준

가) 1회기(2시간 기준)당 31,760원(개별수업 기준)

※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예시

본인부담금 나형(시간당 4,770원 부담) 4가구를 방문 서비스한 경우

* 4가구 × 월 8회기 × 2시간 × 서비스 시간당 단가

	가구	시간	시간당 단가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나형)
비용 기준(1회기)	1	2	15,880원	31,760원	9,540원
4주 기준(8회기)	1	16	15,880원	254,080원	76,320원
4주 기준(8회기)	4	16	15,880원	1,016,320원	305,280원

2)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관리

가) 이용료 납부

- 센터 : 서비스 신청자의 정부지원 유형 확인 후 4주 단위 이용료 납부 금액 (4주 8회기 기준) 및 납부 방법 안내

※ 본인부담금 입금 시 정확한 금액 입금 요청

※ 서비스 신청 시 입금 예정인 입금 은행명과 입금자명 반드시 확인 후 관리

- 이용자 : 서비스 이용 최소 7일전까지(주말 포함) 센터 계좌로 선입금

나) 이용료 납부 확인

- 센터 : 매일 1회 이상 본인 부담금 입금 계좌 확인 → 입금 내역 가족지원통합 정보시스템 입력 → 서비스 신청자와 입금액 매칭
※ 산정된 본인부담금 정확히 입금 시(초과, 미만 불가) 서비스 연계 가능
- 이용자 : 본인 부담금 입금 후 센터로 확인 요청 전화

다) 이용료 이월 및 환불

- (1) 이용료 이월 : 월 납입금 미만으로 수업을 실시한 경우 이용료 잔액만큼 다음 수업회기 이월

※ 서비스 미실시 사유가 서비스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회기 이월 가능

예시

- 대상자 유형 : '나'형 / 월 납입금액 : 76,320원
- 10월 : 월 납입금 76,320원 입금. 10월에 8회기 수업을 실시해야 하나, 6회밖에 수업을 실시하지 못함
- 11월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 납입금 76,320원 추가 입금, 서비스는 이월횟수를 포함 10회 실시

	월납입금에 따른 수업 횟수	수업 실시 횟수	잔여 수업 횟수	이월에 따른 수업 가능 횟수
10월	8	6	2(B)	-
11월	8(A)	-	-	10(A+B)

(2) 이용료 환불

○ 환불 가능 사유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를 과오납 한 경우
- 서비스 이용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사망·말소 포함)
- 전출(이사)로 인하여 센터를 옮겨야 하는 경우 등
※ 서비스를 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센터로 신청
※ 1개월 이상 중지 의사 밝히지 않고 서비스 미 신청 시 자동 환불 처리(환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로 환수)

○ 환불 처리 방법

- 서비스 이용료 과오납에 의한 환불 : 과오납 된 금액 확인 후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과오납 된 금액만큼 환불

- 중지 또는 전출에 의한 환불 : 중지의사를 밝힌 달의 최종 실적보고 마감 후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자 계좌로 환불처리
※ 매월 실적보고일은 다음달 5일까지임(주말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
- 환불 절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이용료에서 수수료 공제 후 환불)

3) 예산관리 규정

가) 본인부담금 입금 통장 별도 개설

-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은 지도사의 월수당 중 일부분으로 집행

나) 회계 담당자 신원보증보험 필수 가입

※ 방문교육담당자가 본인부담금 회계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만 방문교육 담당자 신원보증보험 필수 가입

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사항

-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구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조치사항	시정명령	정부지원금 50% 감액지원(1개월간)	정부지원금 100% 감액지원(3개월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중단

-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강제징수)

라) 실적 및 정산 보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서 보고 시 함께 제출



기 타(주요 서식 포함)

[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2]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 신청서

[서식 3] 방문교육서비스 환불계좌 신규(변경) 신청서

[서식 4]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이용 확인서

[서식 5]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확인서

[별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별표 2] '26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서식 1]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⁷⁾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기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⁹⁾ [] 기타 ¹⁰⁾)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노인	[] 소년·소년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장 애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임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¹⁾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구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구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센터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 의 (√ 체크)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 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동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신 청 기 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³⁾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 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 신청서

관리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센터명	○○○ 가족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이용 서비스(선택) :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비상연락처	
입금예정계좌	예금주(입금자명)	은행명	

위와 같이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서식 3]

방문교육서비스 환불계좌 신규(변경) 신청서

관리번호	관리대상상의 연번 기재	센터명	○○○ 가족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이용 서비스(선택) :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명		대상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휴대폰)		비상연락처	
신규(변경 전) 환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변경 후 환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과오납, 중지 또는 전출에 의한 환불사유 발생시 상기에 작성하신 변경 후 환불계좌로 환불이 진행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환불계좌 변경시, 변경후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1) 수집·이용 목적

- 본인부담금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처리

2) 보유·이용 기간

- (1) 문서관리 : 해당서비스 지원기간동안 보관하고,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 보관 기간 경과 후 파기
- (2)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관리 : 준영구(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에 의거)

3) 동의거부 권리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 환불계좌 신규(변경)등록을 신청하며, 본인부담금 환불처리를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서식 4]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이용 확인서

관리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센터명	○○○ 가족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이용 서비스(선택) :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확인 사항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식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제출하고, 관할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추가 자료요구 및 불시 현장방문·점검에 대해 동의하고 성실히 협조한다.
- ② 서비스 제공 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선입금이 지연되면 다음 대기자에게 순서가 넘어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③ 센터별 방문교육지도사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지원되므로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④ 환불 절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이며, 이용료에서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된다.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환불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환불계좌 오류 및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 관련 고지를 우편을 통해 2번 시행한다. 환불 관련 고지에도 불구하고 환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미환불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로 환수된다.
- ⑤ 방문교육서비스는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준수 사항

- ① 지도사의 교육 및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열린 자세로 적극 협조한다.
- ② 지도사에게 언어적·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③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한 무리한 요구(차량지원, 경조사 등)를 하지 않는다.
- ④ 약속한 일정에 지도사 및 해당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약속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 및 센터장 협의 후 경고조치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⑤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거나 귀 가정의 사정 변경(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본인과 본인의 가구원들은 위 사항을 준수하여 방문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대 상 자 : (서명)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5]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확인서

대상자명(주소)		0 0 0 (00로 111)		지도사명	
회기	1	2	3	4	
수업일시	'20.0.0. 10~12시				
주요내용	인지-학습목표세우기 (교재 10-15)	인지-시간관리	자아-성격이해하기	자아-장/단점알기	
다음수업	인지-시간관리 (교재 10-15)	자아-성격이해하기	자아-장/단점알기	정서-감정을 알아보기	
특이사항					
확인서명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0 0 0	0 0 0	0 0 0	0 0 0	

- 지도사는 서비스 확인서를 매 수업시간 내 작성하고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제출
- 서비스 확인서(일지) : 사업 모니터링 및 방문교육지도사 수당지급 자료로 활용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 보고(예 고국방문, 이사, 서비스 변경, 취소사유, 종료 등)

[별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시행 2025.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 2025. 10. 1., 일부개정]

□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 상 지 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랑면	상도, 수우도, 하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 상 지 역 (섬)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육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육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옹호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불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흥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울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 상 지 역 (섬)
전남	보성군	별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익면	고사도, 기도, 신익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령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울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울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향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울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 상 지 역 (섬)
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량도, 부도, 섭도, 소량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삼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 상 지 역 (섬)
충남	서산시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 마을)	도로명주소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99~1113, 청옥로 4090-6~4090-177, 청옥로 4323-574~4323-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34~754
		하장면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용연리	용연길 215~587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릉리	남발길 513, 상무릉로 358-29~786-20, 서호길 13~173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마을)	내리계곡로 2-49~131-12, 와흥길 20~133
		상동읍	구래리(법궁리)	선바위길 364-3~372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강선마을, 설피마을)	곰배령길 1~240, 설피발길 1~696, 조침령로 1726~2250
		남면	신월리	신월안길 6~102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61~550,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2~176
			상남리(자포대, 엄달골)	자포대길 349~606, 엄달골길 540~637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799~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4-1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430-55~792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40~416-2, 북동뒷골길 82~294 북동로 690-7~955-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 마을)	도로명주소
	춘천시	동면	신이리 (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리 (갈골, 삼다리골, 절골)	갈골길 62~272, 삼다리길 14~66,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조교리 (중촌, 지장골, 통골, 삼거리, 무예)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홍천군	내면	명개리 (명지거리, 목맥동, 통바람골)	명개로 48-3~406, 명지거리길 1~353, 통바람길 15~484-17
			방내리	여차동길 492~850, 여차동길499번길 16~59
			울전리	살둔강변길 9-7~200-10 살둔길 1~47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95-39~158 밤바치길431번길 40~62
강원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갯골, 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신내길 1~125, 운수길 135-54~508-14
		화천읍	동촌리 (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비수구미길 461~2056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구천2길 138~497-1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귀곡길 135~367, 귀곡길 376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 마을)	도로명주소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86-18, 구룡마을길 58길 2~24-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구마동길 502~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138, 남회룡로 199~587
			두음리(듬골)	두음길 382~24~934-16
		재산면	갈산리	개내골길 92~189
			동면리	금당골길 7~101, 미목길 2~192, 소개골길 9~356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돌메기)	대곡구룡길 423-18~570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275~427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외류동, 내류동)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172-71~263
		창수면	백청리	백청1길 43~137, 백청길 32~90, 오서로 1873~1984
		축산면	조항리(젓모치, 배곶말)	조항길 3~34, 칠성길 843-5~846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맹동산길 284~319-99
			포산리(윗포산, 아랫포산)	포산길 280~319-99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본동)	본신로 100~350-99
			신암리 (갈전, 새신, 신내, 안암)	갈전길 190~260-99, 새신길 160~300, 낙동정맥로 4000~4550-99
		영양읍	기산리 (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기산길 60~700, 낙동정맥로 600~700-99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길 70~901
			소광리	소광1길 252~522-32, 소광2길 1~121 십이령로 277-5~1163-11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 마을)	도로명주소
			쌍전리 (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쌍전1길 86~757
			왕피리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병위길 32~104, 병위1길 4~12-2, 병위3길 2~12, 병위5길 2~6, 양지길 29~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
			전곡리	전곡2길 235-13~311
		매화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18-65~240
		청송군	고와리	지경길 661~760
			근곡리	한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리(칠미기)	면봉산길 650~685-1017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면봉산길828번길 1~10-15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205~3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398-6~422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웅도1길 3~158, 웅도2길 2~15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용호길 6~71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 2408~2471
			오산리 (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호반로 2065~2275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368, 화수길 4~53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2]

「'26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3,847,000	미포함	138,780	68,641	140,183
		포함	157,015	77,661	158,604
2인	6,299,000	미포함	229,357	164,508	232,890
		포함	259,495	186,124	263,492
3인	8,039,000	미포함	290,169	240,352	296,127
		포함	328,298	271,934	335,038
4인	9,743,000	미포함	360,410	322,443	374,300
		포함	407,767	364,812	423,484
5인	11,336,000	미포함	410,439	378,691	432,308
		포함	464,370	428,451	489,114
6인	12,834,000	미포함	490,306	473,662	535,512
		포함	554,732	535,901	605,878
7인	14,273,000	미포함	535,512	525,833	584,741
		포함	605,878	594,927	661,576
8인	15,712,000	미포함	584,741	579,249	634,423
		포함	661,576	655,362	717,786
9인	17,151,000	미포함	634,423	628,429	712,921
		포함	717,786	711,004	806,599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기준임

가.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나. 주요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 사업기간 : 1월 ~ 12월

라. 시설 기준(설치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전용공간 확보(16㎡ 이상)
- 언어발달교실 이용자(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와 별도 분리 설치
-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
 - 교육용 책상 및 의자(3~4인용 정도로 모둠수업 대상자 수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 평가도구 및 평가지·교구 및 교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 대기용 의자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설치 의무화

바.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추진주체	기 능
성평등가족부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 신규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온라인 콘텐츠 관리 및 운영 ○ 지원 및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실적관리 및 보고, 결과보고서 제작 ○ 사업홍보 및 사업현황 관리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 언어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및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홍보 및 언어교육, 평가 수행 ○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 세부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 기
• 시도별 사업량 확정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2월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2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 센터별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모집	센터	연중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중 2회
•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말까지
• 언어발달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아동 모집	시·군·구, 센터	연중
• 대상아동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센터	연중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당해 연도 2~11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당해 연도 하반기

* 정산보고서 상 금액과 e나라도움 시스템 상 금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세부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 ※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 가능
 - ※ 서비스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2) 선정 시 고려사항

- 시·군·구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 선발
- 다문화 유치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에 언어발달지도사 파견으로 언어 교육 적극 연계 실시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유의사항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외부기관에서의 수업 진행*이 원칙이며, 가정방문은 불가능함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 교육 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우선 제공
 -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기타 평가 및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 * 외부기관 수업의 경우 최소한의 분리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외부기관 수업 시 출장비 지급

나. 대상자 관리

1) 서비스 신청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 서류
 - (공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선택)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 상기 서류는 등록 시 실명인증 후 센터에서 즉시 반환 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대상자 모집 기간 : 연중 수시 모집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신청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자 명부에 작성·관리하여 서비스 순차적 진행
- 서비스 장소가 센터내부(언어발달교실)일 경우, 외부기관 보다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2) 초기면담

- 초기 상담 시 초기면담지 작성

3) 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사후)

○ 초기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 실시하되,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 언어발달단계 평가 방법

※ 아동당 최초 1회 실시(단, 초기평가를 진행한 후 3개월 이상 대기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평가 재실시 가능)

■ 필수검사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REVT 수용	2세 6개월~16세	직접 평가
K M-B CDI	영유아용(8~17개월)	부모 보고
	유아용(18~36개월)	부모 보고
언어발달체크리스트	모든 연령	직접 평가
대화 및 상호작용 평가	모든 연령	직접 평가

■ 선택검사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REVT 표현	2세 6개월~16세	직접 평가
PRES 수용	2세~6세	직접 평가
PRES 표현	2세~6세	직접 평가 및 부모 보고
SELSI	4개월~36개월	부모 보고
U-TAP	2세~6세	직접 평가
U-TAP 2	2세 6개월~7세	직접 평가
구문의미이해력	4세~9세	직접 평가
언어문제해결력	5세~12세	직접 평가
음운기억 검사	따라말하기가 가능한 모든 연령	직접 평가
읽기쓰기 검사	6세~12세	직접 평가

○ 진전평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전평가 실시
- 대상아동 :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
 -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도 실시 가능
- 평가도구 : 초기 언어평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
 - 초기 언어평가와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진전평가 후 진전 정도에 따라 장단기 계획(서비스 목표 및 계획 수정)을 세운 후 보관하고 교육 실시

○ 종료평가

- 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 사후평가(기한 내 작성 필수)

- 서비스 종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된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사후평가 전 사후상담 2회 이상 진행)

※ 사후평가에서 결과가 정상발달로 나온 경우,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4)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장단기 계획서)하여 교육 실시
-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외부기관 연계 수업 시 주 1회 가능, 보강이 있는 경우 개인당 최대 주 3회 지원 가능
 - 맞벌이, 자녀양육 등으로 주 2회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 1회 수업 가능
(주 1회 40분 수업 또는 주 1회 80분 수업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수업 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 ※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
 - ※ 개별에서 모둠, 모둠에서 개별수업으로 전환 시 장단기 계획서 신규 작성
 - ※ 근무형태별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한 주 최소 운영반 수 및 회기 수 준수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운영반 수	운영회기 수
섬·벽지지역*	3	6	2	5
주 5일제	5	10	4	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방문교육사업 별표 1 참조)에 따라, 월 2개 반 이상 운영시 섬·벽지 지역으로 인정

※ 운영반 수 : 개별교육 실인원 + (모둠 수×1.5배)

※ 운영회기 수 : 평가회기 수+개별교육 회기 수+(모둠교육 회기 수×1.5배). 법정공휴일 산정 후 반영

※ 시간제 및 외부기관 연계의 경우, 비례 적용 혹은 외부기관 기준에 따름

- 언어발달지도사가 파견되는 외부 기관의 범위는 시·군·구청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
- 언어발달지도사의 업무량, 지역여건 등으로 외부 기관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게 관계기관 등을 연계하여 타기관의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초기평가 결과, 아동이 언어장애로 평가된 경우 관련기관 우선 연계 원칙.
단, 지역 내 관련기관이 없을 경우 국가 공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 발달지도사는 슈퍼바이저의 승인 및 지도 하에 교육 가능

5) 부모상담 및 교육

- 부모상담(1: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 부모교육(2인 이상)
 -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 사후상담
 - 서비스 종료, 중단된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화상담, 센터 사업 혹은 외부 서비스 연계 등)를 하여야 함
 - ※ 언어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상담 실시(아동 1인당 2회 이상)
 - ※ 사후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다. 서비스 연장 기준

1) 서비스 연장 대상 : 1회(6개월) 교육 진행이 완료된 아동

2) 서비스 연장 기간

○ 연장기준 : 1회에 6개월, 최대 1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12개월)

※ 전년도에 연장승인 완료되어 서비스 3~4회차 진행중인 아동의 경우, 해당 회차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횟수를 연장하게 될 경우 연장소견서 승인 필수

○ 서비스 연장 프로세스



라. 서비스 종료 및 일시중단

1) 서비스 종료 기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아동의 언어평가를 통해 언어발달 수준이 정상범위 도달 시 아동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중단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②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 ③ 대상 아동 가정의 사정(이사, 타가족 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 ④ 센터 및 언어발달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 ⑤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종료 및 중단에 따른 제출 서류
 - 교육 3개월 이상 : 서비스 종료평가보고서
 - ※ 부득이하게 종료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함께 서비스 종료처리보고서를 작성
 - 교육 3개월 미만 : 서비스 종료처리보고서
- 서비스 대상자의 사유로 신청한 서비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한 경우,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 단, 서비스 종료 사유가 출산, 모국방문, 질병, 이사 등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 서비스 제공 가능(증빙자료 첨부하여 내부결재 진행)

3) 서비스 일시중단

- 대상자에 의한 일시중단
 - 부득이하게 단기간(2주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일시중단 가능
 - ※ 중단사유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의 방학, 모국방문 등의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까지 가능
 - 일시 중단기간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중단 기간 전·후로 보충
 - 서비스 일시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단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지도사에 의한 일시중단
 - 지도사 사유에 의한 일시중단기간은 최대 2주까지 허용되나 중단에 대한 대상 가정의 동의를 받아 진행
 - 대상가정과 협의 후 보충수업 진행 또는 일시중단 기간만큼의 서비스 연장 진행(서비스 계획 작성 및 내부결재 보관)
 - 4주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도사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가. 자격 및 채용 기준

1) 자격기준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 2018년 이전 채용된 언어발달지도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채용 응모자가 없을 경우(1회 이상 공개 경쟁모집), 관련 학위(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한정) 및 실무경력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 가능

2)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 가족센터에서 외부 언어발달지도사를 시간제로 활용하거나 대상 아동이 인근 언어발달 치료 전문기관*을 이용 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만 가능
 - 인근센터 지도사가 출장 등을 통해 언어평가 진행 후, 언어교육은 유사 서비스(방문교육, 이중언어교육, 기초학습 등)로 연계 가능
- 선정방법
 - (공개경쟁 채용) 센터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인사위원 이력서 구비
 - ※ 센터장은 지도사 임명 후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증” 발급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1년간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지속 가능여부 등

○ 임용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지도사를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임용(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운영방식

- 외부 언어재활(치료) 전문가(시간제) : 기간제로 위촉
- 외부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 이용 :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후 가족센터에 영수증 제출 시 사후 정산(대상자 계좌입금 처리)

나. 지도사 교육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4시간	24시간	-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 2, 3년차 슈퍼비전(5시간 포함)

1) 신규 양성교육

○ 교육대상

- 당해 연도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신규 선발된 자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 교육시기
 - 연중 2회
- 교육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 : 24시간
 - 교육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교육지도법 등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 센터는 양성교육 대상자의 교육 수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내·감독하여야 함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명된 지도사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 활동내용, 지도사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2)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교육시기 : 2월~11월 중
- 교육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양성교육 수료년도 기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함
 - ※ 모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함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3) 법정 의무교육

- 가족사업안내 I 권 ‘바. 센터 직원교육’ 참조

4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및 복무

가. 활동

1) 활동기간

○ 1월 ~ 12월

2) 업무수행



○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신규 초기평가 아동*과 사후평가 아동**합산 20명 달성.
단, 사후평가 아동이 신규 발굴 아동 실적의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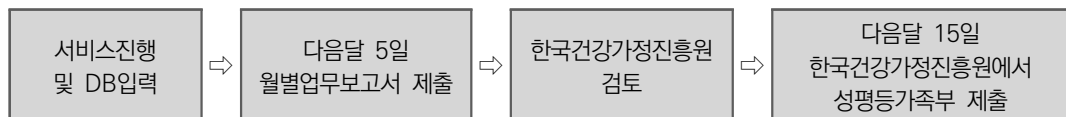
* 서비스 신청 아동 중 초기 언어평가까지 진행된 아동

** 서비스 종료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아동 중 재평가(진전평가 및 종료평가)가 진행된 아동

※ 신규 아동 발굴 수는 실인원으로 계산(초기평가와 사후평가 중 1회만 인정)

3) 업무보고

○ 모든 언어평가 및 계획, 교육, 진전, 종료 보고서를 매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



※ 월간실적보고 및 보고서 등 제출기한 평가 반영

※ 실적보고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나. 복무

1) 근무시간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근무시간
 - 주 5일제 원칙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2) 면직 : 센터 종사자 복무기준 준용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증 반납 조치
 - * 결격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면직 규정 준용

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과 목			내역
관	항	목	
사업비	사업비	특성화사업비	○ 인건비 - 급여 : 월 급여×12개월 -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급여 지급일 기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로 실 근무한 경력자 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월 7만원 수당, 60개월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수당, 84개월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수당 지급 - 명절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봉급액의 120% 지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 부담금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기관부담금 - 기타후생경비 :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 등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외부 언어재활(치료) 전문가(시간제) : 시간당 5만원 한도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내 적정 단가 책정) ○ 운영비 - 여비 : 시내외 출장 및 교육, 슈퍼비전 모임 출장비 등 ※ 외부기관 교육 시 출장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노무관리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 기타운영비 : 전문가 활용비(강사비 등), 교육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등 ○ 사업비 - 교재교구구입비·제작비, 평가지 구입비 등 - 외부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 : 아동 1인당 월 22만원 한도 지원 ※ 한도액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특성화사업 예산은 통합 운용하고, 특성화사업 통장은 1개로 사용 가능(센터사업비 전용불가)

○ 다문화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집행기준

- 센터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내역구분 없이, 인건비와 사업비(운영비)를 각각 집행 가능

* 인건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운영비)로 전용·집행 가능(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 집행은 불가)

*** (집행예시) 특성화사업 예산 250백만원을 교부받은 센터의 경우**

■ 예산 : 방문 90백만원, 통번역 50백만원, 언어발달 60백만원, 이중언어 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현 행 (2024년)					개 정 (2025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방문서비스	90	60	85	-	➤	250	165	85	-
통번역	50	30		-					
언어발달	60	40		5					
이중언어	50	25		5					
합계	250	155	85	10		250	165	85	-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나. 사업 내용

-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해당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 해당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연계 지원
 -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13개 언어 통역·3자 통화 및 한국생활 정보제공 전화 상담 가능(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가족 또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서비스 유형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다. 사업 기간 : 1월 ~ 12월

라. 추진 체계

추진주체	기 능
성평등가족부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원 및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 실적 및 시스템 관리, 결과보고서 제작 ○ 사업홍보 및 사업현황 관리 ○ 통번역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통번역전담인력 모집, 선발 및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통번역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마. 세부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 기
• 시도별 사업량 및 언어 확정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2월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2월
• 사업 안내 통보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당해 연도 1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 통번역서비스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	센터	연중
• 통번역 전담인력 신규 양성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 2회
• 통번역서비스 제공	센터	연중
• 통번역 전담인력 보수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중
•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당해 연도 하반기

가.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나. 서비스 제공 원칙

- 모든 서비스는 무료 지원을 원칙
 - * 예외적으로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통장에 예치하여 사업 운영비로 활용 가능(단, 통번역 전담인력의 출장비는 요청 기관에서 지급 가능)
-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절차는 내방, 전화, 파견(출장) 등 제공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 신청인이 내방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대기자 또는 선약이 있는 등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예약 일정 안내
 - 신청인이 내방하지 않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출장 수행
 - 외부 지원 서비스는 하루 전날까지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되, 긴급 상황 발생의 경우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출장 가능

- 센터 내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통번역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통번역서비스 이용자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단순 정보를 통번역 한 사실에 한하여 통역·번역 확인서 제공 가능. 단,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하는 확인서 발급 제한

3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가. 선발 절차

1)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 공고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채용 언어는 지역, 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2) 서류 심사

- 통번역 전담인력 자격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적격자 선정

3) 최종 면접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3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진행(면접 절차 강화)

4) 임용

- 신규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임용

※ 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종사자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 6시간 이수 후 채용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 지원사로 임용(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

5) 기타

-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여도 지자체와 협의하여(시·군·구청장 승인 공문 필요) 인턴으로 채용 가능
 - ※ 인턴 직원의 경우에도 신규 전담인력 양성교육 참여 필수, 통번역지원사와 급여기준 동일
 - ※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통번역지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채용 가능
- 자원봉사자가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일 기준 일비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나. 자격 기준 : 자격 기준은 채용 시에만 충족하면 됨

구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담당 업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입국 초기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 보육 및 교육 기관 관련 통번역 - 행정·사법 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센터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지원 자격	공통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수준(별도 평가) * TOPIK IBT 인정 - 4년차 이상 근속자 중 중앙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평가 결과 언어권별 상위 20% 이내(예산 범위 내 조정) * 동점자일 경우 ① 채용 시기, ②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등에 따라 선정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 TOPIK IBT 인정
우대 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교육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32시간	32시간	-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1) 신규 양성교육

- 교육 대상 : 최종 면접 합격자(신규 임용 예정자)
- 교육 시기 : 연 2회
- 교육 시간 : 32시간
- 교육 내용 : 다문화가족정책, 통역 및 번역실습 등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2) 보수 교육

- 교육 대상 : 활동 중인 통번역 전담인력(필수)
- 교육 시기 : 2월 ~ 11월 중
- 교육 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함
 - ※ 모든 통번역전담인력은 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함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 ※ 연차별 교육내용은 별도 공지

3) 법정의무교육

- 가족사업안내 I 권 ‘바. 센터 직원교육’ 참조

가. 활동

1) 활동 기간

- 1월 ~ 12월

2) 업무 수행 및 보고

- 매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통번역업무기록지를 작성·관리
- 월별업무보고서는 다음달 5일까지 센터장 결재를 받은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실적 보고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나. 복무

1) 근무 시간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전문통번역지원사	주 40시간 (월~금, 9:00~18:00)	* 근무시간은 센터와 통번역 전담 인력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통번역지원사		

- 주 5일제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원칙
 -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 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2) 면직 : 센터 종사자 복무 기준 준용

- 통번역 전담인력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통번역 전담인력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통번역 전담인력을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 * 결격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면직 규정 준용

3) 모성 보호 휴가 등 기타 사항 : 센터 종사자 복무 기준 준용

- 통번역 전담인력 모성 보호 휴가 중 센터에서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체 인력 : 통번역지원사

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복무

- 자원봉사자의 경우 ‘일상생활’ 통역, 번역에 한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번역 확인서 발급 불가
- 자원봉사자는 실적 보고 불가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사업비	사업비	특성화 사업비	○ 인건비 - 급여 : 월 급여×12개월 -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급여 지급일 기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실근무한 경력이 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월 7만원 수당, 60개월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수당, 84개월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수당 지급 - 명절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봉급액의 120% 지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 부담금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기관부담금 - 기타후생경비 :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 등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운영비 - 여비 : 외부파견 통번역 및 집합 교육시 출장비 등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노무관리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소규모 수선비·포장비 등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 기타운영비 :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사업비 : 교재교구비, 기타 통번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

* 특성화사업 통장도 1개로 사용 가능(센터사업비 전용불가)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예산 집행기준

- 센터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내역구분 없이, 인건비와 사업비(운영비)를 각각 집행 가능

* 인건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운영비)로 전용·집행 가능(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 집행은 불가)

*** (집행예시) 특성화사업 예산 250백만원을 교부받은 센터의 경우**

■ 예산 : 방문 90백만원, 통번역 50백만원, 언어발달 60백만원, 이중언어 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현 행 (2024년)					개 정 (2025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방문서비스	90	60	85	-	➤	250	165	85	-
통번역	50	30		-					
언어발달	60	40		5					
이중언어	50	25		5					
합계	250	155	85	10		250	165	85	-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여 자긍심·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사업대상 및 수행기관

- 사업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가족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사업수행기관

-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이중언어코치가 배치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중언어코치 미배치 센터는 10차시(1차시 : 40분 이상) 운영(20가정)
- (이중언어 학습지원 : 직접교육)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중언어 학습지원 : 온라인 학습권)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1월 ~ 12월

2

사업내용

가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구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

- 대 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 가족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부부·가족단위 코칭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자율적으로 운영
 - ※ 단,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곳은 이중언어교실(10차시) 운영
 - ※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수강하고자하는 자녀의 부모는 이중언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대면 원칙)해야 하나, 필요시 비대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운영인력 : 센터 내 배치된 이중언어코치

〈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프로그램 예시 〉

영역	내용
부모·가족 코칭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상호작용 코칭 • 각국의 결혼이민자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출신국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예 : 베트남의 날-베트남 음식 나누기, 전통놀이 등을 베트남어만 사용하여 함께 하기 등) •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배우자, 시부모 등)에 대한 코칭 실시
이중언어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실 운영 * 관련 참고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홈페이지 (http://cfl.niied.go.kr) 내 언어권별·수준별 자료 참고 - 해당 지역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인근 센터로 연계 지원(온라인·비대면 수업 가능)

나 이중언어 학습 지원

- 대상 : 이중언어 부모 코칭에 참여한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
- 사업내용 ※ 영어 제외
 - (이중언어 직접교육)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 이민자 엄마·아빠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운영(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 (온라인 학습권)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엄마·아빠의 모국어 이중언어 온라인 학습권 지원
- 운영인력 : 이중언어코치 또는 이중언어강사

3

사업운영

가 운영 및 관리

□ 영역·내용

1)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중 직접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

가. 이중언어 코치가 부모·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센터

계	160차시, 30가정 이상
[필수]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150차시, 30가정 이상(1차시 : 40분 이상)
[필수] 이중언어교실	연간 10차시 이상(1차시 : 40분 이상)

나. 이중언어 코치가 온라인 학습권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

※ 단, 온라인학습권 이용 자녀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 이중언어 코치가 부모·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센터 기준 적용

계	120차시, 20가정 이상
[필수]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110차시, 20가정 이상(1차시 : 40분 이상)
[필수] 이중언어교실	연간 10차시 이상(1차시 : 40분 이상)

2)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사업과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중 직접교육을 운영하는 센터

가.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구분	2026년	
이중언어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연간 20가정 이상 운영(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③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나. 이중언어 코치가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① 이중언어 코치가 부모·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업무	[필수]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160차시, 30가정 이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업무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② 이중언어 코치가 온라인 학습권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 단, 온라인학습권 이용 자녀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① 이중언어 코치가 부모·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센터 기준 적용

계	120차시, 20가정 이상
[필수]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120차시, 20가정 이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③ 이중언어 코치가 직접교육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구분	2026년	
이중언어 코치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총 30가정 이상 운영 (1개 가정당 20차시 운영) ※ 1차시 : 40분 이상
	(이중언어교실)	-
	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관리 업무	
이중언어 외부강사 수행 업무	① 이중언어 직접교육	연간 총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운영 ※ 1개 반 당 80차시 ※ 1차시 : 40분 이상

3) 이중언어 코치 미배치 센터 : 미배치 센터는 10차시(1차시 : 40분 이상) 운영(20가정)

□ 사업수행 구분에 따른 센터별 연간 운영 기준

구 분		센터 연간 운영 기준	
직접교육	이중언어 코치 업무		
미운영	①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만	160차시, 30가정 이상 - (코칭) 150차시, 30 가정 이상 - (이중언어교실) 10차시 이상	
	②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 +온라인학습권 사업 관리 ※ 온라인학습권 이용자녀가 10명 미만인 경우 ①번 적용	120차시, 20가정 이상 - (코칭) 110차시, 20가정 이상 - (이중언어교실) 10차시 이상	
운영	①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 일부 수행	이중언어 코치	(코칭) 20가정(1개 가정당 20차시) (이중언어 직접교육) 5명 이상, 1개반 이상 운영 (사업) 이중언어 학습지원 관리 업무
		외부 강사	(이중언어 직접교육) 5명 이상, 1개반 이상
	②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 +직접교육 사업 관리	이중언어 코치	(코칭) 30가정 이상(1개 가정당 20차시) ※ 이중언어 교실 미운영 (사업) 이중언어 학습지원 관리 업무
		외부 강사	(이중언어 직접교육) 10명 이상, 2개반 이상
	③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 +온라인학습권 사업 관리 ※ 온라인학습권 이용자녀가 10명 미만인 경우 ④ 적용	(코칭) 120차시, 20가정 이상 ※ 이중언어 교실 미운영	
	④부모·가족 코칭사업 운영만	이중언어 코치	(코칭) 160차시, 30가정 이상 ※ 이중언어 교실 미운영
		외부 강사	(이중언어 직접교육) 10명 이상, 2개반 이상
이중언어 코치 미배치		10차시 운영(20가정)	

※ 1차시 : 40분 이상 수업

※ 이중언어교실 : 한가원 시스템 실적 입력시 이중언어 직접학습과 혼동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 (구) 이중언어 부모코칭(20h)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120h)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10h) + 가족코칭(자율 운영)

※ 이중언어 직접교육 : 1개 반당 80차시 이상 구성, 연간 10명* 이상

* (예시) 5(코치) + 5(강사), 0(코치) + 10(강사)

□ 운영방식

-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출석 14차시 이상(참여율 70% 이상)인 경우 참여 인정, 맞벌이 등 부득이한 경우 출석 10차시 이상(참여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인정
 - ※ 단, 이중언어부모·가족코칭과 이중언어 직접학습 사업 동시 진행 가능
- (이중언어 직접교육)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학습지원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는 이중언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함
 - 연간 총 10명 이상 교육 참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언어권별·수준별로 반을 구성하고 1개 반 5명 이상으로 운영 ※ 필요 시 레벨테스트 실시
 - 방학캠프(자녀 대상 심화 언어교실, 부모·가족 코칭 등 함께 운영) 등 운영 가능
- (이중언어 온라인 학습권)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온라인 학습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는 이중언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함
 -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하며, 온라인 학습을 수강자 본인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교육기관으로 수강료 지급
 - 온라인 학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양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기 지원 금액을 환수

□ 관련 참고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홈페이지

(<http://cfl.niied.go.kr>) 내 언어권별·수준별 자료 참고

나 사업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협조
- 실적보고 : 월간실적 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

다. 업무수행 프로세스



4

사업 수행 인력

가 자격기준

- 이중언어코치 : 자격 기준은 채용 시에만 충족하면 됨(TOPIK IBT 인정)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 이중언어코치가 이중언어 학습지원 직접교육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에는, 7세 이하 아동 반 또는 초급반 중심 운영
 - 이중언어강사(외부 강사)
 - 자격 기준은 선발 시에만 충족하면 됨(TOPIK IBT 인정)
 - ※ 이중언어코치가 이중언어강사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급 반 이상 운영 가능
- (필수)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택1) ① 지자체 등 이중언어 강사 양성기관 교육 30시간 이상 수료 또는
 - ② 이중언어 강사 경력 80시간 이상 있는 자
- ※ 단, 상기 자격 기준으로 강사 선발 불가 시(1회 이상 공고 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거쳐, 자체 선발 기준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
- 개설하고자 하는 언어 전공자로 학사 이상 소지자이거나, 졸업예정자

나 채용 및 임용

- 이중언어코치
- (채용절차)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공고)
 - (선정방법) 센터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인사위원 이력서 구비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활동 지속 가능여부 등
- 응모 자격에 적합한 경우 이중언어코치 양성교육 수료자, 언어영재교실 이중 언어강사 수료자 우선 채용·선발

○ (임용) 신규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이중언어코치로 임용

※ 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이중언어코치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종사자를 재채용할 경우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6시간 이수 후 채용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면직) 센터 종사자 복무 기준 준용

- 이중언어코치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이중언어코치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이중언어 코치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 결격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면직 규정 준용

□ 이중언어강사

○ 강사 선발 및 배치 기준

- 강사는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위촉 계약을 체결함
- 단, 계약서에는 강의횟수, 강의당 시간, 시간당 급여를 기재하도록 함
- 외부 이중언어강사 활용(차시*당 35천원(교통비 포함) 한도 이내 지급)

* 1차시 : 40분 이상 수업

- 강사 1인당 강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다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이중언어코치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기 준	교육 시간		
	총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대면/원격/이러닝)
4년차 이상	7시간	-	7시간
3년차	10시간	-	10시간
2년차	10시간	-	10시간
1년차(2026년 양성)	25시간	25시간	-

※ 보수교육의 50% 이상은 대면, 원격으로 진행

1) 신규 양성교육

- 교육시기 : 연 2회
- 교육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대상 : 이중언어코치 신규 임용 예정자
- 교육시간 : 25시간
- 교육내용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의 이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부모코칭에 대한 이해, 행정실무 등
- 센터 참고사항
 - 센터는 양성교육대상자 교육 수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안내·감독 하여야 함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명된 이중언어코치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 활동 내용, 이중언어코치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양성교육 시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2) 보수교육

- 교육 시기 : 2~11월 중
- 교육 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 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이중언어코치로 활동 중인 자
- 교육 시간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함
 - ※ 모든 이중언어코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함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3) 법정의무교육

- 가족사업안내 I 권 ‘바. 센터 직원교육’ 참조

5

이중언어코치의 역할

① 이중언어부모·가족코칭 사업만 운영	②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사업 +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을 모두 운영
☐ 양성 및 보수교육 참여	☐ 양성 및 보수교육 참여
☐ 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 운영 및 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부모·가족 코칭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부모·가족 코칭
☐ 이중언어교실(연간 10시간)	☐ 이중언어 학습 지원 사업 관리 업무 ◦ (이중언어 직접교육) 강의기획, 참여자 모집, 강사 채용 및 관리 등 ◦ (온라인 학습권) 초기 상담 및 학습권 지원 업무, 개인별 학습 진행 상황(월별) 관리 등 수행
	☐ [선택]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 직접교육 일부 수행
☐ 사업 효과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 사업 효과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 실적보고	☐ 실적보고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사업비	사업비	특성화 사업비	○ 인건비 - 급여 : 월 급여×12개월 -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급여 지급일 기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실근무한 경력이 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월 7만원 수당, 60개월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수당, 84개월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수당 지급 - 명절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봉급액의 120% 지급 - 사회보험 부담금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기관부담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경비 :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 등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운영비 - 여비 : 시내외 출장 및 교육, 슈퍼비전 모임 출장비 등 ※ 외부기관 교육 시 출장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노무관리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포장비 등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 기타운영비 :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강사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사업비 : 강사비, 교재교구비, 이중언어 온라인 학습 지원 수강권 등 ※ 온라인 학습권 지원 사업비(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특성화사업 통장도 1개로 사용 가능(센터사업비 전용불가)

○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 센터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 예산범위내에서 내역구분 없이, 인건비와 사업비(운영비)를 각각 집행 가능

* 인건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운영비)로 전용·집행 가능(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 집행은 불가)

*** (집행예시) 특성화사업 예산 250백만원을 교부받은 센터의 경우**

■ 예산 : 방문 90백만원, 통번역 50백만원, 언어발달 60백만원, 이중언어 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현 행 (2024년)					개 정 (2025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예산	인건비	운영비	불용
방문서비스	90	60	85	-	➤	250	165	85	-
통번역	50	30		-					
언어발달	60	40		5					
이중언어	50	25		5					
합계	250	155	85	10		250	165	85	-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학습권 지원 사업비(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6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표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추진 체계

중앙한국어교육협의체 (중앙부처)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추진 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 마련 및 보급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지도·점검, 홍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 양성 및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시·도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지도·점검, 홍보 ○ 운영실적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시·도 → 성평등가족부)
시·군·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자 선정 및 관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수요파악 및 사업비 신청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집행 및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관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실적 관리 ○ 사업 현장지도 및 점검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홍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 만족도 조사 ○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보완 및 실적관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사업 현장 및 평가지원
사업수행기관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전담강사 모집 및 관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과정 참여 및 수요자 관리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보고 ○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관리 및 보고

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연간 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 기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12월
• 사업 안내 통보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당해 연도 1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 신규 강사 채용	수탁사업자	당해 연도 2월 (수급요인 발생시 수시채용)
• 교육 사업수행 • 국고 보조금 신청	수탁사업자	당해 연도 3월~12월
• 만족도 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당해 연도 하반기
• 시·군·구별 사업량 확정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당해 연도 12월
• 시·군·구별 사업추진 결과 및 연간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말까지

* 정산보고서 상 금액과 e나라도움 시스템 상 금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근거 법령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마. 참여 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 가족(자녀포함)
※ 동일 센터의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바. 과정 개요

- 사전 교육 과정
 -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교육 수강 가능
※ 선택하여 1시간 이상, 사전 실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과정 중 실시 가능
※ 동영상 자료,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대표전화 1661-6005) 및 온라인 신청(shp.mogef.go.kr) 등 활용 권장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 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사. 과정별 단계

○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선택)

-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토픽 읽기 교육 프로그램
- 토픽 듣기 교육 프로그램
- 토픽 쓰기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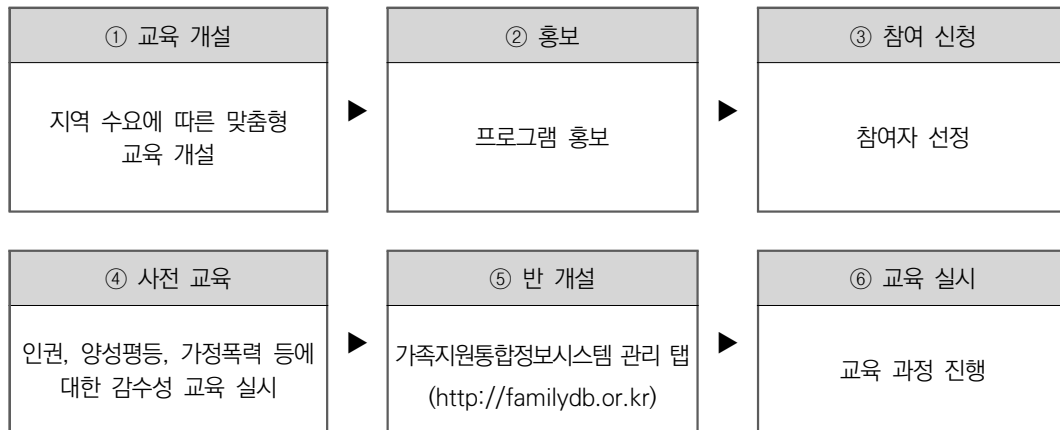
※ 총 7개 과정(각 12차시-차시별 기본 1~2시간)으로 구성

※ 전체 단계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과정만 진행하도록 함(연간 최소 200시간 이상)

※ 제시된 7개 과정외 지역수요를 반영한 추가 강의 개설 가능. 단 과정별 12차시, 차시별 기본 1~2시간으로 구성 권장

가. 운영기관 기본 업무 흐름도

○ 교육 과정



나. 참여신청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수준의 대상자 수강가능
(다만,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과정은 초급단계 수준의 대상자 모집 필요)

다. 최소 개설 및 분반 기준

- 최소 개설 기준 : 해당 과정 참여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 한국어교육의 수업 진도가 60% 이상 진행된 경우 수강인원이 최소 기준(3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영 가능
- 분반 기준
 - 한 교실이 30인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반 가능
 - 청강생은 분반기준의 수강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과정 편성

- 지역 수요에 따라 반 개설을 권장하며, 각 과정은 가급적 주당 10시간 이내로 편성
- 과정 개설시 1과정 당 12차시(차시별 기본 1~2시간)로 개설 권장

마. 교재

- 강사용 표준 매뉴얼 제공
 - 강좌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을 제시(7개 과정, 12차시)하고, 차시별 활동 자료 및 평가지 등 제공
 - 수강자를 위한 활동지를 포함하여 강사용 표준 매뉴얼 형태로 센터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안 제공

가.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자격기준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②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운영기관 지정취소 사실이 없을 것

예외

- ▶ 지자체가 직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의 위탁절차(위탁계약서 등의 서류절차 포함) 없이 선정 가능
- ▶ ①, ②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가능

○ 위탁계약기간 : 2026년 3월~12월(10개월)

※ '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위탁받았던 기관이 재선정된 경우는 1~12월(12개월) 위탁계약 가능

○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예외

- ▶ 관내 운영기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 1개소밖에 없거나, '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위탁기관이 기지정된 경우 선정절차 생략가능('26년까지 연장 적용)

－ 선정절차

- ① 공고(시·군·구) ⇒ ② 신청서 접수(법인·단체 등) ⇒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군·구)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군·구)

① 선정위원회 구성

- － 한국어·다문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서장이 당연직 간사 담당

②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동 지침에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준용 가능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
- (현장방문) 운영기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실사
- (심사·지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기관 신청에 대한 심사 후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위탁계약서 체결 내용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교육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교육장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 운영기관 시설기준

- 교육장소는 10㎡ 이상의 규모(1인당 1.75㎡ 최소면적 확보)로 한국어교육 운영에 적합한 교육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교육장소는 수강자들이 다수의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소음·공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교육장소는 수강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2곳 이상에 분산하여 운영할 것 권장
※ 시·군·구청장은 주민센터, 농협, 도서관, 마을회관 등 수강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 협조

나. 강사의 자격기준 및 채용

○ 강사의 자격기준(다음 중 1개 충족)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강사채용 및 배치기준

- 강사는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위촉계약을 체결함
단, 계약서에는 강의횟수, 강의당 시간, 시간당 급여를 기재하도록 함
- 교실 당 3인 이상 30인 이하의 수강자가 집합된 곳에 한국어교육 강사 1인 배치 가능

※ 한국어교육의 수업 진도가 60% 이상 진행된 경우, 수강인원이 최소 기준(3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영 가능

- 강사 1인당 강의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석자의 출석처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임 사무를 처리한 강사는 센터장이 강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일로부터 1년간 강사, 전담인력 등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강사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함

-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다. 학사 및 실적관리 보고

- 학사관리 : 운영기관에서의 학사관리 및 운영관리는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http://familydb.or.kr>) 내 별도사업>결혼이민지역량강화지원 탭을 통해서 함
 - 기관관리, 강사관리
 - 과정개설, 반관리(등록, 학습중지 등), 일지작성
 - 월별보고
- 월별 사업 실적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운영기관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5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 실적보고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 유의사항
 - 결혼이민지역량강화지원 담당자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로그인 가능

4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기준

가. 기본 개요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교부 절차

- 교부 절차도



1)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제출절차

- 각 운영기관은 연간 사업계획서(서식 1)를 당해 연도 3월 16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예산 사용 변경 포함)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공문
- 사업계획서

※ 관할 시·도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보완완료 후,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고(공문, 기관별 운영계획서)

2) 교부기준 및 범위 통보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시·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구별 연간 교부금액의 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통보

3) 보조금 교부 신청

- 신청시기 : 보조금 교부기준 및 범위(지원액)가 결정된 이후
- 신청절차 : 시·군·구에서 관할 시·도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예산집행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 사업 운영 전용 계좌 통장사본

※ 관할 시·도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보완완료 후,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고(제출서류 일체)

4) 보조금 교부 결정

- 결정시기 : 보조금 교부 신청이 완료된 이후
 - 결정내용 송부 : 성평등가족부에서 관할 시·도에 결정내용 송부
- ※ 관할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결정 사항 통보

5) 보조금 교부(입금)

-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기관

○ 지급방법

- 성평등가족부에서 각 시·도별로 입금하여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로 직접 교부
- 각 운영기관은 반드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분리 전용계좌 사용 (구분계리)

6) 보조금 정산

○ 정산절차

- 시·군·구청장이 관할 시·도에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내용

- 연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운영 사항

○ 정산시기

- 각 운영기관은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서식 2)를 익년도 1월 말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운영기관별 사업결과보고서를 국고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 연간사업보고서로 대체
- 실적 증빙서류 첨부
 - 증빙사진, 보고서, 교육과정표, 수강생 명단 등(경비 지출서류 첨부)
 -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 국고보조금 계좌 입출금 내역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입금하고 해당 증빙서류 첨부
- ※ 지출 증빙서류는 은행입금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영수증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참고사항

-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 명확한 사업비 지출 및 이자정산을 위해 반드시 전용계좌 사용 등 구분계리
 - 사용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 방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 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지자체 사용계좌 활용 가능

다.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1) 예산 현황 및 집행 기준

- 강사 인건비와 운영기관 운영비는 각각의 보조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 ※ 사업비인 한국어교육 강사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를 집행할 수 없음
- 강사 인건비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공통 : 시간당 25,000원 이내
 - 강의로 시간당 25천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1시간 상한 단가 50천원)
 - 야간반, 주말 / 휴일반의 경우 시간당 28,000원 이내 집행 가능
 -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로 활동한 경우 실비 수준(교통비, 급식비 포함 1시간당 10천원 내외)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 지역 내 한국어교육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강의로 예산 범위 내 1일 교통비 20천원 내 지급 가능
- 사업비 : 가형 24,500천원, 나형 20,000천원, 다형 15,500천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 인건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관련 행정요원 인건비, 소모품비
 - 인쇄, 수수료, 공과금 등 한국어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운영 관련 경비 등
 - 간접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
 - * 이때 간접비는 ‘한국어 교육 관련 발생한 간접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강사 인건비 등을 편취하거나, 일부를 반환 받는 등의 행위 금지(자발적 찬조나 기부 명목 등 포함)
 - 강사료는 반드시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현금지급 금지)하고 기부 등을 위한 원천징수 금지
 -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시·도센터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 센터는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거쳐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향간 전용이 가능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전액 강사인건비로 사용 가능

2) 부당 집행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 배상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한국어교육 강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기타 주의사항

- 사업 재위탁 또는 예산 재교부 금지
- 보조금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 외 타 용도 사용 금지
-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 변경 시 공문으로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은 관할 시·도의 사전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임(환수대상임)

FAQ

I. 사업 운영

- 1-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의 7개의 과정을 모두 다 개설해야 하나요?
- ✔ 아니요, 전체 단계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과정만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과정당 12차시, 차시별 기본 1~2시간으로 구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동시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수강해도 되나요?
- ✔ 네, 가능합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동시에 두 과정을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 1-3**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대상자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 개설해야 하나요?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4급 수준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단, 중도입국자녀 과정은 초보 수준에 맞추어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1-4**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수강해도 되나요?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중급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초보수준의 대상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픽 과정 (예 : 토픽 1급) 등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 1-5**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위한 7개 과정별 강사용 매뉴얼의 본문과 활동지를 인쇄하여 교재로 활용 가능하며, 강사에 따라 개별 교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II. 평가

- 2-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배치평가와 성취도 평가가 따로 있나요?
- ☑ 아니요, 수강목적에 따라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평가와 성취도 평가는 없습니다.

IV. 실적 보고

- 4-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 ☑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http://familydb.or.kr>)에 매월 5일까지 실적 입력·보고 하시면 됩니다.

V. 예산

- 5-1 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를 집행해도 되나요?
- ☑ 아니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서식

차례

서식 1	사업계획서	193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195
서식 3	수강 신청서	198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99
서식 5	이수정지(서비스중지) 및 제적 관리대장	201

[서식 1]

20〇〇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계획서

I. 개요

운영기관	〇〇〇기관 (법인·단체명 :)		기관 설치일	
법인·단체 종류	법인 (비영리민간 ☐ , 사단 ☐ , 사회복지 ☐ , 종교 ☐ , 재단 ☐ , 특수 ☐ , 학교 ☐ 비영리 민간단체 ☐ 직영 ☐ 기타 ()			
기 간				
지역적 특성	※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지리적 특성 등 지역특성 기재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 ○			
20〇〇년 목표인원 (명수기재)	자녀학습지도과정		지역문화 활용 과정	중도입국자녀과정
	취업지원과정	토픽(읽기)	토픽(듣기)	토픽(쓰기)

II. 세부사업 추진계획

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 사업내용 및 방법
-
- ☐ 세부 추진계획

구분	과정명	목표인원*	추진 일정	교육장소	비고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자녀학습지원과정	25	2~7월(매주 화·목, 회당 2시간 총 24시간)		
	지역문화활용과정	25	2~7월(매주 수·금, 회당 2시간 총 24시간)		
	중도입국자녀과정				
	...				
	...				

Ⅲ. 기대효과

□

※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통한 기대효과 세부적으로 기술(개조식)

Ⅳ. 연간 추진일정

사 업 명		사업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자녀학습지원과정												
	지역문화활용과정												
	중도입국자녀과정												
	...												

※ 추진시기는 해당 칸에 음영으로 표시함

Ⅴ.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사 업 비				
			계	국비	지 방 비		기타
					시도	시군구	
총계							
인 건 비	계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 영 비	계						
	운영비						
	공공요금						
	...						
사 업 비	계						
	한국어교육 강사료						

[서식 2]

20〇〇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I. 개요

운영기관	〇〇〇기관 (법인·단체명 :)		기관 설치일	
법인·단체 종류	법인 (비영리민간 □, 사단 □, 사회복지 □, 종교 □, 재단 □, 특수 □, 학교 □) 비영리 민간단체 □ 직영 □ 기타 ()			
기 간	20〇〇. 3. 1. ~ 20〇〇. 12. 31			
사 업 비	총 원	국 비	원(%)	
		지방비	원(%)	
		기 타	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실적 간략히 작성) - -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II. 계획대비 추진실적

		역량강화지원	심화과정
실인원	계획	명	명
	실적	명	명
	달성률	%	%
개설반 수		개반	개반
진행시간		시간	시간
○ (서술형 기재) - -			

III. 사업추진성과

○

○

〈작성요령〉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

V. 사업운영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V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량	단가

Ⅶ.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집행 내역				
		계	국비	지 방 비		기타
				시도	시군구	
총 계						
인 건 비	계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 영 비	계					
	운영비					
	공공요금					
	...					
사 업 비	계					
	한국어교육 강사료					

[서식 3]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수강 신청서

수강강좌명	
수강기간	-

수강신청자 인적사항			
한글성명		나 이	만 세
영문성명			
생년월일			
집전화		휴대전화	
주 소			
이메일주소	@ ※ 성평등가족부 정책 홍보자료 이메일 수신동의여부 : ☐ 예 / ☐ 아니요		

결혼이민자 기재사항							
출 신 국			최종학력				
국적취득여부			입 국 일				
한국거주기간 (개월)			방문교육 이용여부	있음 () 없음 ()			
비상연락전화	집전화 () - , 휴대전화 () -						
한국어능력 수준 (상·중·하로 표시)	말하기		듣 기		쓰 기		읽 기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 〇〇. 〇〇

신청인 : (서명)

〇〇〇〇운영기관장 귀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2)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식별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력관리

2) 수집 항목

2-1)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출신국
결혼이민자 정보	최종학력, 국적취득여부, 입국일, 한국거주기간, 방문교육이용여부, 비상전화, 한국어능력수준, 가족관계정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회원등록을 위한 최초 실명인증 후 개인정보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하지 않음(즉시 반환 또는 폐기 예정)
프로그램 신청 및 과거 서비스 이용 정보	

2-2) 선택적 정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 신청인정보 : 이메일, 한국어 습득기간, 서비스 희망일정, 희망서비스 내용	

3) 보유·이용기간

- (1) 문서관리 : 해당서비스 지원기간동안 보유·이용되며,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 (2)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관리 : 준영구(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에 의거)

4)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관계	

5) 동의거부 권리

▶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여권으로 회원등록 할 경우만 해당)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제공받는 자

1-1) (집합)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1) 개인식별 및 서비스 이력관리

(2)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전화, 모바일)

(3)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관리

- 실적관리 및 홍보

3) 제공항목

공통 정보	
신청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출신국, 여권사본(여권으로 회원등록 할 경우만 해당)
회원정보	출신국, 최종학력, 국적취득여부, 입국일, 한국거주기간, 방한교육이용여부, 비상전화, 한국어능력수준
프로그램 신청 및 과거 서비스 이용 정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력정보	

한국어교육 서비스	
• 신청인정보 : E-mail, 한국어 습득기간, 서비스 희망일정, 희망서비스 내용	
위 항목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1) 문서 관리 : 해당서비스 지원기간동안 보관하고,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2)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관리 : 준영구(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에 의거)

5) 동의 거부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참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의 참여를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이름 : _____ (서명)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6]

이수정지(서비스중지) 및 제적 관리대장

연번	성명	교육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구분	비고
1					☐ 이수정지 ☐ 제적	
2					☐ 이수정지 ☐ 제적	
3					☐ 이수정지 ☐ 제적	
4					☐ 이수정지 ☐ 제적	
5					☐ 이수정지 ☐ 제적	
6					☐ 이수정지 ☐ 제적	
7					☐ 이수정지 ☐ 제적	
8					☐ 이수정지 ☐ 제적	
9					☐ 이수정지 ☐ 제적	
10					☐ 이수정지 ☐ 제적	

부서 강조

입사환영특 대기화권다
제7장

VIII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1. 사업의 이해
2. 사업 준비 및 계획
3. 사업 실행
4. 예산 및 직원 복무
5. 실적 관리



1

사업의 이해

가 목 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소통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참여 확대

나 개 념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공간이자 육아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 공간이며, 자녀성장 집중지원 공간
- 결혼이민자의 자조활동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열린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의 공간

다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운영 원칙

- (주민자치) 참여 결혼이민자는 자조활동 및 정보교류의 주체이며, 사업수행 기관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다국어 언어서비스 필요시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 (공동체성) 자녀성장,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이 이용자 및 참여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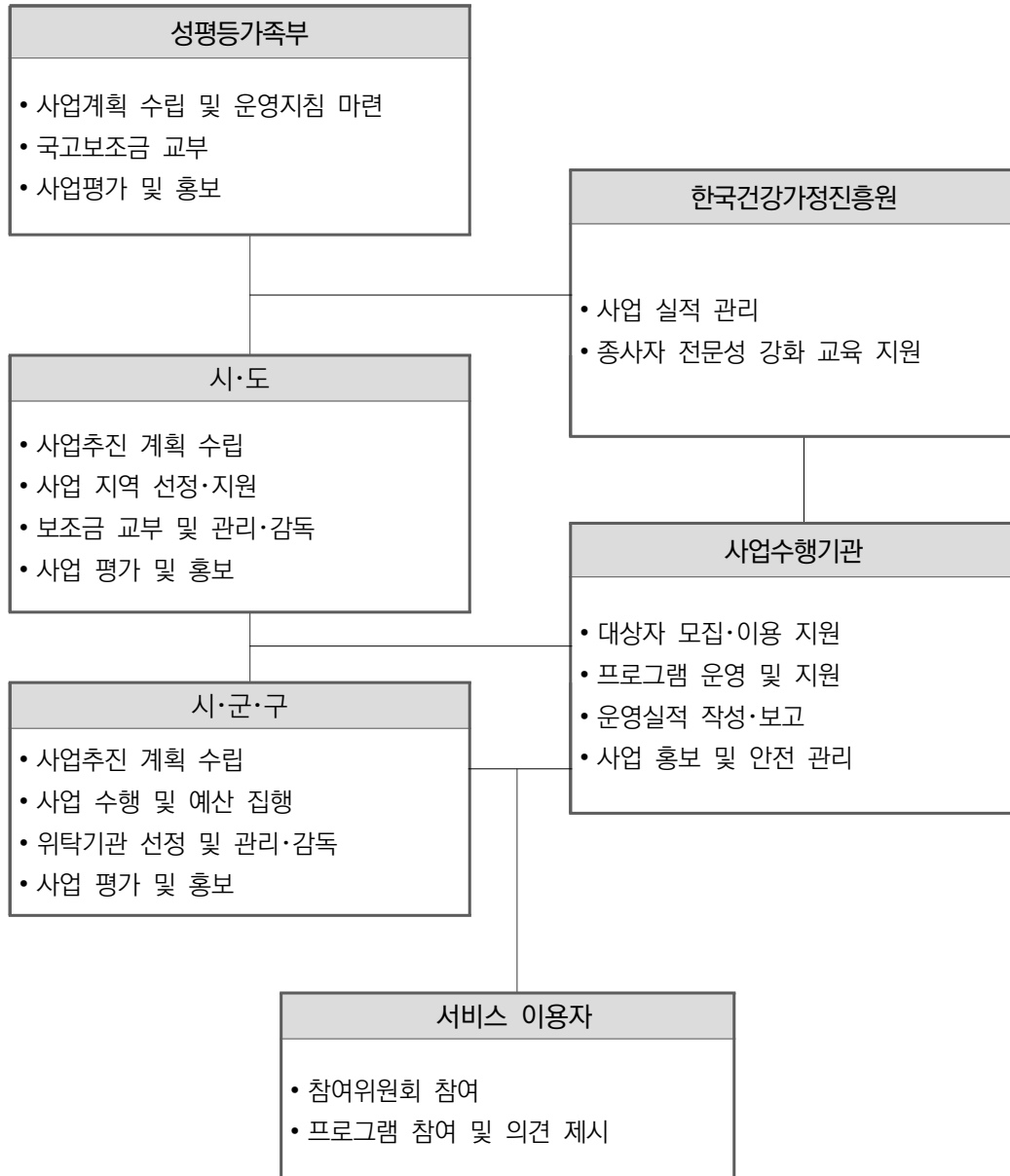
마 사업 내용

- (공간 제공)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자녀양육 등 자조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간
 - * 청소년특화형은 이주배경청소년에 적합한 사업운영
- (지역사회 통합)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다문화이해 및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 지원 공간

바 추진 연혁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개소 운영('19년~)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2개소 운영('23년)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120개소 운영(38개소 확대, '24년~)

〈사업운영추진체계〉



2

사업 준비 및 계획

가 지역여건 분석

- 지역별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우선 파악
 -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 자녀연령 및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일반형, 청소년특화형 등)

나 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계획 수립
 - (초기정착) 신규 공간의 경우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지역 내 활용 자원 발굴 및 홍보’ 등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안정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및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자녀성장 집중지원 공간으로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교류·소통공간으로 안착
 - (확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다문화이해의 장으로 확장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의 공간으로 확산하는 단계(지역공동체 내 협력 작업, 출신국가별 문화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 공간 발굴

1) 고려 사항

- 지역 내 수요 및 접근성 고려
 -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를 파악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에 설치

- 잠재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규모 결정

* 자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아이들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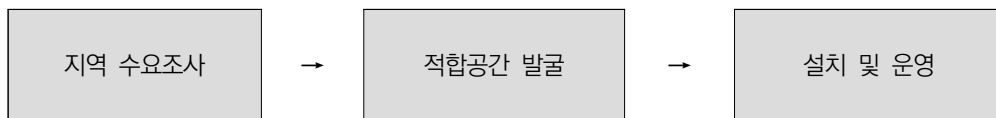
○ 이용 편의성, 안전성 고려

- 시설 이용이 편리한 환경일 것(예 : 장애인 출입 및 유모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설치)
- 공간의 쾌적함(지하 공간 등 환기가 어려운 공간 지양), 석면·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의 안전성, 여성 및 자녀 활동에 위험이 없는지를 고려

○ 사용 기간

-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센터 외부에 공간설치 시 5년 이상 시설유지 계약 체결)

〈시설 설치 과정〉



2) 활용 가능 공간

-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휴시설
- 지자체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 장기임대 가능 공간 등 활용

라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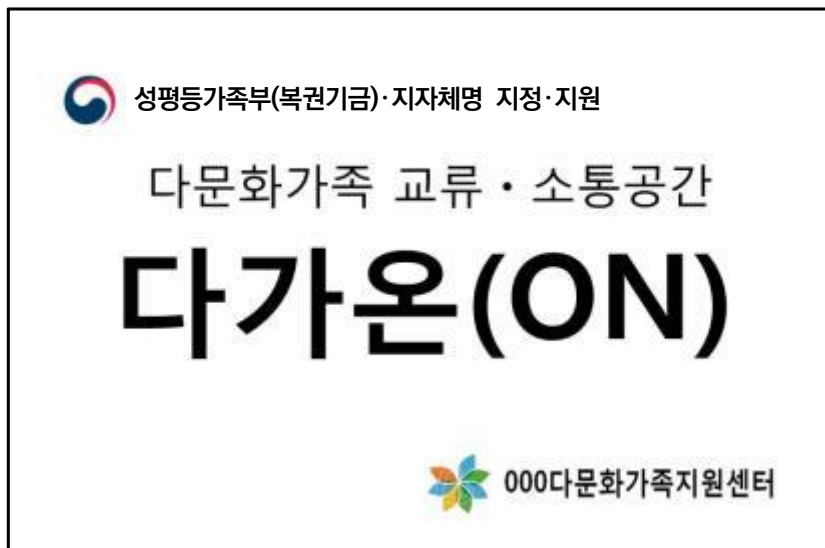
-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 주력 사업에 부합하는 디자인일 것
- 교육 및 모임활동에 적합한 입식, 돌봄 활동에 적합한 좌식 공간 구성 등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

【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비치 필수 물품

연번	물품명	내 용	비고
1	소화기	-	
2	청소기	물청소 포함(좌식)	
3	냉·난방기	난방(바닥난방, 온풍기 등), 냉방(선풍기, 에어컨 등)	
4	전화기	건물 내 이용이 용이한 공용 전화기 있는 경우 미설치	
5	교육용 책걸상	공간 구성에 적합한 수량 구비	
6	회의테이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테이블	
7	게시판	이용수칙, 공지사항 등 게시	
8	공기청정기	-	
9	의약품	상비약 비치 후 필요시 의약품 제공	
10	음용수대(정수기)	화상방지용 안전장치 필수 설치	
11	문틈안전대	자녀들이 이용하는 문 전체에 설치	
12	온습도계	-	
13	CCTV	1대 이상	
14	재난대피 안내도	인지하기 쉬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15	기저귀 갈이대	이동식 또는 고정식	선택
16	수유 시설	수유용 의자 또는 방석 비치	선택
17	휴게 시설	영유아 수면 공간 및 침구	선택
18	세면대	손 씻을 수 있는 시설	선택
19	도서 및 책장	-	선택
20	매트	전체 크기의 1/4면적 이상 설치 (바닥쿠션이 있는 장판사용 시 매트 미설치 가능)	선택

마 시설 표시

-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성평등가족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복권기금) 지원을 명시한 현판 설치
 - 문구는 ‘성평등가족부(복권기금)·지자체명 지정·지원’의 형태로 표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로고(다가온)* 사용
 - * 다가온(ON) : 다문화가족이 서로 교류하며 밝게 ON하자, 다문화가족이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에 다가오자는 의미
 - 글씨체와 글자 크기는 상황에 따라 자율로 할 수 있음



* 권장 현판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 권장 현판

3

사업 실행

가 공간 운영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
 - 해당 사업 또는 관련 업무 수행 경력,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의 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 위탁 이후에도 '공간 선정, 보조인력 또는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에 있어서 운영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필요

나 홍보 및 모집

- 온·오프라인 매체 및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홍보방안 예시〉

지역신문, 현수막, 포스터(주민센터 부착 등), 전단지,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결혼이민자 카페 등), 홍보물품 제작·배부

※ 청소년특화형 시설의 경우, 지역내 학교 및 유관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레인보우스쿨 등)에 협조요청(가정통신문, 공문 발송 등)

다 운영 관리

1) 참여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업담당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담당자 등 5인 이상 참여위원회를 구성(연 2회 이상 개최)
- 공간 운영방식, 건의사항 등 이용자 의견 수렴 등
- ※ 센터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2) 운영 시간

-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운영 가능

3) 이용 요금

- 누구나 무료로 이용
 - 간식 제공,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예산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요금부담 가능

4) 프로그램 운영

- 취지 : 다문화가족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결혼이민자 자조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다문화이해 교육 등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 참여 결혼이민자는 자녀돌봄·자조활동 및 정보교류의 주체이며, 사업담당자는 운영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상시 프로그램(2개 이상)은 주 2회 이상 운영을 권장함

5) 서식 관리

- 이용자 작성
 - 이용대장(출입 시 작성)
- 사업담당자 작성
 - 연간사업계획서, 연간결과보고서, 세부사업계획서, 안전점검표

라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안)
일반형	-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 지역사회 통합지원 - 자녀돌봄 지원 - 자녀성장 지원 등
청소년 특화형	-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레인보우스쿨) - 이중언어 코디네이터 맞춤형 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상담, 정서상담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 또래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권장하되 운영기관의 역량 및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연하게 구성·운영 가능

※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이주배경·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이중언어 교류 프로그램 시범 추진 권장

1) 일반형

가) 결혼이민자 자조활동(우선시행 권장)

자조모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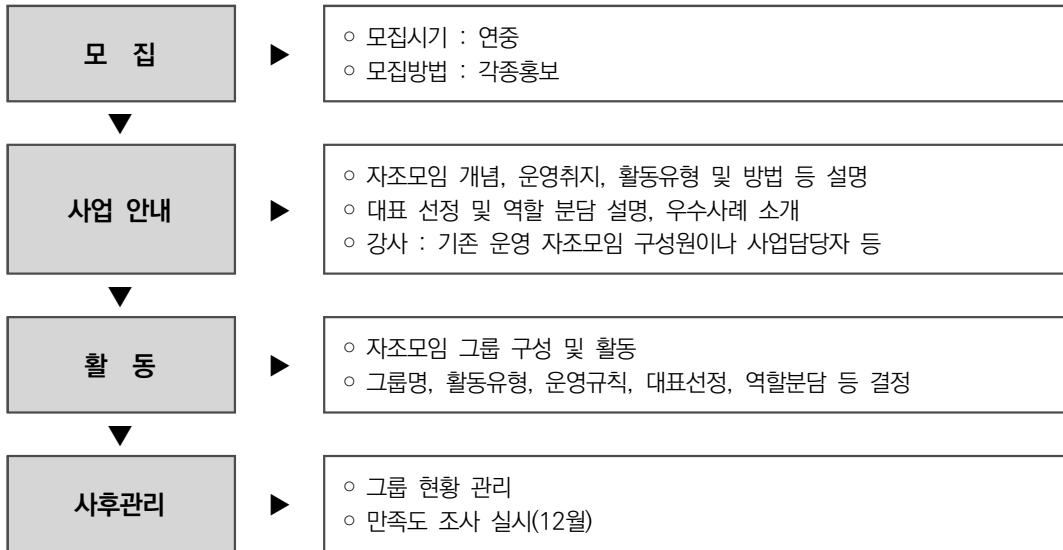
-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

○ 서식 관리

- ‘자조모임 신청서, 활동일지, 운영계획서’ 관리

(※ 각 센터별 운영 중인 서식 활용 가능)

○ 자조모임 운영 절차



○ 자조모임 활동

- 그룹 형성 시 사업 안내 교육 실시(추후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기존 구성원 또는 사업담당자 등이 교육)
- 활동 내용·방식 등은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활동 지원
- 월별 활동일지 제출
- 활동비 지원 : 활동계획서 또는 지출내역(활동일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활동비 지원(실비 사후 정산)
- 활동비 지원 여부 및 액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율 결정하되, 하단 안내사항 준수

활동비 사용 안내

- 월활동비 지출액은 '당월 자조모임 계획서 제출 그룹 수×5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자조모임 전체 모임

- 전체모임을 통해 자조모임 활동 경험 공유
- 체험활동(캠프), 발표회, 평가회 등 연 1회 실시

○ 자조모임 유형(예시)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국적취득준비 등)
- 자녀 양육 역량 강화(자녀 이중언어 촉진 활동, 자녀 놀이방법 등)
- 예체능 취미활동(결혼이민여성 재능 나눔)

나) 지역사회 통합 지원(우선시행 권장)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활동 발굴 및 일반주민에게 열린 다문화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의 공간 제공
- 다양한 문화 간 상호교류작용과 지역 공동체 내 협력 작업 및 활동 장려
 - 결혼이민자의 다문화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 :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강사로서 모국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 진행 등

다) 자녀돌봄 지원

- 자녀돌봄 공간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이용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돌봄 공간 제공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녀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및 정보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자녀양육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교육·상담·문화 등 프로그램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음)

라) 자녀성장 지원

- 자녀 간 소통·교류 활동 제공
 - 다문화자녀 간 또는 다문화자녀-비다문화자녀 간 소통·교류 활동 제공 (교육·상담·문화 등 프로그램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음)
- 자녀성장 집중지원 공간 활용
 -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능력향상, 상담지원, 학교적응, 차별·편견 극복을 위한 심층지도 및 '서로의지지망'으로서 상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다문화 부모와 사춘기 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교육·상담·문화 등 프로그램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음)

2) 청소년특화형

※ 교류·소통공간 운영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시행

가) 레인보우스쿨(한국어교육) 모형

- 한국어 강사 위촉, 특기적성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용한 한국어, 생활문화 체험활동, 체육활동, 요리, 미술, 편입학 및 진로지도, 교육생 상담 등
- (운영형태) : 전일제 또는 시간제 운영
 - 전일제 : 1~2학기 각 19주(총 450시간), 주 5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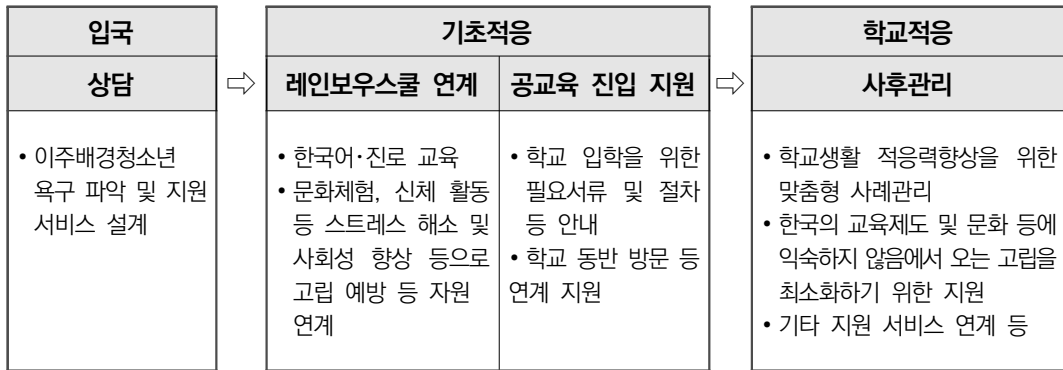
영역	세부 내용	시간배분(450)
한국어 과정	기초생활한국어	300
기관별 특기적성	학과 지도, 생활문화체험 등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150
기타	프로그램 교육생 상담 실시	1인 2회

- 시간제(방과후, 주말·야간) : 1~2학기 각 19주(총 220시간), 주 3회 운영

영역	세부 내용	시간배분(220)
한국어 과정	기초생활한국어	200
기관별 특기적성	학과 지도, 생활문화체험 등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20
기타	프로그램 교육생 상담 실시	1인 2회

나) 이중언어 코디네이터 모형

- 입국초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보다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이들의 학교생활·한국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 공교육 진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학교 연계
- 학교 안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한국의 교육제도·문화 관련 이해교육 등 사후관리



다) 놀!자! 모형

-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끼를 맘껏 발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주제별 공간 운영 : 공유 공간(도서, 보드게임 등 놀이 공간), 댄스방, 노래방, 유튜브 촬영방 등 지역 상황에 맞는 공간 운영
 -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문화교실 운영(예 : 미디어 윤리교실 등)
 - 이주배경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공개하여 교류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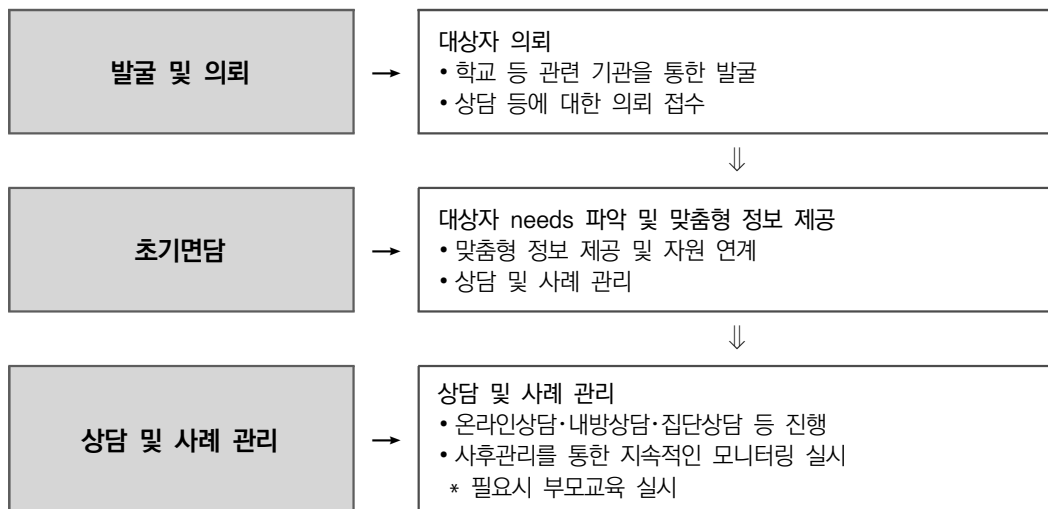
【표】 놀!자! 공간 제시(안)

공간	세부 내용	관련 강의
공유 공간	도서, 보드게임 등 놀이 공간	교류의 장
댄스방	방송 댄스 등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건강교실
노래방	(혼자)코인노래방 대신 건전한 공간 이용	노래한국어
유튜브 촬영방	청소년의 선호 직업 1순위, 유튜버 유튜버 체험하기, 관련 윤리 교실 필수 진행	진로교실 미디어윤리교실
강당	토론방, 문화 발표회 등 모두를 위한 공간	'나' 표현하기, 무대 매너, 이미지 메이킹 등

라) 정서지원 모형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인 상담지원
 - 대면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채로운 채널을 활용한 상담 실시
 -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환경 조성을 위한 다국어 상담 통역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의 긴급·위기 상황 개입 및 한국 적응(진학, 진로, 체류, 정신 건강 등)에 대한 다각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표】 정서지원·사례관리 체계(안)



마) 교류 모형

- 상호 문화 소통을 통한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류 활동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일반청소년 대상 멘토·멘티 모집 및 크로스 매칭
 - 학습지원, 문화체험, 건강한 관계 맺기 경험을 통한 심리·정서적지지
 - 학교 안 운영 중인 동아리와 콜라보 ‘만반잘부 공감’ 활동 실시
 - * 예 : 방송반+상호문화소통 활동 / 만반잘부 :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신조어
 - 상호문화소통 및 공감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마 안전 관리

1) 원칙

- 사업담당자는 이용자와 자녀의 실내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함께 아동을 보호·감독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 화재 및 지진 등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하여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예시)

항 목	주요 내용
공간 및 설비 점검	담당자 지정 및 자체점검 방법
냉·난방용품, 정수기 등	유지보수 점검(제조업체 등) 방법
전기 및 가스, 승강기 등 점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관리원 년 1회 및 유지보수
응급처치	응급의료정보센터, 주변 병·의원 등 비상연락 및 정보체계 구축
안전관리 인적조직 구성	안전 관리자 지정,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 내·외부 관계자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관련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 보험 가입
안전교육(종사자, 유급자원봉사자)	유관기관 협조 소방안전(예방, 대처, 소방시설 사용, 피난유도 등), 심폐소생술 등 교육, 비상대비 모의훈련 등

②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실시 및 보고(반기별)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기관은 이용자와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및 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기관은 화재, 상해, 위생 등 각종 사고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설에 분기별 안전관리 점검표를 비치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반기별로 안전점검 실시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인 (p.224-225)

2) 분야별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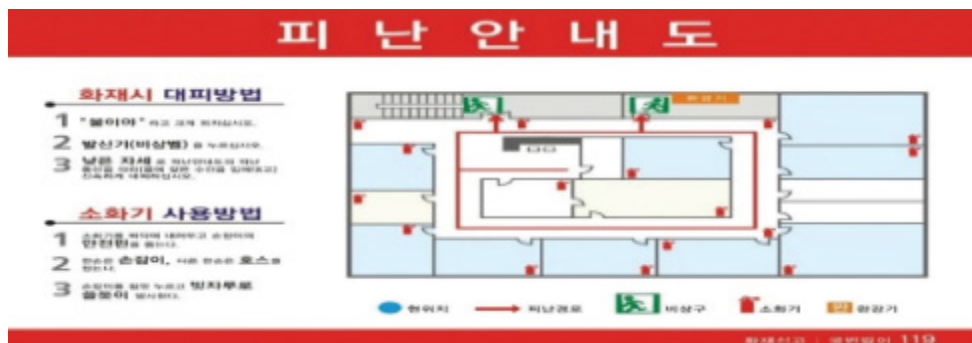
○ 일반사항

-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및 확인
- 아동 활동공간의 위해성 안전관리 제고
 - ※ 환경보건법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의 4항, 6항, 8항 준수
- CCTV 설치기준 및 열람방식 등
 -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기간으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당 1대 이상 설치
 - CCTV 운영 및 관리,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등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열람방식(어린이집 CCTV열람방식 기준 적용)
 -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 처리 준수

구 분	상 세 내 용
열람권자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열람절차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
관리대장	열람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삭제방법	보관기관 경과 영상정보는 사업수행기관의 기관장 확인을 거친 후 삭제

○ 시설 및 화재 등 재난 안전관리

- 소화기는 1개 이상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할 것
-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 발생 대비 피난안내도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부분(복도, 계단 또는 넓은 공간)에 부착해야 함 (피난 출구 유도표지와 대피경로 포함)
 - ※ 피난통로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적재물이 없도록 관리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참조

- 계단은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
- 승강기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 실시
- 모든 전기콘센트는 안전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사용을 통제해야 함
-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코드 동시 사용금지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실내공간의 경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실내

- 벽모서리, 기둥모서리 안전장치(코너가드, 모따기 등) 조치
- 여닫이문의 경우 안전장치 설치(도어클로저, 손끼임 방지장치 등)
- 바닥에 문턱이 있는 경우 넘어짐 방지 안전장치 설치(문턱의 경우 문턱안전대 설치)
- 설치가구 및 책상, 장난감, 도서 수납공간(선반) 등 모서리 부분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둥글고 매끄럽게 마감처리(모서리 보호장치 등)하고 파손상태를 상시 점검
- 좌식일 경우 아동 놀이 공간 바닥에는 매트(방염처리) 등을 설치하여 아동보호 조치
- 장난감 등 완구 및 놀이기구 구매 시 “검”, “안전”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되, 파손된 부분이 없는 지 수시로 점검
- 전자기 주변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안내 번호판 부착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등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고정 조치
- 가급적 방염처리 된 커튼, 벽지, 매트, 마감재료 등 사용 권장

- 위생 등 안전관리 : 위생안전 관리자 지정을 통해 자율 위생관리 실시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기관은 이용자 및 자녀에게 질병·사고, 상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조치
 -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
 - 전염성 질환¹⁾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

1) (주요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아동의 경우 제한대상이 아님

- 적절한 실내 온도·습도관리, 환기관리 :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 질 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실내온도 : 일반적으로 18℃~28℃ 유지(난방 18℃~20℃, 냉방 26℃~28℃)
 - 실내습도 : 일반적으로 30%~80%로 유지
 - 공기질 관리 :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 시간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겨울철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2~3시간 주기로 환기
 - ※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또는 공기청정기 사용시 환기 빈도를 적절히 조절
- 수유방이 설치된 경우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
- 음용수대(정수기) 등 관리
 -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청소(정수기별 위생관리 점검표 비치), 6개월마다 수질검사 실시
 - 렌털 및 기기 구입 시 설치 업체에 수질검사, 정기적 필터교환 등 사후관리 의무화(주기적인 위생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급식수는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수질기준 준수
- 화장실 및 세면도구 관리 : 정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청결하게 위생관리
- 해충 관리 : 모기, 파리, 바퀴벌레, 나방 등 해충이 없도록 수시관리
- 의약품 관리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하고, 부모 동의하에 의약품 제공
 - 구급약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충하고, 의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요

〈 월별 안전관리 점검표(사업기관 작성)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이상유무)	조치사항
1. 화기 주변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방법도 표시되어 있다		
2.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가 청결하다 (위생관리 점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정수기 등에서 뜨거운 온수로 인한 화상 위험이 없도록 온도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4. 바닥 및 매트 의 청소상태가 양호하다		
5. 창틀, 게시판, 도서 등은 청결한 상태이다		
6. 책상 등 모든 비품은 청결한 상태이다		
7. 기저귀 갈이대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깔개 또는 물휴지 등이 구비되어 있다		
8. 실내온도는 18도 이상 2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9. 실내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10. 전화기 주변에는 응급 시 안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11. 모든 전기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다		
12.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등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13. 구급상자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적절한 응급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용법 및 부작용 등이 서면화 되어 있다		
14. 피난안내도는 이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다		
15. 벽모서리나 기둥모서리 같은 구조물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 모나지 않게 조치되었다		
16. 책장, 책상 등의 비품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 모나지 않게 조치되어 있고, 파손된 곳이 없다		
17. 모든 출입문(현관문, 화장실 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8. 화장실은 청결하며,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19. 가스누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다		

제8장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제8장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225

4

예산 및 직원 복무

가 사업 예산

1) 예산 지원

- 개소별 47,160천원 지원(국비 비율 서울 30%, 지방 50%~70%)

2) 예산 편성 및 집행

○ 인건비

- 전담인력 1인 지정하여 사업추진(전담인력 1인 신규 고용 원칙, 센터여건에 따라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 등을 통해 운영 가능)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사업비 * 기관별 상황에 맞춰 예산 범위 내 사업비 편성 가능

- 기관운영비 : 교육훈련비, 시설관리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등
- 일반운영비 :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CCTV, 공기청정기 대여료 등), 우편비 등
- 여비 : 국내출장여비 등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등
-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 20,000원 이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 프로그램 경비 : 자조모임, 자녀성장 등 프로그램(사업) 경비 등

○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준용

○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별도 물품대장 수불 관리

나 사업담당자 복무

- 사업수행 담당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처우할 것
 - 기관 직원과 동일 호봉 적용
 - 채용기준 동일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필수교육 이수시간 동일
- 담당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이수기준 : 20시간 / 12개월 × 근무개월수 이상
 - ※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10시간 미만으로 이수 가능
- 교육시간 20시간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포함
- 한가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한 시·도센터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10시간 내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 시수로 인정

5

실적 관리

가 보고 사항

1) 설치 현황(기초 → 광역 → 성평등가족부)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및 폐쇄 시 공문 통보(신규 개소, 폐소 등)

2) 월별 실적(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월별 실적 제출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서면	서식1 참조
	시·군·구	시·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서면	서식2 참조
	시·군·구	시·도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사업계획	사업수행기관	시·도	사업시행 전월 20일까지	시스템 및 별도 수기 서식	
예산집행실적		시·군·구	매 익월 10일까지		
월간사업실적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 (가족센터) 매 익월 5일 /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에 보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매 익월 5일 / '사회통합' 영역에 보고		



차례

서식 1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연간사업계획서	233
서식 2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연간사업결과보고서	236
서식 3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예시)	242
서식 4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대장	246
서식 5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수칙(예시)	247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연간사업계획서

I. 개 요

1.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인원 : 연인원
- 상시프로그램 운영횟수 : 연간
- 기타 : 기타 목표로 설정한 내용 포함

2. 사업기간

○

3. 사업예산

- * 자체 예산(지방비) 확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자부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기재
- * 사업시행지역이 다수인 경우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분 현황 기재

[예산 배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예산 (국비+지방비+ 자체부담)	국 비	지방비		자체 부담	외부 지원금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						
...						
...						
...						

II.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시행지역 및 서비스 제공기관

○

2. 사업내용

- 자녀돌봄 지원
- 자녀성장 지원
-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 지역사회 통합
- 상시프로그램

※ 청소년 특화형의 경우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3.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 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지역사회연계 및 홍보계획

○

Ⅲ. 사업수행인력

구분	성명	부서	직위	건강가정사 여부
전담인력 / 기존 센터직원				

Ⅳ. 예산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총예산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총계						
설치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운영상비					
	소계					

Ⅴ. 기타 참고사항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연간사업결과보고서

구 분	사 업 기 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사업	

2000. 1. 0.

사업수행기관 : 0000000

직인

I. 사업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	천원(%)
		지자체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목적	○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내용			
추진실적			
사업성과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쪽수 및 양식 변경불가)

II. 사업내용

1. 사업목적

1)

2. 사업목표량 / 달성량

1) 이용인원

○ 전년 대비 증가인원

2) 자녀돌봄 지원프로그램 : 회기, 연인원 / 회기, 연인원

○

3)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 : 회기, 연인원 / 회기, 연인원

○

4)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운영 : 그룹 / 그룹

○

5) 지역사회 통합 지원프로그램 : 회기, 연인원 / 회기, 연인원

○

6) 상시 프로그램 : 회기, 연인원 / 회기, 연인원

○

7) 참여위원회 회의 및 자조모임 정례회의

○

8) 기타

○

※ 청소년 특화형의 경우 사업내용에 맞게 서식 수정 후 작성

3. 사업대상

1)

4.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사업내용	세 부 과 제	추진시기
자녀돌봄 지원 프로그램	•	4월, 9월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 총 2회 - -	8월, 12월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프로그램	• 총 10그룹 운영 - 실무자 각 그룹 연간 2회 자조활동 관리방문 - 활동일지 관리	연간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놀이 체험 - •	연간
상시프로그램	• 월~금 상시운영(10시~18시) - 이용자관리대장 - 자원봉사자운영 - 홍보 -	연간
기타	• -	

※ 사업내용 추가 시 줄 추가하여 작성

Ⅲ. 사업세부내용

〈작성요령〉

- 4번의 사업내용의 세부과제 실행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작성
 - 실적관리(그래프활용), 교육의 경우 만족도 수치 활용
- 작성 시 개조식으로 서술하고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사업내용 당 사진자료는 2개 이하 활용

※ 계획 대비 성과 포함

IV. 사업추진성과

1) 사업추진실적(총괄)

○ 수행사업 및 지역주민 참여인원(연인원)

구분	총계	자녀 돌봄지원	자녀 성장지원	결혼이주 여성 자조활동	지역 사회통합	상시 프로그램	기타
사업수	건						
회기수	회기						
참여인원	명						
만족도	점						

※ 청소년 특화형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서식 수정 후 작성

- 결과분석

2) 사업성과

○

V. 자체평가

1)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

○

4) 개선사항

V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1			
2			
3			
4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DVD 등 저장매체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I.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0000” / 통번역 자문단		
담 당 자			
사업장소			
사업영역			
사업예산			
사업대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추진전략	—		
예상 추진실적			
기대효과	—		

II. 사업추진 방법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 목적

-

3) 사업목표

성과목표	산출목표

4) 개요

가. 일시 :

나. 장소 :

다. 대상 :

라. 예산 :

마. 내용 :

5) 예상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가. 예상 추진실적

구분	실인원	회기수	만족도

나. 기대효과

○

3. 추진전략

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

○ 홍보방안

	—
	—

○ 대상자

대상자	—
대상자 선정방법	

나.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

4. 사업평가 방법

1) 정량평가

구 분		산출목표 계획	평가도구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2) 정성평가

구 분	성과목표	평가도구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Ⅲ. 시기별 사업추진일정

구 분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Ⅳ. 사업 예산

과 목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세목		
					원
					원
					원
합 계					0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대장

번호	날 짜	이 름	동반자녀인원	자녀연령	입실시간
1			명	,	:
2			명	,	:
3			명	,	:
4			명	,	:
5			명	,	:
6			명	,	:
7			명	,	:
8			명	,	:
9			명	,	:
10			명	,	:
11			명	,	:
12			명	,	:
13			명	,	:
14			명	,	:
15			명	,	:
16			명	,	:
17			명	,	:
18			명	,	:

※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올 경우 자녀인원 숫자 기입

※ 부모 없이 자녀(아동)만 방문한 경우 이름에 자녀(아동) 이름 기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용수칙(예시)

1. 이용대상_ 000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2. 이용시간

- 평일 : 월~금 10: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필요시 별도 운영 가능

3. 공간 이용방법

- 물품 및 기물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이 사용하겠습니다.
-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 (공간 구성 현황에 맞추어 이용방법 고지)

4. 프로그램 이용방법

- (기본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에 따른 이용방법 고지)

※ 기관 내부사정을 고려한 이용방법 게시

※ 센터 밖 외부 설치 시 사업개요 게시

000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IX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1. 거점센터 지정
2. 거점센터 운영



1

거점센터 지정

가. 추진목적

-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에 거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나.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직원 교육 실시
 -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 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지원
 - 만족도조사 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
 - 거점센터 정기회의 참여 등
-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다. 2026년 거점센터

- 16개 광역시도별 거점센터 1개소 설치(총 17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 총 235개소(지방비센터, 가족센터 포함)

권역	시·도	거 점 센 터	지원액
1	서 울	서울시가족센터(서울시 거점센터)	39.1~60.7백만원
2	부 산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산시 거점센터)	
3	대 구	대구동구가족센터(대구시 거점센터)	
4	인 천	계양구가족센터(인천시 거점센터)	
5	광 주	광주북구가족센터(광주시 거점센터)	
6	대 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대전시 거점센터)	
7	울 산	울산중구가족센터(울산시 거점센터)	
8	경기 남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기남부 거점센터)	
9	경기 북부	구리시가족센터(경기북부 거점센터)	
10	강 원	춘천시가족센터(강원도 거점센터)	
11	충 북	충주시가족센터(충청북도 거점센터)	
12	충남·세종	충청남도가족센터(충청남도 거점센터)	
13	전 북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전라북도 거점센터)	
14	전 남	해남군가족센터(전라남도 거점센터)	
15	경 북	경상북도가족센터(경상북도 거점센터)	
16	경 남	경상남도가족센터(경상남도 거점센터)	
17	제 주	서귀포시가족센터(제주도 거점센터)	

※ 거점센터로 지정된 센터는 ○○○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도거점센터)로 공식 명칭사용
 ※ 세종시가족센터는 충남거점센터에서 사업지원 및 관리함

라. 지정 및 운영주체

- 지정주체 : 시·도지사
- 운영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간 : 연단위로 5년 이내
 - ※ 단,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 시 센터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지정
 - ※ 거점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내에서 지정 기간 연장 가능
 - ※ 위탁(지정) 계약서에 거점 전담인력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마. 지정요건

- 거점센터 기준
 - 센터 실적이 우수하여 사업역량을 인정받는 센터
 -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
 - ※ 단, 최근 2년 이내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기관 지정 불가
- 전담인력 자격기준
 - 센터 직원(팀장, 팀원) 기준*을 만족하는 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 가능)
 - ※ 전담인력은 거점센터 업무에 집중하여야 함
 - 센터 직원 임면 및 복무 기준은 가족사업안내 I 권* 지침을 따름
 - *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바. 지정절차

1) 거점센터 지정 절차

① 공고·안내(시·도) ⇒ ② 신청(기존 센터 등)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거점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시·도) ⇒ ⑤ 거점센터 선정결과 보고(시·도 → 성평등가족부) ⇒ ⑥ 거점센터 확정통보(성평등가족부 → 시·도) ⇒ ⑦ 거점센터 운영

* 거점센터 지정 절차의 예외

- 시·도 가족센터,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 직영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지정 할 수 있음

2) 신청 및 구비서류

- 지정 희망 센터는 「거점센터 지정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 지정 신청자격(실적, 시설 및 인력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
 - 센터 선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시·도지사는 지정기준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 마련

4) 거점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는 지정된 센터에 대해 거점센터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5) 거점센터 확정 절차

- 시·도지사는 지정된 센터의 지정 결과보고를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6) 거점센터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절차
 - 센터 운영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취소
 - 센터 현지조사 및 센터 관계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 이행
 - 시·도지사는 거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성평등가족부에 통보

위탁취소 사유

- 위탁받은 센터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위탁받은 센터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위탁받은 센터가 거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위탁받은 센터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위탁받은 센터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위탁취소 및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거점센터 재지정시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후 1주일 내에 성평등가족부 보고

사. 위탁기간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5년 이내)할 수 있음

가. 예산편성 및 집행

- 1)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 국비(서울 30%, 지방 50%)
- 2) 예산편성 및 집행
 - 거점센터의 예산(운영비)은 국가·지자체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
 - 예산편성
 - 인건비
 - 전담인력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 센터직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가족사업안내 제1권 참조)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 운영비 : 여비(관할센터 현장지원, 거점회의 참석 등),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 적용
 - 시설비 : 자산취득비 등
 - 사업비
 -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 직원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나.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거점센터의 장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1월 10일, 연간 사업결과보고서(국고보조금 정산서 포함)를 2월 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 각 시·도는 거점센터의 연간 사업결과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
- 관할 지역센터 현장지원 등 지원 중 부정, 비리 확인 시 즉시 시·도 보고(시·도 → 성평등가족부 보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
2. 기초학습지원
(구. 취학준비 학습지원(다배움))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신청기간 5.1 ~ 5.30. 7.1 ~ 7.31	신청기간 6.1 ~ 6.30
	우선 선정 대상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가구 자녀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우선 선정 대상 기준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교실 등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녀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1

진로설계지원 (구.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다채움))

가 목 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기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취업을 지원

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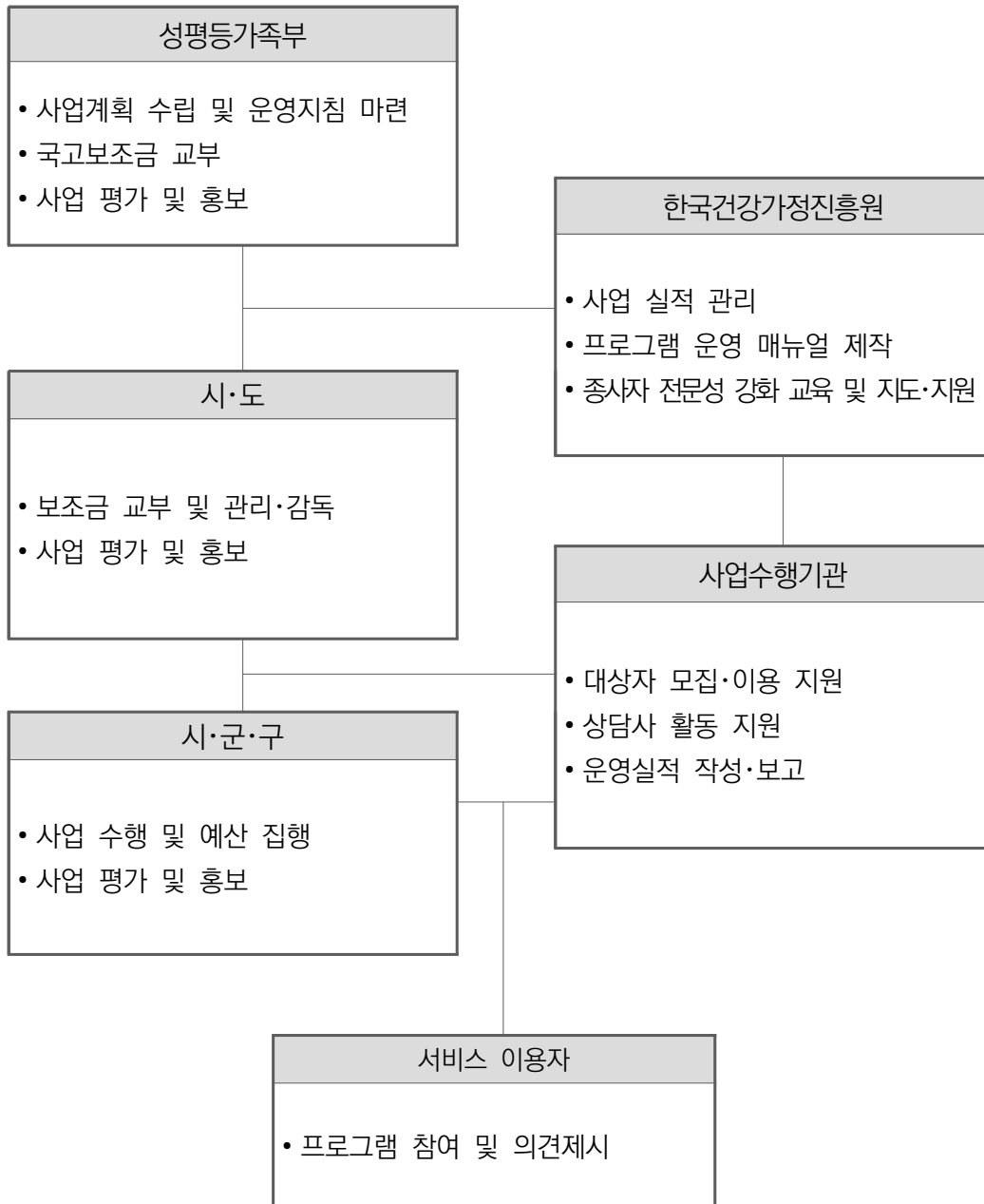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추진 연혁

- 진로설계지원 운영 시작('22년, 78개소)
- 진로설계지원 운영 확대('23년 113개소 → '25년~ 135개소)

[표] 사업운영추진체계



마 사업 인력

○ 채용 및 복무

- 자격기준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③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④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⑤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채용 응모자가 없을 경우(1회 이상 공개 경쟁모집), 청소년 상담분야 학위 및 실무경력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 가능

- 채용 절차 및 복무 등 : 센터 직원 기준에 준함

※ 「가족사업안내 I 권」-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참조

○ 직무교육

- 2026년 센터 직원교육 지침을 따름

※ 「가족사업안내 I 권」-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 마. 센터 직원교육 참조

※ 신규종사자 대상 사업이해교육 필수 수강 권장

바 사업 운영

○ 사업 대상 : 다문화 아동·청소년(7세 ~ 24세)

- ※ 다문화 아동·청소년 :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에 포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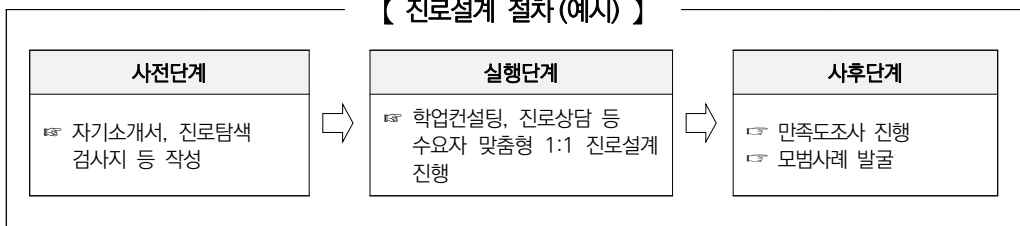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중도입국자녀

○ 사업 내용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설계 지원(대상자 별 연 4회 이상 권장)
- ※ 심리 상담과정에서 컨설팅 연계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더라도 컨설팅 연계 필요가 있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 4회 이상 서비스 제공

【 진로설계 절차(예시) 】



-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로지원 프로그램 적극 운영
- ※ 기존 운영 센터가 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경우,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인건비를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 등과 협업하여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며, 비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한국장학재단 연계 멘토링 사업 활용(실적인정) 및 운영비 집행 가능

○ 추진 절차(지역상황 고려, 변경가능)

① 계획수립

- 지역별 이용자(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특성 파악
- 수요자 요구 분석
- 사업 운영계획 수립

②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지역 내 유관기관(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기타 다양한 홍보 매체(지역신문, 포스터, 온라인 카페 등)를 활용

③ 상담진행 및 진로·취업 연계

- 학교생활, 가정 내 문제, 진로·취업 문제 등 대상자가 겪는 어려움, 욕구 등 상담
- 진로·취업 연계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진로설계
 - ※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더라도 컨설팅 연계 필요가 있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 4회 이상 서비스 제공가능
- 상담 진행과정에서 기타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필요시 지원

④ 사후 관리

- 상담 종결 이후, 내담자의 동의 하에 상담 결과 모니터링

⑤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실적 관리 및 내담자 별 상담과정 기록지 관리 등
 - ※ 진로설계지원(구.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업무가이드 참조

아 예산 지원

○ 개소별 49,250천원(전담인력 2명 배치되는 경우 98,500천원)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평택 70%)

○ 예산 편성 및 집행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및 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름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직접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간 전용가능

자 실적 관리

- 월별 실적(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사업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 부서에 제출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서면	서식1 참조
	시·군·구	시·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서면	서식2 참조
	시·군·구	시·도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직원관리)	사업수행기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변동 후 10일 이내 (분기별 취합)	시스템 상 입력 및 서식3 참조	
월간사업실적			매월 5일까지		

서 식

차례

서식 1	사업계획서	271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274
서식 3	사업실적(양식)	276
서식 4	상담과정 기록지	277

[서식 1]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시설 명칭	
주 소	
운영 기간	20 . . . ~ . . .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 ○
20○○년 주요사업계획	○

2. 세부 추진계획

☐ 인력 운용

○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비 고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 운영

○

○

☐ 기타(목표인원 등)

○

○

3.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 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예산 사용 계획(예시)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역	합계	국비	지방비	자체 부담
총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운영비						
	소계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1. 결과 요약

사업수행기관			
집행액/사업비	총 (집행액) / (예산액) 천원	국고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지자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자부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2.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인원(연인원)

○ 목표 달성 여부 :

○ 전년 대비 증감 :

이용인원					
계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19세~24세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교육 운영

☐

☐

☐ 기타

☐

☐

3. 사업 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4. 증빙 자료 : 별도 첨부

[서식 3]

[]월 사업 실적

1. 사업수행기관 :

○ 시설현황

연번	지자체	시설명	주 소	운영시간	면적 (제곱미터)	개소 일시
				시 ~ 시		

2. 이용 현황

○ 상담 인원(연인원)

연번	시설명	이 용 인 원					
		계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19~24세

○ 진로설계 지원 인원(연인원)

연번	시설명	이 용 인 원					
		계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19~24세

[서식 4]

상담과정 기록지

[illegible]

2

기초학습지원 (구. 취학준비 학습지원 (다배움))

가 목 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취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등 도모

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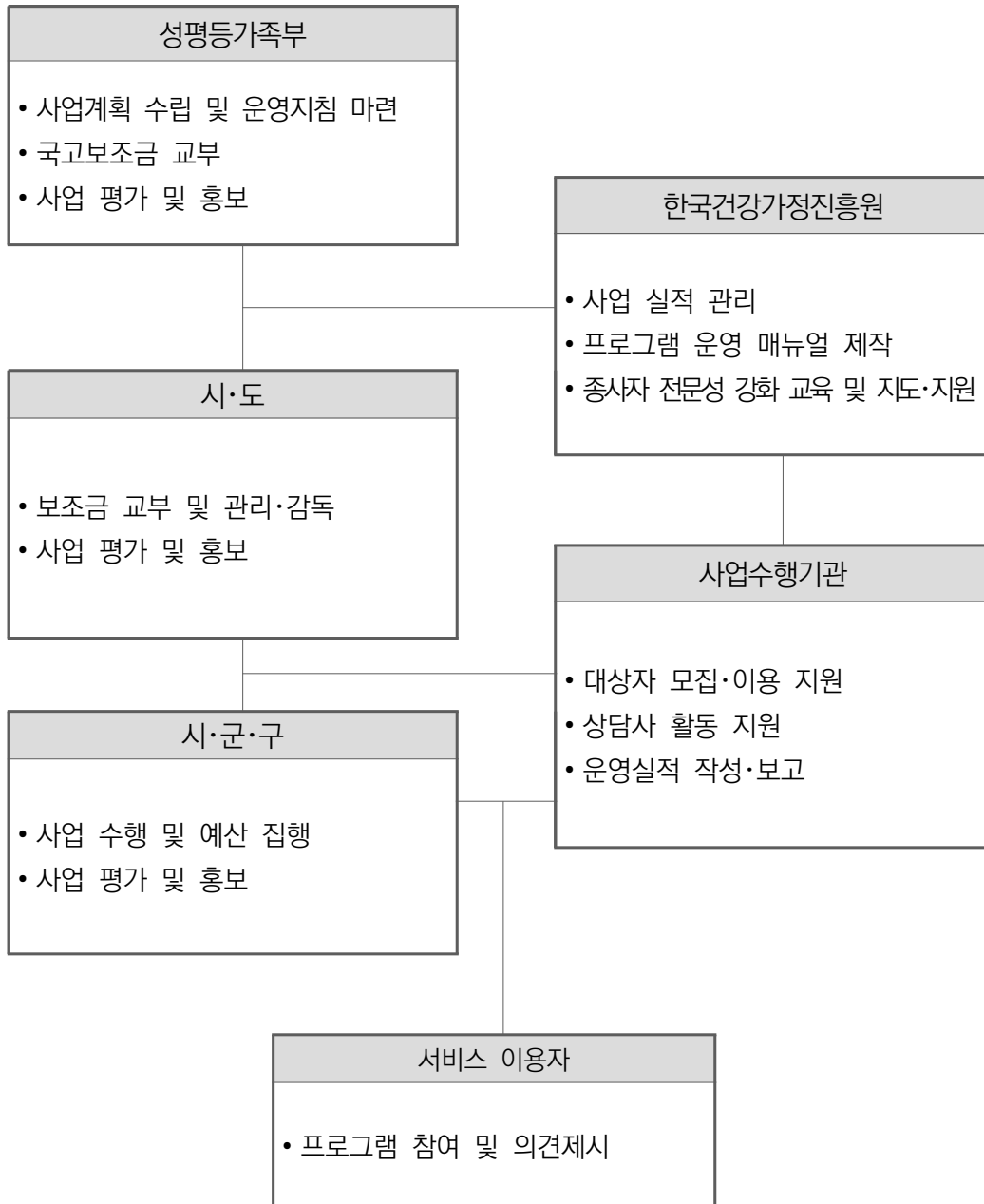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추진 연혁

- 기초학습지원 사업 운영 시작('22년, 90개소)
- 기초학습지원 사업 운영 확대('23년 138개소 → '25년~ 183개소)

[표] 사업운영추진체계



마 사업 인력

○ 채용 및 복무

- 자격기준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채용 응모자가 없을 경우(1회 이상 공개 경쟁모집), 초등·유아 교육분야 학위 및 실무경력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 가능

- 채용 절차 및 복무 등 : 센터 직원(팀원) 기준에 준함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종사자관리」 참조

○ 직무교육

- 2026년 센터 직원교육 지침을 따름

※ 「가족사업안내 I 권」 -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 마. 센터직원교육 참조

※ 신규종사자 대상 사업이해교육 필수 수강 권장

바 사업 운영

○ 사업 대상 :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 다문화 아동 :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중도입국자녀

○ 사업 내용

- 취학 전·초등학교 대상 읽기·쓰기, 셈하기, 독서토론 등 기초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업무 가이드' 참고하여 운영 가능

- ▶ 프로그램 운영방식(예시) : 1회기(6개월) 당 3~10명 교육 진행
 ① 월, 수, 금 프로그램 운영 : 기초 한글 프로그램, 00시 ~ 00시, 000명 운영
 ② 화, 목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산수 프로그램, 00시 ~ 00시, 000명 운영
 ※ 지역, 센터 상황을 고려한 회기, 수업방식·인원·빈도, 교재 등 운영가능

- 고학년 기초학습지원의 경우 온라인교육 콘텐츠(경북도 기초학습(고학년) 콘텐츠 활용가능)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 운영 가능
 - 필요시,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강사비·사업비 등으로 집행 가능
 -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업무 가이드' 참고하여 필수 운영 회기 이상 편성
 - 다문화가족 취학 전·후 대상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 과정 등 안내
 -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 추진 절차(지역상황 고려, 변경가능)
- ① 계획수립
 - 지역별 이용자(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의 특성 파악
 - 수요자 요구 분석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②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지역 내 유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센터 내방 회원 대상 사업 홍보
 - 기타 다양한 홍보 매체(지역신문, 포스터, 온라인 카페 등)를 활용
 - ③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대상자 초기 상담 진행 및 프로그램 안내
 - 대상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초기 상담·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기타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필요시 지원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또는 외부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기타 교육이 가능한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
 - ④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실적 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자 별 학습과정 기록지 관리 등

사 예산 지원

- 개소 별 55,750천원(기초학습 물량×개소 별 단가로 산출)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평택 70%)
- 예산 편성 및 집행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및 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름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직접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간 전용가능

자 실적 관리

- 월별 실적(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사업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부서에 제출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당해 연도 1월 5일까지	서면	서식1 참조
	시·군·구	시·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익년도 1월말일까지	서면	서식2 참조
	시·군·구	시·도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말일까지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직원관리)	사업수행기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변동 후 10일 이내 (분기별 취합)	시스템 상 입력 및 서식3 참조	
월간사업실적			매월 5일까지		



서 식

차례

서식 1	사업계획서	287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290
서식 3	사업실적(양식)	292
서식 4	학습관리 기록지	293

[서식 1]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시설 명칭	
주 소	
운영 기간	20 . . . ~ . . .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 ○
20○○년 주요사업계획	○

2. 세부 추진계획

☐ 인력 운용

○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비 고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 운영

○

○

☐ 기타(목표인원 등)

○

○

3.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 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예산 사용 계획(예시)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역	합계	국비	지방비	자체 부담
총계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1. 결과 요약

사업수행기관			
집행액/사업비	총 (집행액) / (예산액) 천원	국고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지자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자부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2.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인원(연인원)

○ 목표 달성 여부 :

○ 전년 대비 증감 :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교육 운영

☐

☐

☐ 기타

☐

☐

3. 사업 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4. 증빙 자료 : 별도 첨부

[서식 3]

[]월 사업 실적

1. 사업수행기관 :

○ 시설현황

연번	지자체	시설명	주 소	운영시간	면적 (제곱미터)	개소 일시
				시 ~ 시		

2. 이용 현황

○ 프로그램 이용인원 (연인원)

연번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이용인원

[서식 4]

학습관리 기록지

담당자	성 명			연계일자		
대상자	성 명		나이		성별	남 여
	핸드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년/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연락처1			연락처2		
연계 현황	수업현황	☐ 문해 영역(그룹명 : 시작일 :) ☐ 수리 영역(그룹명 : 시작일 :) ☐ 기타 (그룹명 : 시작일 :)				
	센터 내 프로그램					
	기타					
초기 상담결과	학습적 측면 (인지)					
	비학습적 측면 (정서, 환경)					
학습 진행 정도						
구분	주요 학습 내용			학습 태도(출석율, 수업 태도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동상담 결과		
일시	주요상담 내용	
부모상담 결과		
일시	주요상담 내용	
향후 학습 계획		
일시	학습 계획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가 목 적

-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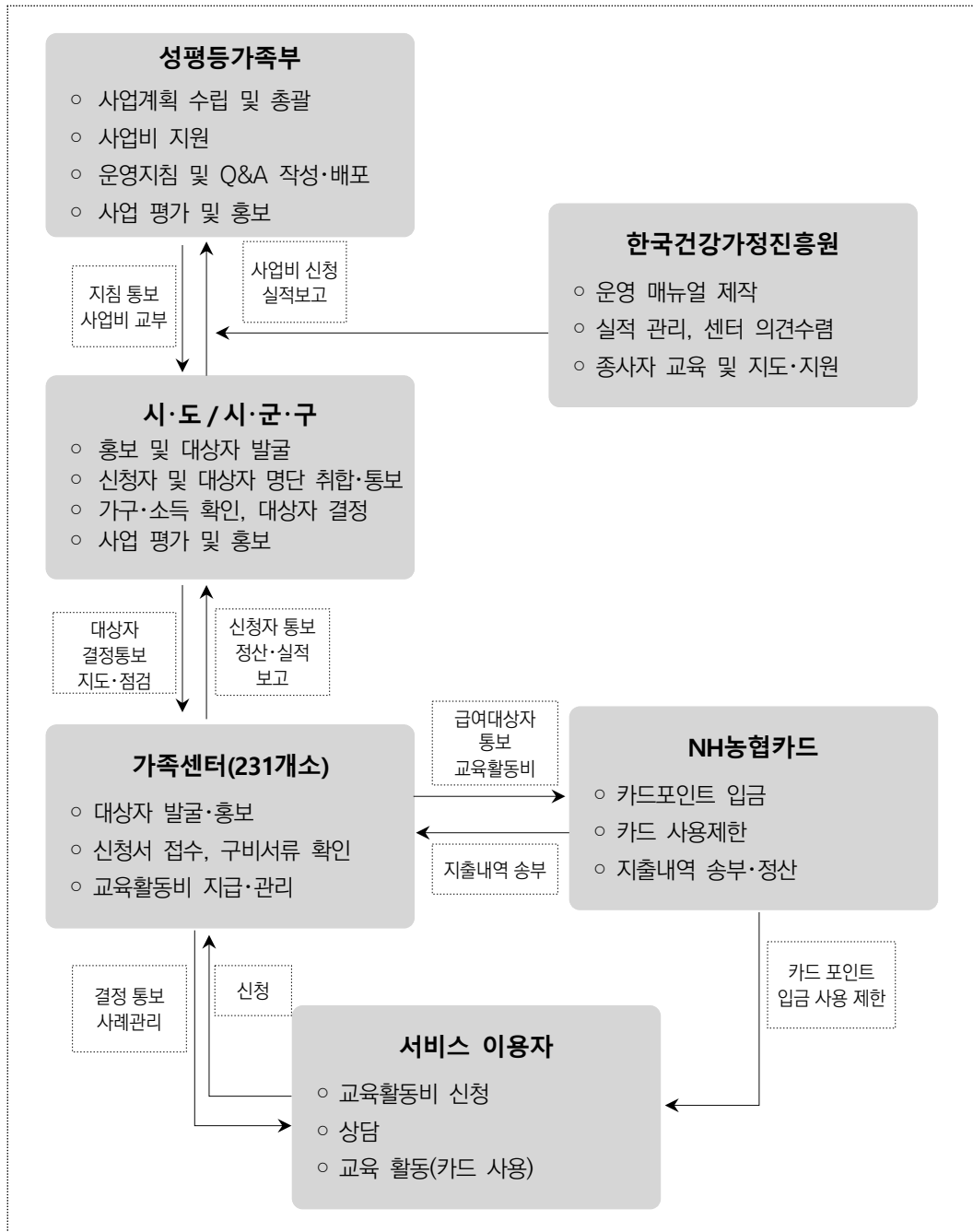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추진 연혁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운영('24년)

[표] 사업운영추진체계



마 사업 인력

○ 채용 및 복무

- 자격기준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채용 응모자가 없을 경우(1회 이상 공개 경쟁모집), 사회복지분야 학위 및 실무경력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 가능

- 채용 절차 : 단년도 계약 추진

※ 필요 시, 기존인력 재계약 가능(재계약 ~ 2026.12.31.)

※ 기존 인력 활용하여 사업수행 가능, 배정된 전담인력 예산은 교육활동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운영비, 사업비로 활용 가능

- 복무 등 : 센터 직원(팀원) 기준에 준함

※ 「가족사업안내 I 권」 -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참조

○ 직무교육

- 2026년 센터 직원교육 지침을 따름

※ 「가족사업안내 I 권」 - I. 센터공통적용사항 - 2. 센터종사자관리 - 마. 센터직원교육 참조

※ 신규종사자 대상 사업이해교육 필수 수강 권장

바 사업 운영

- 사업 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선정 대상 *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교실 등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녀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 신청자가 예산범위 보다 많을 시 적용

○ 사업 내용

- 지원내용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비교육적 품목 제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

* 유희·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 7세~12세(초등) 연 400천원, 13세~15세(중등) 연 500천원, 16세~18세(고등) 연 600천원

- 일부 학령에서 신청자가 배정 예산인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남은 예산은 초과된 학령으로 활용 가능

※ 예시 : 고등학교 배정예산 10명분이나, 6명만 신청 받았을 경우 4명분의 예산은 초등, 중등 예산으로 집행 가능

○ 추진 절차(지역상황 고려, 변경가능)

① 계획수립

- 지역별 대상자 인원 파악
- 사업 운영계획 수립[서식1]

②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지역 내 유관기관(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기타 다양한 홍보 매체(온라인 카페, 지역신문, 포스터 등) 활용

③ 신청접수(가족센터) 및 대상자 확인(시·군·구)

- 신청 서류 접수 및 대상자 확인

④ 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상담 진행(가족센터)

- 대상자 선정 후 통보 및 대상자가 겪는 어려움, 진학 및 진로 계획 등 상담
- ※ 상담 진행과정에서 기타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필요시 지원

⑤ 교육활동비 지출

- 지출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및 청구 금액 지출 등

⑥ 사업실적 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서식참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

계획수립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신청·접수	수급자 선정 및 통보	수급자 관리, 교육활동 실시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역별 대상자 인원 파악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구비서류 확인 - 관리대장 작성 - 신청서류 등 해당 시군구로 이송 (관리대장 포함)	- 가구소득 확인 - 수급자 결정 - 수급자 명단 통보 (시군구 → 시도 → 성평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가족센터)	- 상담 및 센터 사업 연계 - 수급자 정보제공 - 카드 지출내역 관리 - 교육활동비 카드 포인트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실적관리
시·군·구	시·군·구, 가족센터	가족센터	시·군·구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카드사	시·군·구, 가족센터

사 예산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38,180천원 이내로 편성

○ 초등 연 400천원, 중등 연 500천원, 고등 연 600천원 으로 편성 및

- 지역별 학령 배정인원은 시·도, 시·군·구에서 센터 등으로 안내 필요

*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직접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간 전용가능

〈 지급절차 〉

신청·접수 (6월)	⇒	① 수급자 명단 카드사 송부 (8월)	⇒	② 카드포인트 선지급 (8월)	⇒	③ 교육활동비 사용 (~11월)	⇒	④ 카드사 청구 (12월초)	⇒	⑤ 가족센터 지급결의 (12월말)
신청접수 (가족센터), 대상자 결정* (시·군·구) * 교육급여 중복 수급자 제외 (시군구)		수급자명단 송부 (성평등가족부 → 카드사)		대상자의 카드에 카드포인트 선지급		수급자별 서점, 독서실 등 이용		가족센터별 카드 사용내역 송부		12월 중 지급결의 및 예산 소진
* 가족센터, 시·군·구 사업팀		성평등가족부		카드사		수급자		카드사		가족센터

자 실적 관리

- 월별 실적(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사업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부서에 제출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당해 연도 1월 5일까지	서면	서식1 참조
	시·군·구	시·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서면	서식2 참조
	시·군·구	시·도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도	성평등가족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직원관리)	사업수행기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변동 후 10일 이내 (분기별 취합)	시스템상 입력 및 서식3 참조	
월간사업실적			매월 5일까지		



서 식

차례

서식 1	사업계획서	307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310
서식 3	사업실적(양식)	312

[서식 1]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시설 명칭	
주 소	
운영 기간	20 . . . ~ . . .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 ○
20○○년 주요사업계획	○

2. 세부 추진계획

☐ 인력 운용

○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비 고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 운영

○

○

☐ 기타(목표인원 등)

○

○

3.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 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예산 사용 계획(예시)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역	합계	국비	지방비	자체 부담
총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 운영비					
	소계				
교육활동비	7세~12세				
	13세~15세				
	16세~18세				
	소계				

[서식 2]

사업결과보고서

1. 결과 요약

사업수행기관			
집행액/사업비	총 (집행액) / (예산액) 천원	국고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지자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자부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2.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인원(연인원)

○ 목표 달성 여부 :

☐ 모집·홍보

○

○

☐ 기타

☐

☐

3. 사업 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4. 증빙 자료 : 별도 첨부

[서식 3]

[]월 사업 실적

1. 사업수행기관 :

○ 시설현황

연번	지자체	시설명	주 소	운영시간	면적 (제곱미터)	개소 일시
				시 ~ 시		

2. 지원 현황

○ 지원인원(실인원)

(단위 : 명)

합계	7세~12세(초등)	13세~15세(중등)	16세~18세(고등)

3.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	지자체	자부담
사업예산(A)			
집행액(B)			
비율(B/A×100)			

4. 기타 운영실적 등

○ 홍보 등 기타 사업연계 실적

XI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1.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개요
3.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운영
4. 전담 인력 채용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구분	내 용	2025년도	2026년도
결혼 이민자 직업 교육 훈련 사업	지원 유형	○ 가족센터 주도형 ○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주도형 ○ 가족센터-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협력형	○ (가)형 : 가족센터 단독형 ○ (나)형 :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협업형 *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직훈 전문기관 등
	사전교육	○ 지원규모 : 1개 과정 당 최소 8인 이상 모집 후 과정 설계	○ 지원규모 : 1개 과정 당 최소 15인 이상 모집 후 과정 설계
	만족도 조사	(신설)	○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실시 : 각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 평가지표	(신설)	○ 2025년 사업 평가지표
	서식	서식1~4.	서식1~4. 수정

2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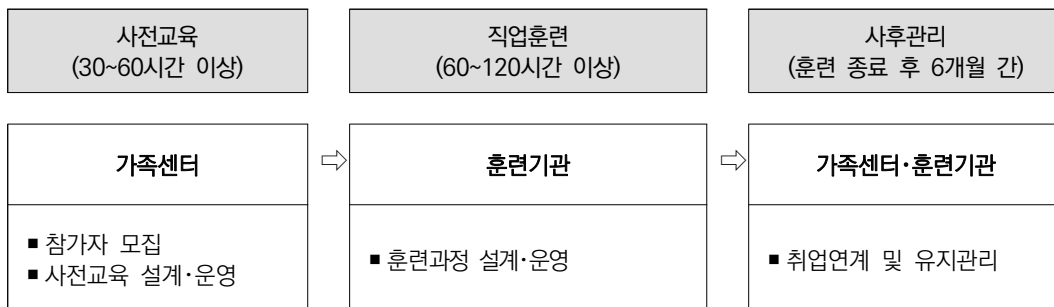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도모

나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및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다 지원내용

- 가족센터가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직업 사전교육(한국어, 직업 소양, 컴퓨터 등)을 실시하고,
-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라 직업훈련기관 선정

- 선정 주체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 기관
- 선정 방식
 - 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외의 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모를 통해 계약체결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약 체결(최대 10개월)
- 수탁 자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공공직업훈련시설, 제28조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선정 기준
 - 2026년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상 새일센터 지정 기관 심사 기준 준용(단, 종사자관리 가점 항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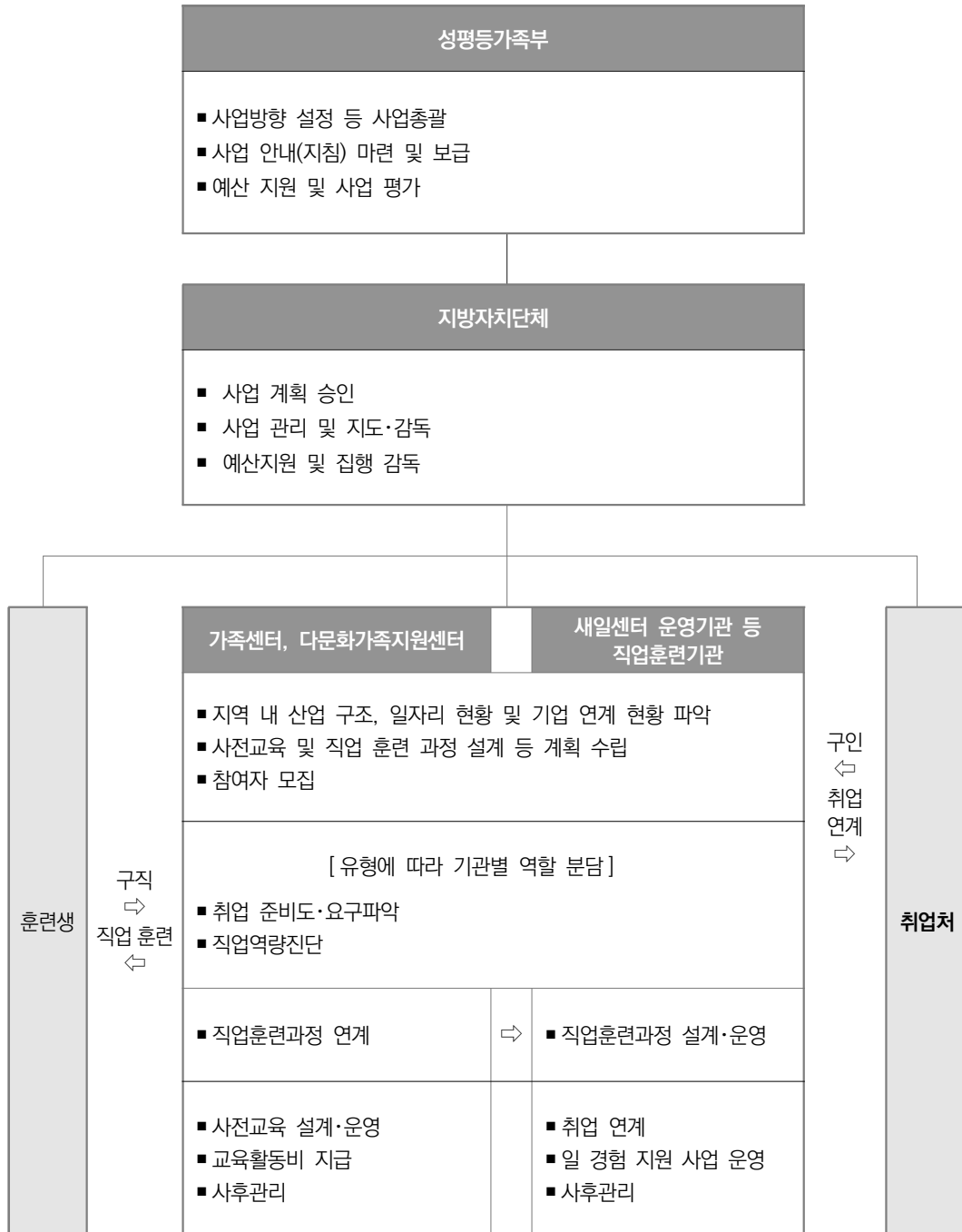
연번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평가지표
1	운영기관 평가	운영기관의 적절성	10	○ 기관의 설립유형(법인, 단체, 기타) 및 제정여건 등
		시설여건의 적정성	15	○ 상담실, 강의실, 회의실, 냉난방, 조명, 방음, 환기 시설 등 구비
		여성인력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5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2	사업계획 운영	사업계획 전반	20	○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홍보계획	10	○ 구직자/구인업체 정보제공 방법, 구인업체 발굴방법, 교육훈련생 모집계획 등
		직업교육훈련	15	○ 직업교육과정의 타당성, 훈련내용의 취업 연계성, 훈련과정의 지역 적합성, 타 직업훈련 기관과의 차별적인 과정운영 여부 등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15	○ 일·가정양립지원, 취업 후 직장갈등 해소, 여성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

마 지원 유형

유형	구 분	역 할	
		가족센터	직업훈련기관
(가)형	가족센터 단독형	①지역내 일자리 수요파악, 네트워킹 ②계획수립 ③참여자 모집 ④취업 준비도·요구파악 ⑤직업역량진단 ⑥사전교육 설계·운영 ⑦직업훈련과정 연계 ⑧교육활동비 지급 ⑨사후 관리 ⑩사업 전체 결과보고	①계획수립 ②직업훈련과정 설계·운영 ③취업 연계 ※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과정 설계·운영 가능
(나)형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협업형 *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직훈 전문기관 등	①계획수립 ②참여자 모집 ③사전교육 설계·운영 ④직업훈련과정 연계 ⑤교육활동비 지급 ⑥사업 전체 결과보고	①지역내 일자리 수요파악, 네트워킹 ②계획수립 ③취업준비도·요구파악 ④직업역량진단 ⑤직업훈련과정 설계·운영 ⑥취업 연계 ⑦사후 관리

※ 새일센터 운영기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이 아닌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전담인력 채용 불가

바 추진 체계



3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사업 운영

가 유관기관·기업체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산업별 인력·훈련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협력 등을 위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운영
 - ※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대체인력뱅크 등
- 기업체(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인사 담당자, 중간 관리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 연계 및 직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등 논의

나 사업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가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훈련 과정 설계 (사전교육 + 직업훈련교육)
- 훈련 과정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지역 내 산업 구조, 기업 연계 현황 등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과정 설계
 - 가족센터, 새일센터 등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강점을 살려 장기적 경력 개발이 가능한 직종 개발
 - 결혼이민자가 훈련과정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육아 시설 등 자원 파악

다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모집 대상 : 취업(이직 포함)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모집 홍보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 주민센터 및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라 맞춤형 과정설계

- 수요자 특성 조사 실시
 - 취업 준비도 및 요구 파악
 - [붙임1] 결혼이민자 취업준비도 및 요구 설문지 활용
 - 직무 역량 진단 : 국가직무능력표준(<https://www.ncs.go.kr>) > NCS 통합 > NCS 활용 > 직무능력 진단 활용
-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직업훈련 과정 설계

마 사전교육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규모 : 1개 과정 당 최소 15인 이상 모집 후 과정 설계
 - 지원내역 : 인건비, 사전교육 운영비(강사료, 운영비 등), 교육활동비

□ 교육운영

- 교육일정·시간
 - (일정) 30~60시간 이상(1~3개월 교육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편성)
 - (시간) 훈련시간은 1일 최소 2시간 이상 운영
- 교육내용
 - 초기상담을 통해 취업준비도, 취업 요구, 적성, 경력개발 욕구를 파악하여 사전교육 내용 설계
 - 취업 희망 직종·직무 관련 한국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및 한국 직장 문화 이해 교육, 이미지 메이킹 및 취업 기관 견학 등 실시
 - 취업 희망 직종·직무 관련 자격증 과정 운영 등

□ 직업훈련과정 연계

- 사전교육 과정 종료 후 직업훈련과정으로 연계
 - 단, 참여자의 개인별 역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각각 분리 운영 가능
- 직업훈련 기관(모법인·단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 교부 및 집행

바 직업훈련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와 협업하는 직업훈련기관
 - ※ 가족센터 단독형의 경우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과정 설계·운영 가능
- 지원내역 : 인건비, 직업훈련교육 운영비(강사료, 운영비 등), 교육활동비

□ 교육운영

- 교육일정·시간
 - (일정) 60~120시간 이상(2~5개월) 교육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편성
 - (시간) 훈련시간은 1일 최소 2시간 이상 운영

○ 교육내용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 가족센터의 취업 사전교육 이수자를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계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구 분	세부 내용			
(가)형	■ (일반과정)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회계 및 교육 분야 등 구인수요 및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인력양성과정 ■ (창업과정) 온·오프라인 등 실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설계·운영 ■ (자격증과정) 하단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나)형	구분	자격 종류	세부 내용	자격 예시
	국가 자격	국가자격 (205개)	「70개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국가기술자격 (543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는 자격	건축사공기기술사, 압연기능장, 정보처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용접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97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자격	TEPS영어능력검정, 리눅스마스터,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재경관리사 등
		등록민간자격 (58,199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결혼상담사, 요가지도사 등
■ (일 경험 지원) 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 대상 일 경험 지원금(월 80만, 3개월) 지급				

〈 직업훈련 내용 예시('25년 기준) 〉

가족센터 주도형

- (영등포구가족센터) 사법통번역·무역실무사 양성과정(일반)
-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자격증)
- (미추홀구가족센터) 글로벌셀러 교육(창업)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연계형

- (제주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일반)
- (광주북구가족센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자격증)
- (강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창업과정(창업)

기타 직업훈련기관 연계형

- (울산북구가족센터) 자동차 시트 봉제전문가 양성과정(일반)
- (인천중구가족센터)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과정(자격증)

□ 실적관리

- 직업훈련 강의계획서, 교육일정, 강사명, 참여 인원 등 관리
- 직업훈련 과정 완료 1개월 이내에 출석부 사본 및 교육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

사 일 경험 지원

□ 추진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사업 대상 :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채용한 기업

□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3개월(2026년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지원 기준 : 1인 총액 24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 일 경험 근무 조건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또는 시간제(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지원금 지급 방식 : 매 월 근무 종료 후 기업에 일 경험 지원금 지급
(2026년 12월까지 지원금 지급 종료)

구분	일 경험 지원금 (근무기간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개인	-	-	-

□ 진행 상황 점검

- (상시 모니터링) 직장부적응 등 징후 수시 확인(월 1회 이상), 개입
- (현장 지도·점검)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기업 제공 사항 점검, 근무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 근로 보호,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 지원 등

아 교육활동비 지급

- 수행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급 내용 : 훈련시간 40시간 기준, 10만원(교통비 + 식비) 지급
 - (사전교육기간) 교육활동비 지급 단위시간(40시간)의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직업훈련기간) 교육활동비 지급 단위시간(40시간)의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 ※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월별 출석부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
 - ※ 사전교육기간 잔여시간에 직업훈련기간의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 가능
(지급단위시간 출석률은 80%로 동일)

자 실적 및 사후관리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취업률로 산정
 -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
 - ※ 이·전직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은 수료자의 경우 사후관리 시 이·전직 현황 확인 필요
 - 월별 사후관리 결과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출
 - 출결관리 : 2026년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상 훈련생 출결 관리 준용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훈련생 출결 관리를 수시 감독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보며,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 참여가 1일 훈련 시간의 50% 미만인 경우 결석 처리
 - 훈련생이 다음의 사유에 의해 결석한 경우는 출석 인정 일수에 따라 훈련받은 것으로 처리
- 다만,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산입하지 아니함
- ※ 대체훈련생*의 경우 잔여 수업일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의 병결을 출석으로 인정
(진단서 확인 범위 내에서 인정).

* 대체 훈련생 : 훈련일수의 20% 미만을 출석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 교육 훈련생에 대한 추가 선발에 따른 교육 훈련생

[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시험	○ 취·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자격기본법」 상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 기업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국내 기능경기대회(숙련기술장려법)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소요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2
출산	자녀	2
질병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의 질병 및 입원 (단,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 하여야 함. 출석 인정 일수는 총 훈련일수의 10%에 해당 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기타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 직업교육훈련(단, 월 30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철저한 출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단,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비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 증명서를 확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별표 제36호 서식]

-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실시 : 각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조사 실시

차 사업 평가지표

○ 2025년 평가지표

연번	성과지표 (지표 배점)	'25년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세부 지표 및 산출방법	배점
1	직업훈련 교육과정 참여율 및 수료율 (20점)	80	'24년 실적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80%로 산정	• (참여율) 과정별 계획 인원(15명 내외) 대비 훈련 참여자 수 비율 ※ 과정 이수 중 중도 포기(이탈) 여부 무관	10
		80	'24년 수료율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80%로 산정 * 교육과정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 (사전교육과정 수료율) - 사전교육 이수자 수 / 사전교육과정 참여자 수 • (직업훈련과정 수료율) - 직업훈련 이수자 수 / 직훈교육과정 참여자 수	10
2	직업훈련 이수자 취업 성과 (25점)	30	가족센터 자체 기술훈련 성과 등을 참조하여 성과지표 30%로 설정	• 취업률①+창업률②+자격증취득율③ - 3개 지표별 성과 합산 ① 취업자 수 / 직훈 전 과정 이수자 수 ② 창업자 수 / 창업 과정 이수자 수 ③ 자격증 취득자 수 / 자격증취득 과정 이수자 수	15
		10	'24년도 취업률(20%) 등을 감안하여 경력개발지원율을 10%로 설정	• 경력개발지원율 (유관기관 연계율) - 직훈과정 수료 후, 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율 *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 인턴 등), 고용센터(내일배움카드 등), 지자체일자리(센터)사업, 폴리텍 등	10
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25점)	10	'24년 실적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10건으로 산정	• 새일센터와 협력 일자리 연계 건 수 -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 통한 일자리 연계 건 수	15
		10	'24년 실적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10건으로 산정	• 지역사회 유관 기관 협력 일자리 연계 건 수 - 지역내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협동조합, 단체 등과 협업 통한 일자리 연계 건 수	10
4	직업훈련 교육과정 참여자 만족도 (10점)	88	'24년 목표치(85점) 등을 고려하여 88점으로 설정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점수 종합 집계 * 참여자 대상 취·창업 도움 및 정보(기술)유용 등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10
5	사후관리 (20점)	10	'25년 신규 지표인 점 등을 고려해 목표치 10점으로 설정	• 고용유지율 -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 인원 비율	20
6	가 점 (5점)	5	우수사례	• 우수사례 제출 건 수(1점/건) - 센터별 특화 운영 사례 등	5

※ 2026년 평가지표는 2026년에 검토

4

전담 인력 채용

□ 자격기준 :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채용기간 : 채용 후 6~12개월

※ 필요시, 기존인력 재계약 가능(재계약일 ~ '26.12.31.)

□ 인건비 지급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인건비(전담인력) 구분 없이 집행 가능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모법인과 계약 체결 및 교부) 대상 직업훈련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및 정산
 - 직업훈련기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인건비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교부
 - ※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과 협업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 ※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는 경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채용(가족센터 주도형)하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비를 직접 집행
 - 기타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수용비 비목(소규모 위탁 사례비)으로 교부
 - ※ 기타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직업훈련기관에 예산 교부 시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월별 집행하되, 직업 훈련기관에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교부의 경우에는 정산 후 잔금 지급

나 직업훈련기관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 새일센터 운영기관과 협업 시, 훈련과정 예산은 새일센터의 편성·집행기준 준용 가능
-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정산

[기본 사항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출 신 국				입국일자			
국적취득	☐ 취득 ☐ 미취득 ☐ 영주권			연 락 처			
주 소							
가족사항	관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기타사항		
학력/전공 (출신국 포함)				자격면허 (출신국 포함)	1		
					2		
					3		
언어능력	1. 한국어	말하기	☐ 상 ☐ 중 ☐ 하	듣기	☐ 상 ☐ 중 ☐ 하	쓰기	☐ 상 ☐ 중 ☐ 하
	2. 영어	☐ 상 ☐ 중 ☐ 하		3. ()어	☐ 상 ☐ 중 ☐ 하		
경 력	근무처	업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월임금(보수)	
출신국 경력							
한국 경력							
증명가능여부		(학력, 자격, 경력 증명서) ☐ 발급가능 ☐ 발급불가능					
운전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취업기관 이용 경험여부	☐ 구직활동 ☐ 취업(집단)상담 ☐ 취업성공패키지 ☐ 기타() ☐ 기술교육(내용 :)						
	이용기관	☐ 워크넷 ☐ 고용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타()					



서 식

차례

서식 1	사업계획서(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용, 사업종합계획)	335
서식 2	사업계획서(직업훈련기관용, 직업훈련프로그램)	341
서식 3	사업결과보고서(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용, 사업종합결과)	348
서식 4	사업결과보고서(직업훈련기관용, 직업훈련프로그램)	353
서식 5	사업비 정산보고서	356
서식 6	만족도 조사	358
붙임 1	결혼이민자 취업준비도 조사 설문지	359

I. 사업개요

센터명						
사업기간	. . . ~ . . . (개월, 일)					
과정 개요	구분	일정	교육시간			
	사전교육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직업훈련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직업훈련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추진배경	•					
교육목적	•					
직업훈련 연계유형	가. 가족센터 단독형 ()		나.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협업형 ()			
직업훈련기관 선정 계획	•					
교육대상	• ※ 대상의 유형, 연령대, 특정 자격자(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자 등) 등 해당 과정의 대상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교육내용	• 사전교육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 직업훈련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직업훈련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직종선정 타당성 및 구인·구직 수요조사 결과	※ 직업교육훈련 기획 시 반드시 구인·구직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편성 - 지역경제과 관련 자료 활용, SC·RC 관련 데이터 활용(구인 훈련 수요 등), 인근 기업 대상 훈련수요 파악(전화·면접·설문 등), 기업간담회(회의록) 등 - 수요조사 자료 별첨					
일자리 협력망	일자리 협력망 구성운영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분야	비고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지자체					
	취업알선기관					
	고용지원센터					
기업 맞춤형 연계	주요 취업 연계 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업태/종목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시기	비고	
기대효과						

II. 세부계획

☐ 인력 운용

-
-
-

구 분	성 명	부 서	직 위	비 고

☐ 직업훈련기관 선정

-
-
-

☐ 모집·홍보

-
-
-

Ⅲ. 사전교육 세부 계획

-
-
-

회차	일자	강의과목	강의시수(시간)				편성시간		강사 (소속, 직위)
			이론	실습	현장실습	현장견학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IV. 사전교육 시설, 장비, 기자재 현황

○ 훈련과정 운영 장소 및 장비 현황

《장소 1》

사진	강의장/실습장명		
	소재지		
	활용 용도		
	면적(㎡)		㎡
	수용가능인원		
	1인당 이용면적 (=총면적/교육인원)		
장비·기자재	보유 수량	사양	제조일자

《장소 2》

사진	강의장/실습장명		
	소재지		
	활용 용도		
	면적(㎡)		㎡
	수용가능인원		
	1인당 이용면적 (=총면적/교육인원)		
장비·기자재	보유 수량	사양	제조일자

V. 소요예산

□ 예산 사용계획

(단위 : 원)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부 지원금
					시·도	시군구		
총계								
인건비	소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후생 경비							
운영비	소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사업비	소계							
	강사료							
	민간경상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							

VI. 사전교육 과정 운영 관리

□ 교육생 모집·선발

- 교육생 모집 전략 및 홍보계획
- 교육생 선발 계획 및 기준 (*선발 기준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관리

- 교육생 학사관리 계획(출석률 관리, 수료 인정 규칙 등)
- 강사 관리 계획
- 교육생 고충사항 관리 방안
- 교육생 모집 등에 있어 지역 인프라 활용 계획

□ 취업지원

- 수료생 취업지원
 - 취업처(구인업체) 발굴 및 기관 협력 방안
 - 경력 개발지원(유관기관·타 취업프로그램 연계) 방안
 - 일자리 연계방안
- ※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 지역 기업, 단체, 조합 연계 등

□ 사후관리

- 교육 종료 후 6개월간 수료생(취업자 포함) 사후관리 방안 및 취업유지율 조사 방안 등

Ⅶ. 직업훈련 과정 관리 : 직업훈련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 직업훈련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

Ⅷ. 추진일정

추진내용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작성, 훈련 종료(수료) 후 사후관리(6개월간) 기간 명시
 (개별 과정에 대한 취업자 산정은 직업훈련 종료(수료) 후 6개월 시점의 취업자까지만 취업률로 반영)

[서식 2] 사업계획서(직업훈련기관용, 직업훈련프로그램)

00000000
(직업훈련기관명)

20○○년도 000000(직업훈련기관명)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과정명						
일정 및 기간	 ~ . . . (개월, 일)	교육 시간	대면	총	시간	
			원격(온라인)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추진배경	•					
교육목적	•					
교육대상	• ※ 대상의 유형, 연령대, 특정 자격자(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자 등) 등 해당 과정의 대상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교육내용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직종선정 타당성 및 구인구직 수요조사 결과	• ※ 직업교육훈련 기획 시 반드시 구인·구직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편성 - 지역경제과 관련 자료 활용, SC·RC 관련 데이터 활용(구인 훈련 수요 등), 인근 기업 대상 훈련수요 파악(전화·면접·설문 등), 기업간담회(회의록) 등 - 수요조사 자료 별첨					
일자리 협력망	• 일자리 협력망 구성운영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분야	비고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지자체					
	취업알선기관					
	고용지원센터 유관기관					
기업 맞춤형 연계	• 주요 취업 연계 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업태/종목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시기	비고	
기대효과	•					

[illegible]

제11장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 343

Ⅲ. 시설, 장비, 기자재 사용 및 구비 계획

○ 훈련과정 운영 장소 및 장비 현황

《장소 1》

사진	강의장/실습장명		
	소재지		
	활용 용도		
	면적(㎡)		㎡
	수용가능인원		
	1인당 이용면적 (=총면적 / 교육인원)		
장비·기자재	보유 수량	사양	제조일자

《장소 2》

사진	강의장/실습장명		
	소재지		
	활용 용도		
	면적(㎡)		㎡
	수용가능인원		
	1인당 이용면적 (=총면적 / 교육인원)		
장비·기자재	보유 수량	사양	제조일자

IV. 소요예산

□ 예산표

(단위 : 원)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부 지원금
					시·도	시군구		
총계								
인건비	소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후생 경비							
운영비	소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사업비	소계							

V.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리

□ 훈련생 모집·선발

- 훈련생 모집 전략 및 홍보계획
- 훈련생 선발 계획 및 기준 (※ 선발 기준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관리

- 훈련생 학사관리 계획(출석률 관리, 수료 인정 규칙 등)
- 훈련강사 관리 계획
- 훈련생 고충사항 관리 방안
- 훈련생 모집 등에 있어 지역 인프라 활용 계획
- 3년 이상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포함 작성

□ 취업지원

- 수료생 취업지원
 - 취업처(구인업체) 발굴 및 기관 협력 방안
 - 경력 개발지원(유관기관·타 취업프로그램 연계) 방안
 - 일자리 연계방안

※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 지역 기업, 단체, 조합 연계 등

□ 사후관리

- 교육 종료 후 6개월간 수료생(취업자 포함) 사후관리 방안 및 취업유지율 조사 방안 등

□ 자체평가 계획

- 평가횟수,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기재

□ 현장실습 계획

- 지침 「새일센터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참조

※ 해당사업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VI. 유사 직종 실적(최근 3년) :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과정 운영 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	교육 과정명	교육 시수	참가자수	수료자수	수료율	취업자수	취업률	상용직 비율	훈련예산 (천원)	시행기관
구분	총 개	총	총	총	(평균) %		(평균) %	(평균) %	총	총 개
2000	000 과정									
	000 과정									
	000 과정									
2000	000 과정									
	000 과정									
	000 과정									
2000	000 과정									
	000 과정									
	000 과정									

Ⅶ. 추진일정

추진내용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작성, 훈련 종료(수료) 후 사후관리(6개월간) 기간 명시
(개별 과정에 대한 취업자 산정은 훈련 종료(수료) 후 6개월 시점의 취업자까지만 취업률로 반영)

사업 결과 보고서(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용)

1. 결과 요약

센터명								
사업기간	. . . ~ . . . (개월, 일)							
추진배경	•							
교육목적	•							
집행액 (단위 : 원)	• 총 (집행액) / (예산액)				국고	(집행액) / (예산액) 천원(%)		
					지자체	(집행액) / (예산액) 천원(%)		
					기타	(집행액) / (예산액) 천원(%)		
과정 개요	구분	일정			교육시간			
	사전교육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직업훈련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직업훈련	. . . ~ . . . (개월 일)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대면) 총 시간 (원격) 총 시간	(합계) 총 시간		
직업훈련 연계유형	가. 가족센터 단독형 ()				나.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협업형 ()			
직업훈련 수행기관	•							
교육대상	• ※ 대상의 유형, 연령대, 특정 자격자(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자 등) 등 해당 과정의 대상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성과	교육 인원	명	수료 인원 (수료율)	명 (%)	취업 인원 (취업률)	명 (%)	만족도	
교육내용	• 사전교육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 직업훈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교과목</th><th rowspan="2">주요내용</th><th colspan="2">편성시간</th></tr> <tr> <th>대면</th><th>원격(온라인)</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 <td colspan="2">총 계</td><td>0</td><td>0</td></tr> </tbody> </table>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 직업훈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교과목</th><th rowspan="2">주요내용</th><th colspan="2">편성시간</th></tr> <tr> <th>대면</th><th>원격(온라인)</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 <td colspan="2">총 계</td><td>0</td><td>0</td></tr> </tbody> </table>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교과목	주요내용			편성시간																																							
		대면	원격(온라인)																																								
총 계		0	0																																								
일자리 협력망	• 일자리 협력망 구성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성명</th><th>소속</th><th>직위</th><th>담당분야</th><th>비고</th></tr> </thead> <tbody> <tr><td>교육훈련기관</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산업체</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지자체</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취업알선기관</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고용지원센터</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유관기관</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분야	비고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지자체						취업알선기관						고용지원센터						유관기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분야	비고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지자체																																											
취업알선기관																																											
고용지원센터																																											
유관기관																																											
기업 맞춤형 연계	• 기업체 연계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체명</th><th>업태/종목</th><th>채용예정인원</th><th>채용예정시기</th><th>비고</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기업체명	업태/종목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시기	비고																																					
기업체명	업태/종목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시기	비고																																							
기대효과	•																																										

2. 사업 결과표

(단위: 명, 건)

연번	① 시도	② 센터명	③ 과정구분	④ 세부구분	⑤ 과정명	교육수행기관		운영결과		수료 결과			취업성과			지역 일자리 연계		⑱ 만족도	⑲ 고용유지인원	⑳ 우수사례(건)
						⑥ 구분	⑦ 명칭	⑧ 목표인원	⑨ 교육인원	⑩ 소계	⑪ 수료	⑫ 중도탈락	⑬ 소계	⑭ 취업	⑮ 기타연계	⑯ 새일센터	⑰ 그 외기관			
1																				

※ 사업결과표 작성 요령

- ①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시·도 입력
- ② 센터명 : 00구 가족센터 혹은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③ 과정구분 : “사전” 또는 “직훈” 입력
- ④ 세부구분 : “일반”, “창업”, “자격증” 중 1개 입력
 - 일반 : 창업과정 및 자격증과정 외 나머지 과정
 - 창업 : 교육과정의 목표가 창업인 과정(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창업 확인)
 - 자격증 : 국가자격(205종), 국가기술자격(543종), 공인민간자격(97종), 등록민간자격(57,621종) 인정
- ⑤ 과정명 :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해외구매대행 글로벌셀러과정 등 과정명 입력
- ⑥ 구분 : “가족센터”, “새일센터”, “그외” 중 1개 입력
- ⑦ 명칭 : 해당 교육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명 입력
- ⑧ 목표인원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했던 숫자
- ⑨ 교육인원 : 해당교육에 참여한 인원(출석 1번 이상 실시한 자)
- ⑩ 소계 : ⑪ 수료 + ⑫ 중도탈락 (소계 = 교육인원)
- ⑪ 수료 :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출석 80% 이상)
 - * 조기취업은 수료로 처리
- ⑫ 중도탈락 : 출석율이 해당 교육과정의 20% 이상 80% 미만인 인원
- ⑬ 소계 : ⑭ 취업 + ⑮ 기타 연계
- ⑭ 취업 : 해당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인원(상용직, 기간제 포함)
- ⑮ 기타 연계 : 해당 과정을 수료하고 타 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된 인원
 - *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 인턴 등), 고용센터(내일배움카드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 폴리텍 등
- ⑯ 새일센터 :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연계 건수
 - * 구직자의 구직활동(구직신청서 제출, 구인상담 등)이 필요
- ⑰ 그 외 기관 : 지역사회 유관 협력기관(지역내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협동조합,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연계 건수
 - * 구직자의 구직활동(구직신청서 제출, 구인상담 등)이 필요
- ⑱ 만족도 : 만족도 평가 점수화하여 입력
- ⑲ 고용유지인원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인원
 - * 2025.12.31.까지 취업해야 2025.6.30.까지 6개월 유지 가능
- ⑳ 우수사례(건) : 우수사례 제출 건수

3. 세부 내용

☐ 모집·홍보

-
-

☐ 프로그램·교육 운영

○ 사전교육

회차	일자	강의과목	강의시수(시간)				편성시간		강사 (소속, 직위)
			이론	실습	현장실습	현장견학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 직업훈련

회차	일자	강의과목	강의시수(시간)				강사 (소속, 직위)	훈련내용 (○표시)		온·오프라인 (○표시)	
			이론	실습	현장 실습	현장 견학		전문	일반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 기타

-
-

4. 사업 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5. 예산집행 : 집행 세부 내역 표는 가족센터 지침 정산 보고서 양식 활용

○ 사전교육 :

○ 직업훈련 :

6. 기타 증빙 별첨

년 월 일

○○○○○○○장

(인)

사업 결과 보고서(직업훈련기관용 - 직업훈련프로그램)

1. 사업개요(요약)

직업훈련 기관명								
교육훈련명								
사업기간	. . . ~			사업장소				
사업예산	총 원			국고		총 원		
				지자체		총 원		
				기타		총 원		
집행실적	총 원			국고		총 원		
				지자체		총 원		
				기타		총 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 - -							
사업성과	교육인원	명	수료인원 (수료율)	명 (%)	취업인원 (취업률)	명 (%)	만족도	%
	○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등 ○ 개선·건의사항							

☐ 미흡한 점

- ☐
- ☐

☐ 개선방안 또는 정책제안

- ☐
- ☐

4. 예산집행 : 집행 세부 내역 표는 가족센터 지침 정산 보고서 양식 활용

- ☐
- ☐

5. 기타 증빙 별첨

년 월 일

○○○○○○○장

(인)

20〇〇년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정 운영 사업비 정산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기 관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기 타	천원
작 성 자	(성명)	(연락처)	

2. 사업비 집행내역

1) 보조금 : 원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에 추가사업비 포함하여 작성

* 잔액발생사유 및 잔액 처리

* 이자 발생액(월 일 기준) : 원

2) 자부담 : 원 (단위 : 원)

지출 내역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 외부지원금 : 원 (단위 : 원)

지출 내역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부 지원금
센터 운영비	총계						
	인 건 비	소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후생 경비					
	운 영 비	소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직 업 훈 련 사 업 비	소계					

만족도 조사

그동안 프로그램/상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실제 취·창업 준비 및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강사(진행자)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 교육 환경은 만족스러웠다.					
5. 교육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6.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100점 기준 환산점 (= 총합계 / 7×20)	00점				

❖ 다음 란에 V표 하거나, 여러분의 주관적 의견을 적어 주세요.

성 별	☐ 남 ☐ 여	연 령	만 ()세
혼인여부	☐ 미혼 ☐ 기혼 (자녀수 ____ 명)		
교육받은 센터명			
센터가 실시한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 있다 ☐ 없다	
도움이 되었던 점			
개선해야 할 점			
취·창업을 위해 센터에서 받고 싶은 도움			
이용가능한 시간대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붙임 1] 결혼이민자 취업준비도 조사 설문지

- 다음의 문항은 여러분의 취업준비도를 파악하여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 활용 능력

구 분	말하기	듣기	쓰기
한국어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영 어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어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컴퓨터 활용 능력

프로그램명	① 전혀 못 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매우잘한다

□ 일반 사항(2025년도 새일센터 지침 준용)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3개월 이내에 빠른 취업을 하고 싶다.				
2	나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나 직무가 있다.				
3	나는 전공이나 이전 직업경력과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려고 한다.				
4	나에게 맞는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나의 특성 (적성, 흥미, 가치관 등)에 대해 알고 있다.				
5	나는 내가 취업 가능한 직업, 혹은 도전해 볼 만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자격증, 채용 정보 수집 등)				
6	내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일자리 형태, 희망임금, 복리후생 등)				
7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접을 볼 의향이 있다.				
9	나는 내가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 (구직스트레스, 육아, 가족 돌봄 등)				
10	나는 직장생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11	나는 취업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12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	나는 내 미래의 진로를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4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있다.				
15	앞으로의 나의 진로가 잘 될지 걱정스럽다.				
16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17	나의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격려를 받는다.				
18	주변 지인들은 나의 진로결정에 매우 협조적이다.				
19	나는 내 일과 개인적 삶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				
20	나는 직장인, 가족 구성원,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역할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				



기타 참고자료

1. 결혼이민자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안내 활성화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1

결혼이민자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안내 활성화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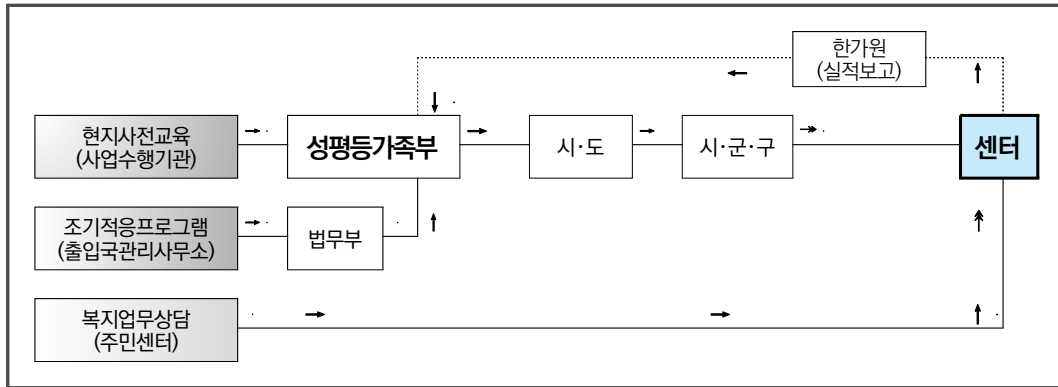
-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협조를 통해 제공 받은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연계, 서비스 정보 안내 등에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 제고

나.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현지사전교육 수행기관 (성평등가족부)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현지사전교육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수집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서비스 총괄 - 제도 개선 및 부처 협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결혼이민자 정보를 센터로 연계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평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서 발송 - 개인정보 처리 교육 및 서비스 정보제공 실적 관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개인정보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안내(전화·방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안전 관리(보유, 위탁, 파기 등)

다.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

〈 정보제공 흐름도 〉



① 개인정보 수집

- 결혼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 현지사전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하에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법무부, 성평등가족부)

② 개인정보 제공

- 출입국관리소, 현지사전교육 수행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문서로 통보(매월)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지역 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정보를 센터별로 제공
- 결혼이민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업무 상담·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센터로 정보 연계(센터는 연계 받은 후 조치결과 통보)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행안부 MOU 체결('11.11.24),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19.11.22)

③ 개인정보 활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서비스 종합안내서 등을 발송하고, 센터는 전화·방문 등을 통해 통·번역,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 안내 및 참여 권유

④ 개인정보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센터로 각 지역 내 입국 결혼이민자 주소, 연락처 등 정보 발송(시·도 → 시·군·구 → 센터)

*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되, 정보연계 현황(실적) 및 파기 기록은 보유

- 센터는 센터 DB 등재 등 보유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도래(최대 1년) 시 지체 없이 보유정보 명단에서 영구 삭제

* 대상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센터 DB 등재 후 지속적인 정보 관리 가능

⑤ 서비스 정보제공 실적 관리

- 센터는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서비스 정보제공 현황”을 아래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매 반기별 실적을 보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센터의 반기별 서비스 안내 실적 등을 종합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고

라. 행정사항

1)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서비스 정보제공 현황 실적 관리(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실적관리 서식〉

구 분	대상 인원 ¹⁾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인원 ²⁾	서비스정보 등 제공실적							정보 처리현황 ⁶⁾			
			인원 (명)	건 수						계(명)	DB 연계 ⁷⁾	연계 거부	기타 ⁸⁾
				계(건)	우편 ³⁾	이메일 ⁴⁾	SNS ⁵⁾	전화	방문				
계													
○○ 센터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인원 수(누적 인원)

2)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인원 수(누적 인원, 센터에서 작성)

3) 우편 : 문서, 소식지, 리플렛 등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송부한 건수

4) 이메일 : 센터 이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대상자에게 전자 메일로 송부한 건수

5) SNS : Zalo,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센터 이용정보 등 관련 메시지를 송부한 건수

6) 정보 처리현황 : 전체 대상인원 중 제공받은 목적의 완료(센터 DB 등재 등), 연계거부,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정보 등의 제공이 종료된 인원(명)

7) DB연계 : 방문교육 및 센터사업 관련 DB 등재 등으로 개인정보제공 목적이 달성된 인원(명)

8) 기타 : 대상인원에서 센터 이용정보를 제공한 인원 중 미입국, 주소불명, 주소이전, 무응답 등으로 종결처리된 인원(명)

2)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조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내부 직원 및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달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시행
 - 직원 등 양성·보수교육 시 과목 등에 반영
- 기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준용

구분	주요 내용	벌칙 및 과태료
수 집 · 이 용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주요 내용	벌칙 및 과태료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7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연계일시 : 20 년 월 일

이주여성 인적 사항	성명		출신국적	
	생년 월일 (외국인번호)		연락처	
	주소			
연계요청기관 정보	센터명			
	담당자 /직급			
	연락처			
조치 결과	☐ 서비스 진행(내용 :) ☐ 타기관 연계(연계기관 :) ☐ 기타(내용 :)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상기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읍면동장 귀하				

-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항제18호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우선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용어의 정의(주택법 제2조)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관련 법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 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나. 국민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요

-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 ③ 시·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 ④ 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무주택기간 등)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
-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안내
- 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1)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

3) 신청접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시·군·구청장은 다문화가족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
 - * 시·도지사는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주택공급자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 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알선 신청서(붙임 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과거 재산세(주택분) 납부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용도) 추가 제출

→ 건물 용도파악(주택인지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추가 제출

→ '18.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인가(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
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 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참고)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본인 외의 것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도장 구비 필요)
- 건물등기부등본 : 무인발급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참고)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붙임 3)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 사전청약 사이트(<https://사전청약.kr>) - 사전청약 소개 - 소득·자산기준
-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붙임 5)

4)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조치

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및 전산검색

1) 우선순위 결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 2)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시·군·구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관리

2)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자료 검색 요청 가능
- 요청은 붙임 1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참고
 - ※ 검색의뢰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0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 배우자 : 222222
 -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 111111 + 1234567891234홍길동^{Enter}
- 222222 - 5678913214586한마음
- 333333 - 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 000000 + 1234567891234홍길동^{Enter}
- 333333 - 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붙임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시·도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제27조제3항,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 규칙 제53조의 규정을 따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9년 이상~10년 미만	18	
		8년 이상~9년 미만	16	
		7년 이상~8년 미만	14	
		6년 이상~7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8	
		3년 이상~4년 미만	6	
배우자와 혼인기간	20	3년 미만	4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5년 이상	20	
		13년 이상~15년 미만	17	
		11년 이상~13년 미만	14	
		9년 이상~11년 미만	11	
		7년 이상~9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세대원 구성	15	3년 이상~5년 미만	4	* 세대원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인 이하	3	
		3인	7	
		4인	11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2년 미만	3	
		2년 이상~4년 미만	5	
		4년 이상~6년 미만	8	
		6년 이상~8년 미만	11	
		8년 이상~10년 미만	13	
소득요건	20	100% 이하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대비 소득 *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함. 단, 가구원 수는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140% 초과	5	
		120% 초과~140% 이하	10	
		100% 초과~120% 이하	1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 국적취득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주민등록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 이상 5명 3명 1명 1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		중증장애인	2명 이상 5명 1명 3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의 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20년 기준 등)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 배우자와 혼인기간)무주택기간

붙임 3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서식)** * 시·도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청구하되,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 시에 청구할 수 있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청구함

□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평점 요소	배점	배점기준		신청자사항		점수	비 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연월일 등	기간 등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년 월		① 세대원 전원 소유경력이 없을 경우 :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 공고일 ② 세대원 1인이라도 소유경력 : 주택 최종 처분일(처분일이 신청자가 30세가 되는날이나 혼인신고일 이전일 경우 ①을 따름)~공고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등
		9년 이상~10년 미만	18				
		8년 이상~9년 미만	16				
		7년 이상~8년 미만	14				
		6년 이상~7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8				
		3년 이상~4년 미만	6				
배우자와 혼인 기간	20	3년 미만	4		년 월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7년 미만	6				
		7년 이상~9년 미만	8				
		11년 이상~13년 미만	14				
		13년 이상~15년 미만	17				
세대원 구성	15	5인 이상	15		명		* 세대원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배우자의 주민 등록등본
		4인	11				
		3인	7				
		2인 이하	3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년 월		*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8년 이상~10년 미만	13				
		6년 이상~8년 미만	11				
		4년 이상~6년 미만	8				
		2년 이상~4년 미만	5				
		2년 미만	3				
소득 요건	20	100% 이하	20	원	%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합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 교통부고시)'을 준용함. 단, 가구원 수는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100% 초과~120% 이하	15				
		120% 초과~140% 이하	10				
		140% 초과	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미취득/취득			* 국적취득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주민등록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 5 2명 3 1명 1	명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중 장애인		중증장애인	2명↑ 5 1명 3	명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의 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본인 배점 합계							* 허위 작성 시 무효 처리

☐ 월평균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 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

세대구성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소득(원)
소득 합계				
	본인		-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부모 1		-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종 류	세 부 내 역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세대원(신청자 포함) 및 주소지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장애인증명서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등)로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붙임 5)
			발급처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단, 가구원 수는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 관련 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부 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 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출생, 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출생, 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본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지자체명)이 동의인(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2항,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고 지 내 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지자체명),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포함),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입주자격 심사 및 계약 안내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이름, 가족사항),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민감정보(건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증명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동 의 사 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세대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	
			-	
			-	
			-	
			-	

본인은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관련 입주자저축의 청약효력 상실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6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성명	무주택 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	세대원수 (신청자 포함)	특별 공급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소득 요건	국적 취득 여부	가점 (미성년 자녀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종합 점수	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2026년 가족사업안내 (Ⅱ)

2026년 1월 인 쇄

2026년 1월 발 행

발행인 : 원 민 경

발행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 2100-6323, 6327

FAX / (02) 2100-6485

인쇄처 : 중 앙 기 획

전화 / (02) 737-1610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